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주 영 애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본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보자기 연구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김 효 주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본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보자기 연구

주 영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김 효 주

인 준 서

김효주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0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생활문화는 한 사회의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행동양식이나 체계를 뜻하며, 세대를 이어 축적되고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중 의례문화는 한 집단의 정체성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생활방식이며 이러한 의례에 사용된 용품 역시 한 집단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투영된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의례에 사용되는 물품 중에서 보자기는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사용방식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왔다. 유교적 전통사회의 최고 행사인 왕실의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물건을 보호하고, 싸고, 나르는 기능 외에 왕실 의례의 모습과 생활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왕실 의례용 보자기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국혼정례(國婚定例)』,『상방정례(尙方定例)』등의 왕실가례 관련 규범, 왕실가례의 기록서인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등의 사료를 통하여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가례의 준비과정, 가례의 절차와 내용, 소요경비, 참여인원, 포상내역 등에 관한 기록과 반차도 등의 도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왕실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에 관한 상세한 기록도 포함하고 있다.

영조(英祖)와 정순왕후(貞純王后)의 가례를 기록한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는 국혼에서 혼례의 풍속이 사치하고 국고의 낭비가 심한 것을 경계하여 왕실 혼사에 관한 예를 정한 『국혼정례(國婚定例)』와 왕명을 받아 왕실 제반 소요 물품에 관한 규제를 기록한 『상방정례(尙方定例)』가 편찬된 후 영조 자신이 그 규정에 따라 가례를 몸소 실천한 기록물로 왕실의 가례에 사용된 물품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

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759년 6월에 거행된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 기록인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사용된 물품 목록 중 보자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육례의 절차로 구분하여 명칭, 옷감, 크기 및 용도, 사용 상황, 외형의 특징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상방정례』와 『국혼정례』에 기록된 보자기 관련 자료와 『조선왕조실록』의 혼례 관련 기록의 정리를 통해 보자기의 외관 및 사용용도와 당대의 생활상을 비교·분석하여 보자기가 담고 있는 생활문화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생활문화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상기 연구과정을 통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보자기의 종류는 홑보자기[단보(單袱)], 겹보자기[겹보(袂袱)], 상건(床巾), 부건(覆巾) 및 싸개용 핫보자기[유보(襦袱)], 옥책(玉冊)사이에 끼우거나 옥책사이를 막는 막이용 핫보자기[격유보(隔襦袱)] 및 옥책을 싸는 갑(匣) 등이 있다. 이들 보자기는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 시에 필요한 용품을 싸서 나르는 용도로 쓰이거나 예물의 보호를 위해 솜을 넣어 제작 후 예물사이에 끼워 넣거나 예물을 싸는 용도 혹은 의례에 사용된 상을 덮거나 두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영조는 혼례에 사치를 경계하여 본인의 가례 시에도 보자기 재질에 대하여 사치를 금한 기록이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보자기의 재질은 대부분 홍주(紅紬), 홍초(紅綃), 대홍광적(大紅廣的) 등의 무늬가 없는 옷감으로 영조의 검소와 절약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18세기는 유교적 의례문화가 확립되고 실행되던 시기였고 왕실의례는 유교이념을 따르고 실천하려는 왕실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이는 실행의 장이었다. 따라서 왕실의 가례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기능적인 용도 외에 백성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유교적 예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했

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그 자체가 의례도구로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례의 절차마다 중요 물품과 상징물을 싸서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혼례용품 사치의 폐단을 바로 잡는 본보기로써 절(節))과 검(儉)의 가치를 나타내며 동시에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례용품이었다.

셋째,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우리의 전통 의례용품인 동시에 전통의례에 깃들어 있는 성(誠)과 예(禮)의 가치를 표현하는 문화자산이다. 현대 혼례에서도 전통혼례의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함 보내기, 폐백 및 예단 등의 절차에 모두 보자기를 사용함으로써 내용물의 상징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의례에 포함된 예절과 정성의 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왕실 의례용 보자기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 혼례용, 의례용 문화콘텐츠 개발에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를 토대로 가례에 관련된 왕실규범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참고하여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를 각 육례의 절차에 따른 명칭, 옷감, 크기 및 용도, 사용상황, 외형의 특징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보자기에 깃든 생활문화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의례에 활용되는 보자기에 전통적인 상징성을 일깨우고 생활문화 속에 전통문화 콘텐츠의 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한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의례에 사용되는 보자기의 실용적 가치에 더해 고유문화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보자기가 전통성을 지닌 생활문화의 콘텐츠로 재해석되어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 1
2. 연구대상 및 범위…… 3
3. 연구의 목적 …… 5

II. 조선왕실의 혼례문화와 의례용품 …… 9
1. 조선왕실의 혼례문화 …… 9
1) 왕실혼례의 사회문화적 배경 …… 9
2) 왕실의 혼례제도…… 11
2. 조선왕실의 의례용품 …… 14
1) 혼례용품 …… 14
2) 혼례용 보자기…… 15

III.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 21
1. 가례의 절차와 『가례도감의궤』의 편찬…… 21
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보자기 …… 24
1) 납채용 보자기…… 24
2) 납징용 보자기…… 28
3) 고기용 보자기…… 30
4) 책비용 보자기…… 32
5) 친영용 보자기…… 41

6) 동뢰용 보자기 ····· 43
7) 예물을 싸는 보자기 ····· 46
8) 기타 용도의 보자기 ····· 48

3. 영조·정순왕후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특징 ····· 55
1) 명칭 ····· 55
2) 옷감 ····· 57
3) 형태와 용도 ····· 59
4) 제작자 ····· 62

IV.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보자기의 생활문화적 가치 ····· 64
1. 국혼의 권위와 위엄 ····· 64
2. 가례에 깃든 성(誠)과 예(禮) ····· 68
3. 왕실의 사치 배제를 위한 절검(節儉) ····· 75

V. 결론 및 논의 ····· 8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2-1> 서울 반가의 혼수에 사용된 혼례용 보자기 ····· 17

<표 2-2> 사용 계층에 따른 전통 보자기의 분류 ····· 18

<표 2-3>『상방정례』에 수록된 보자기 크기별 포장 내용····· 19

<표 3-1> 납채(納采)용 보자기 ····· 27

<표 3-2> 납징(納徵)용 보자기 ····· 29

<표 3-3> 고기(告期)용 보자기 ····· 31

<표 3-4> 책비(冊妃)용 보자기 ····· 37

<표 3-5> 친영(親迎)용 보자기 ····· 42

<표 3-6> 동뢰(同牢)용 보자기 ····· 43

<표 3-7> 동뢰연기명(同牢宴器皿)용 보자기 ····· 45

<표 3-8> 예물을 싸는 용도의 보자기 ····· 47

<표 3-9> 기타 사용된 싸개용 보자기 ····· 48

<표 3-10> 의례용품 외에 준비과정에서 추가된 보자기(일방의궤) … 50

<표 3-11> 의례용품 외에 준비과정에서 추가된 보자기(이방의궤)… 51

<표 3-12> 의례용품 외에 준비과정에서 추가된 보자기(삼방의궤)… 53

<표 3-13> 의궤에 수록된 상 덮개용 보자기…… 61

<표 4-1> 영조·정순왕후 가례절차의 의미와 사용된 보자기의 특징…… 66

<표 4-2> 영조실록의 보자기 관련 내용…… 72

<표 4-3> 궁중발기(보발기)를 통해 본 보자기 종류별 침공의 임금…… 75

<표 4-4>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 시 사치금지에 관한 내용 건수…… 77

<표 4-5>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사치에 관한 기록 중 옷감관련 내용…… 81

<표 4-6>『국혼정례(國婚定例)』와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사용된 육례용 보자기 비교 …… 87

그 림 목 차

<그림 3-1> 왕비 책봉 교명문(敎命文), 금보(金寶), 옥책(玉冊),
명복(命服) 등을 실은 가마 행렬…… 33

<그림 3-2> 영조·정성왕후 가례에 사용된 옥책과 봉과물품 …… 34

<그림 3-3>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금보와 봉과물품 …… 35

<그림 4-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중 채여 …… 67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조선은 건국이념인 유교사상에 따라 의례문화의 정착이 진행되어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기초로 한 혼례문화가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신랑이 신부 집으로 장가가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친영을 정착시키고자 하였으며, 왕실도 이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왕실에서 거행된 의례는 유교이념의 실천의 장이며, 왕조의 통치철학을 전하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였다.[1)]

조선의 왕실의례는 건국 초기에 편찬된『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검소하고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중시하고 이를 정착시키고자 힘써 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례 시의 과소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혼례 시의 사치를 금지하는 다양한 규제가 국법과 왕명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이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2)] 특히 조선후기 영조(1724-1776년 재위)는 이러한 혼례 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1749년 왕실 혼례에 관한 예를 정한『국혼정례(國婚定例)』를 편찬했으며, 또 왕명을 받아 국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탁지정례(度支定例)』와 왕실 제반 소요 물품에 관한 상의원(尙衣院)의 규례를 정한 『상방정례(尙方定例)』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1759년

1)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역(2013), 한국의 유교화 과정 : 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서울:너머북스, pp.337-348.
2)<부록1-1>.『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 시 사치에 대한 기록 참조.

(영조 35)에 거행된 영조와 그의 계비인 정순왕후의 가례는 본인이 제정한 혼례규범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절약과 검소를 실천하려는 그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왕실 혼례의식이 완성된 체계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3)]

영조·정순왕후의 가례는 의례에 관한 규범을 새로이 정비한 후 처음으로 거행된 국혼이었으며, 영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절차는 물론이고 혼례용품까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당대 왕실 생활문화의 특징과 문화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왕실의 가례과정을 현재에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상징인 의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는 영조와 계비인 정순왕후의 가례에 관한 의궤로서 상·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람용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의궤에는 가례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계획 및 제작, 각 관청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관청 간의 공문, 의례절차와 예행연습 과정, 실제 행한 친영 과정을 그린 반차도 등 의례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 왕실 혼례의 모습과 생활상, 혼례용품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의례용품들은 그 시대가 낳은 최고 수준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민족의 생활문화가 현재와 과거의 사고방식을 비롯한 생활양식을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 유교적 전통사회의 왕실 행사인 의례에 쓰인 용품들은 미적·경제적 가치 외에 신분과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당대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상징물이었다. 이러한 상징을 갖는 의례용품 중에서 보자기는 오늘날에도 의례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영애(2013)는 그의 연구에서 “현대혼례에서도 전통 혼례의 요소 중 상견례,

3)신병주·박례경·송지원·이은주(2013), 왕실의 혼례식 풍경, 서울:돌베개, p.114.

함보내기, 폐백, 예단 등의 과정에서 보자기는 실용적인 포장의 용도와 생활문화의 상징적 의미로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한다.” 고 하였다.[4)]

영조·정순왕후의 가례를 통하여 왕실 혼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형태와 용도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물건을 보호하고, 싸고, 나르는 기능 외에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며, 그 시대 왕실 의례의 모습과 생활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가례용품 중 보자기를 사용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 및 사용시기 등에 따라 분류하고, 시대상황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왕실 혼례문화 연구에서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왕실 가례용 보자기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상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1759년(영조 35) 6월 영조와 김한구(金漢耆)의 딸인 정순왕후의 가례과정을 기록한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왕이 하교한 내용과 신하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1759년 5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날짜별로 기록한 내용 중 보자기에 관한 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왕실 혼례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관청별로 수행하기 위해 예조, 병조, 호조 등의 각 관청에서 주고받은 공문서를 날짜별로 각각 기록한 예관(禮關)과 이문(移文) 및 내관(來關), 인력 배치, 소요 물품의 조달, 인건비 지급, 의궤의 기록 등에 대해 하부관청에서 올린 품목(稟目)과 상급관청이 지시한

4)주영애(2013), 혼인준비자들의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31(6), pp.53-66.

품목(稟目)과 감결(甘結), 가례도감의 일을 나누어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세 방에서 집행한 일을 방별로 기록한 일방의궤(一房儀軌)와 이방의궤(二房儀軌) 및 삼방의궤(三房儀軌)의 보자기 관련 기록을 조사·분석한다.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 등 육례에 사용된 물품 목록 중 보자기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고, 육례의 절차로 구분하여 명칭, 옷감, 크기 및 용도, 사용상황, 외형의 특징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영조시대의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조 25년 왕실 혼사에 관한 예를 정한 『국혼정례』 및 왕명에 따라 왕실 제반 소요 물품에 관한 규모를 정하기 위해 영조 26년~27년[5]에 편찬된 『상방정례』에 기록된 보자기 관련 자료와 『조선왕조실록』의 혼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위에 제시한 문헌에 나타난 보자기를 가례 절차에 따라서 사용용도 및 방법, 종류, 형태 등을 분석한다.

또한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에서 사용된 의례용품 중 보자기의 의미와 상징성을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생활문화적 관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환경적인 영향력을 전제로 문화적 현상을 파악하고, 시대적 의미와 더불어 계승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는 관점이다.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행동과 삶이 각기 상호보완 한다는 점과 그가 속한 환경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조선조의 왕실 혼례문화에서 활용된 의례용품인 보자기에 대한 연구는 유교적 통치 이념 하에 존재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유사한 물질문화도 사회 환경에 따라 그 의미와 상징성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대의 의례문화는 그 시대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위의 고찰과

5)이민주(2012), 상방정례의 편찬 과정과 특징, 장서각 27, pp.71-108. 이민주는 『상방정례』의 편찬시기를 1750년~1751년 사이로 추정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보자기의 외관 및 사용용도와 당대의 생활상을 함께 비교·분석하여 보자기가 담고 있는 생활문화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제시한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원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 전자자료를 이용하며, 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전자 자료에서의 표기를 기준으로 사용한다.『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국역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민족문화추진회 등에서 출간되었으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공개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며, 『조선왕조실록』의 국역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된 번역본[6]을 이용한다. 국역 문헌의 참고 시에는 원문을 각주에 표기한다.

3. 연구의 목적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 쓰인 물품은 그 시대의 최고 장인이 제작한 당시대의 생활문화의 품격을 살펴 볼 수 있는 물품이다. 왕실가례에 쓰인 물품 중 보자기가 담고 있는 정보는 그 외형에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물리적인 자료 외에 그것을 만들어낸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생활양식 및 그들의 문화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편찬과정과 기록학적 가치를 연구한 최은영(2011)[7]의 연구가 있고, 신병주(2001)[8]는 이를 통해 당시의 혼례에 관련된 생활상을 유추하였다. 왕실의 혼례절차는 박미선(2015)[9], 이미선(2005)[10], 이정숙(201

6)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7)최은영(2011),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의 편찬과정과 기록학적 가치, 충청문화연구, 6, pp.117-166.
8)신병주(2001),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서울: 효형출판.
9)박미선(2015), 朝鮮時代 國婚儀禮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이미선(2005), 肅宗과 仁顯王后의 嘉禮 考察 : 藏書閣 所藏 『嘉禮都監儀軌』를 중심으로, 장서각 14, pp.135-172.

0)[11] 그리고 임민혁(2012)[12]등이 문헌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혼례절차에 따른 복식은 김규영(2013)[13], 김명선(2004)[14], 김소현(2009)[15], 김정규(2010)[16], 김정옥(1984)[17], 김정진과 백영자(1990)[18], 노주연(2001)[19], 유송옥(1986)[20], 이경자(1977)[21], 이민주(2011)[22], 이주미(2009)[23], 최경순(1991)[24] 등을 통해 왕실혼례에 사용되는 예복, 장식, 쓰개 등의 시대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왕실가례에 사용된 기물에 관한 연구는 『가례등록(嘉禮謄錄)』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왕자녀의 혼례용품과 그 상징성에 대한 김지영(2017)[25]의 연구, 동뢰에 사용된 기물의 장식에 대한 상징성을 연구한 김지연(2015)[26]의 연구가 있다. 또한 조선후

11)이정숙(2010), 조선후기 의례서에 나타난 혼례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임민혁(2012), 조선시대 국왕 嘉禮의 절차와 규범, 東洋古典硏究 47, pp.209-248.
13)김규영(2013), 朝鮮後期 王女 婚禮服 : 『嘉禮謄錄』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김명선(2004), 조선후기 궁중발기에 나타난 가례복식(嘉禮服飾)과 길례복식(吉禮服飾)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김소현(2009), 가례시 절차에 따르는 조선후기의 왕실여성 복식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59(3), pp.96-108.
16)김정규(2010), 朝鮮時代 婚禮儀式에 관한 硏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김정옥(1984), 朝鮮王朝 後期 嘉禮服飾 硏究, 基礎科學硏究 1, pp.135-146.
18)김정진,백영자(1990), 조선시대 嘉禮都監儀軌의 班次圖에 나타난 服飾 연구, 한국의류학회 14(2), pp.15-27.
19)노주연(2001), 朝鮮時代 宮中과 士大夫의 婚禮 節次와 婚禮服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유송옥(1986), 조선왕조시대 가례도감의궤와 그에 나타난 복식, 대동문화연구 20, pp.189-220.
21)이경자(1977),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의 복식(服飾) 연구(硏究),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pp.21-48.
22)이민주(2011), 궁중발기를 통해 본 왕실의 복식문화 : 임오가례시 생산체제를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 14(2), pp.121-140.
23)이주미(2009), 『연잉군가례등록』에 나타난 왕자가례의 절차와 복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최경순(1991),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가례복식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1), pp.15-27.
25)김지영(2017), 조선후기 왕자녀의 '혼례용품'과 그 상징성에 관한 일고찰: 1749년 『국혼정례(國婚定例』이전 '가례등록(嘉禮謄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205-238.
26)김지연(2015), 18세기 왕녀 『가례등록(嘉禮謄錄)』에 나타난 왕실 혼례 용품 연구 -동뢰(同牢)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2), pp.16-174.

기 왕실 가례에서 사용된 병풍에 대하여 병풍의 제작과 사용을 계층별, 시기별, 공간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왕실회화의 기능과 성격을 살펴본 박은경(2012)[27]의 연구가 있다.

한편 왕실에서 사용된 보자기에 관한 연구로는 철종시대에 함, 궤, 보자기의 포장기능적 측면을 조사한 김응화(1997)[28]의 연구와 장서각 소장 보발기와 창덕궁 소장 보자기 유물을 기준으로 궁보의 종류와 특징 및 제작과정을 연구한 강서영(2012)[29]의 연구가 있으며, Kim(1997)[30]은 조선 보자기의 재질, 형태 및 용도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왕실가례에 대한 절차, 예복 및 기물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궁보의 특징과 기능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왕실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에 대한 육례절차의 단계별 사용용도, 명칭, 옷감, 크기 및 외형의 특징을 정리하여 이에 함축된 생활문화적 의미를 찾는 학술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왕실의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의례의 초기 단계에 용도, 수량, 형태에 대한 계획을 거쳐 제작되어 사용되었던 중요한 의례용품이었다. 주영애(2010)[31]의 논문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현대 혼례에서도 전통혼례의 요소가 지속되고 있고, 차후에도 전통혼례의 절차 중 함보내기, 폐백 및 예단 등은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활용되는 의례용 보자기는 계승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의례용 보자기를 사용함으로써 내용물의 상징성을 구현할 수

27)박은경(2012), 朝鮮後期 王室 嘉禮用 屛風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김응화(1997), 朝鮮時代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包裝形態에 關한 考察(Ⅱ) 哲宗哲仁后, 朝鮮時代 嘉禮都監儀軌(1851)를 중심으로,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논문집 4, pp.55-72.
29)강서영(2012), 조선말 궁중 보자기 연구, 고궁문화 5, pp.46-82.
30)Kim, Soo Kyung(1997), A Study of Pojagi(Korean Wrapping Cloths) in the Late Chosun Dynasty(1724~1910), Ph.D Thesis of New York University.
31)주영애(2010), 한국전통혼례문화의 계승을 위한 혼례절차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4(1), pp.57-71.

있으며, 예절과 정성의 정신을 표출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 생활문화를 창조해 나아가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역사적 배경과 의례절차에 따른 사용용도 및 방법, 종류, 형태 등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영조·정순왕후의 가례과정 각 절차에서 사용된 보자기의 용도, 종류, 형태 등을 분류하여 보자기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시대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의례용품 중의 하나인 보자기가 영조·정순왕후의 가례과정에서 제작·사용된 사회적인 배경을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보자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파악한다.

셋째,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의례에 사용되는 보자기가 실용적 가치와 더불어 전통성을 지닌 고유문화의 상징성을 포함한 용품으로 재확인되고, 새로운 생활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II. 조선왕실의 혼례문화와 의례용품

1. 조선왕실의 혼례문화

1) 왕실혼례의 사회문화적 배경

고조선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에 대한 기본 예법과 예식은 고유한 규정을 확립하지 못하고 중국의 의례서에 따른 중국의 황실이나 제후와 관련된 행사를 그대로 받아 따라하는 데 그쳤으며, 의례과정에서 정착한 독자적인 예법도 중국의 예법서를 근간으로 해석하는 등 고유의 왕실 예법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32)]

조선의 건국에 따라 이전의 토속적인 의식과 불교·유교적 의식이 혼합된 사회문화적 질서에서 유교를 바탕으로 한 예교질서(禮敎秩序)가 정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의 통치규범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예전(禮典)의 근간이 되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편찬되었다.[33)]

세종의 지시에 의해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최종적으로 완성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으로서 이후부터 한반도의 국가 의식들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정례화되고 체계적으로 변하게 된다.[34)]

---

32)김해영(2010),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pp.41-80.

33)한형주(2004), 15세기 祀典體制의 성립과 그 추이-『國朝五禮儀』 편찬과정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9, pp.127-161.
임민혁(2010),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3, pp.45-82.

34)이범직(1990), 朝鮮前期의 五禮와 家禮, 한국사연구 71, pp.31-61.
강제훈(2012), 조선『世宗實錄』『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사학연구 107, pp.169-228.

이러한 예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에서 영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이나 사대부의 혼례과정에서 사치한 폐습이 지속되어 왔고, 이의 영향을 받은 일반 서민들도 한 번의 혼례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혼수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혼기를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이『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35)]

영조는 당시 왕실의 운영이 방만하여 사치에 흐르고 국고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재정 체계를 바로잡고 용도의 절감을 꾀하기 위해 주요 왕실기관의 재정 운영 규정인『탁지정례(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어 왕실 가례 시 지출 규모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어 혼수의 규모가 한결같지 못하고, 비용의 낭비가 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혼정례(國婚定例)』를 제정하였다.

『국혼정례(國婚定例)』는 왕비를 맞는 가례를 비롯한 각종 왕실의 가례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각종 예식에 소용되는 물품과 그 수량 및 액수가 항목별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왕실혼례의 용품과 규모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상방정례(尙方定例)』는 『탁지정례(度支定例)』가 편찬된 뒤 상의원에서 수행되는 업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를 위해 별도로 편찬한 규정이다. 권말에는 국혼 시 의대(衣襨)·납채(納采)·납폐(納幣)·동뢰(同牢)·기명(器皿)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의례용품 연구에 참고가 된다.

영조 후기 왕실혼례에 관련된 상기 규정의 제정과 이를 실천하려는 국왕의 의지에 맞추어 영조 자신의 가례가 거행되었고, 왕실혼례의 체계화가 실현되었으며, 이의 결과물인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는 왕실혼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이다.

35)<부록 1-1>『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 시 사치에 대한 기록 참조.

2) 왕실의 혼례제도

조선은 유교사상을 기본으로 국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예제의 제정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정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국가의 기본 오례인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에 대하여 규정한 책이다. 세종실록과 함께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1474년(성종 5)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조선시대의 정치와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예식을 주로 규정한 것으로 의식 절차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의식에 사용할 용품, 의복, 재물, 제기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체계는 예종별(禮種別)로 구성되어 있는데, 길례는 권1에 30개조, 권2에 26개조, 가례는 권3에 21개조, 권4에 2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례는 권5에 6개조, 군례는 권6에 7개조, 흉례는 권7에 59개조, 권8에 3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가례절차는 납비의(納妃儀), 책비의(冊妃儀), 책왕세자의(冊王世子儀), 책왕세자빈의(冊王世子嬪儀),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 왕자혼례(王子昏禮),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 그리고 문과전시의(文科殿試儀),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 문무과방방의(文武科放榜儀), 생원방방의(生員放榜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다. 또한 양로의(養老儀), 중궁양로의(中宮養老儀) 등의 잔치나 왕세자정지백관하의(王世子正至百官賀儀) 등 정월·동지에 백관들이 왕세자에게 하례(賀禮)하는 의식도 기록되어 있다.[36]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근검·절약정신을 표방한 국왕의 의지에 따라 왕실기관의 재정 운영을 규정한 『탁지정례』에 이어 국혼의 규모를 정한 『국혼정례』가 제정된다. 이러한 영조의 의지는 『국혼정례』의 서문인 「어제국혼정례권제(御製國婚定例券題)」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36)양기식·홍혁기(1981),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대저 정례(定例)는 왜 만드는가? 대개 비용을 줄인다는 의도에서 만드는 것이다. ‘절용애인(節用愛人)’ 하라고 한 말은 성인이신 공자의 가르침인데, 여기서 ‘줄인다’ 는 것은 지출을 절제하라는 뜻이다.『탁지정례(度支定例)』를 만들자마자 연이어서 이 책『국혼정례(國婚定例)』를 완성했으니, 백성을 위해서 비용을 줄이자는 나의 의도가 다 이루어진 것인데, 나에게 아직도 느낌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왕년에 ‘초의초식(草衣草食: 극도로 검소한 의식생활)하라’ 는 교지가 매우 깊은 취지에서 내려졌기 때문일 것이다.[37]

『국혼정례(國婚定例)』는 왕명을 받아 1749년(영조 25)에 박문수(朴文秀) 등이 왕실 혼수를 줄이기 위해서 왕실의 혼례에 관한 정례(定例)을 적은 책이다. 「어제국혼정례권제(御製國婚定例卷題)」와 「범례(凡例)」, 국혼정례 본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제국혼정례권제」에는 정례를 마련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밝혀져 있고, 「범례」에는 국혼 때마다 계품(啓稟)하여 거행하던 방식에서 가례의 종류에 따라 진배(進排)하는 물품의 종류를 일정하게 규정한다는 내용과 가례 시 사용되는 법복(法服)·명복(命服) 등을 다른 직물로 대체하는 내용 등 『국혼정례』의 대체적인 서술방향이 기술되어 있다.

본문은 모두 7권 2책으로 제1책(乾, 권1~3)은 왕비가례, 왕세자가례, 숙의가례에 대한 규정이고, 제2책(坤, 권4~7)은 대군가례·왕자가례 공주가례·옹주가례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혼의 종류에 따라 혼례의 절차, 의례에 따른 예물과 기명(器皿)의 소용, 잔칫상의 차림, 가례에 소용되

37)국학자료원 편저(2007), 국역 국혼정례, 서울:국학자료원, p.21.
『國婚定例』御製國婚定例卷題
夫定例何爲而作也蓋 省費之意也節用愛人 孔聖所訓省者卽節用 之一事也度支定例纔畢此書續成予之爲民 省費於斯畢矣而予於 此有感慨者何則昔年 草衣草食之敎意蓋深

는 의복의 종류와 분량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왕비(王妃), 왕세자(王世子), 숙의(淑儀), 대군(大君), 왕자(王子), 공주(公主), 옹주(翁主)의 가례 시 소용되는 진배물종 및 액수가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임헌초계(臨軒醮戒),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 등의 각 항목별로 기재되어 왕실의 혼례의식과 진배물종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38]됨으로써 조선후기 왕실의 혼례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39]

『상방정례』는 상의원(尙衣院)에서 각 전(殿)과 궁(宮)에 진상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다. 상의원(尙衣院)은 각전과 궁의 연례, 진상, 탄일이나 절일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진상하는 일과 특별히 국왕의 전교가 있거나 행사에 정해진 물목을 진상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서이다. 『상방정례』는 「어제(御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의원이 왕실의 재물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절제가 없고 낭비가 많음을 염려한 영조가 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였다.[40]

『상방정례』는 3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례(恒例) 1권과 별례(別例) 2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항례는 대전(大殿)·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중궁전(中宮殿)·세자궁(世子宮)·빈궁(嬪宮)·현빈궁(賢嬪宮)의 탄일·생신절일 등 연례진상물(年例進上物)에 대한 규정이다. 별례 상은 전교(傳敎) 때마다 만들어 바치는 면복(冕服)·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 등 주로 국가의 의례에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규정이다. 또한 별례 하에는 능행시(陵行時), 친림열무시(親臨閱武時), 영칙거동시(迎勅擧動時), 존숭시(尊崇時), 진연시(進宴時) 등 행사에 사용되는 품목과 별도로 만들어지는 물건에 대한 규정

38)국학자료원 편저(2007), 국역 국혼정례, 서울:국학자료원, pp.15-17.
39)김지영(2017), 조선후기 왕자녀의 '혼례용품'과 그 상징성에 관한 일고찰: 1749년 『국혼정례(國婚定例』 이전 '가례등록(嘉禮謄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205-238.
40)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저(2008), 상방정례,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p.2. 『尙方定例』, 御製. "以示予省費之意噫夫子曰節用之愛...侈儉之分 聖狂之判 惟在節與不節 可不凜然乎"

이다. 권말에는 국혼에 대하여 왕비가례시(王妃嘉禮時), 세자궁가례, 대군가례의 의대(衣襨)·납채(納采)·납폐(納幣)·동뢰(同牢)·기명(器皿)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41)]

이와 같이 『상방정례』는 왕실의복의 의차와 조제, 염색과 각종 어진물품(御進物品)을 세밀하게 적고 있다. 따라서『상방정례』는 각 전과 궁에 소속된 신분과 의식에 필요 물품을 가늠할 수 있어 조선시대의 왕실의복, 기명, 염색 및 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조선왕실의 의례용품

1) 혼례용품

의례에 사용되는 의례도구는 의례의 의미와 상징성을 나타내며 또한 이러한 의례에서 사용되는 용품과 도구는 그 시대의 생활양식과 사상이 결합된 생활문화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의례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그 의례의 목적과 의미를 상징하는 물품인데 예를 들어 출생의례 돌상은 아이의 건강, 장수, 재능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돌잡이에 동원된 물품에서 실과 국수는 장수, 쌀은 식복, 수수경단은 사기(邪氣)를 물리침을 뜻한다. 천자문과 지필묵은 아이의 학덕, 돈은 부귀, 활은 용맹을 나타낸다. 여아의 경우 자와 가위는 솜씨를 상징하기도 한다.

혼례의 경우 대례상의 화병에 꽂아둔 소나무나 대나무는 절개를, 청실홍실은 금슬을, 근배는 화합을, 혼례상 위의 밤과 대추는 후손의 번창을 의미한다. 이처럼 혼례식 당일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하는 교배례의 상

41)이민주(2012), 상방정례의 편찬 과정과 특징, 장서각 27, pp.71-108.

차림 위에 놓이는 용품들은 각기 부부의 절개와 화합, 자손 번창 등의 상징으로 혼례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혼례에 담겨 있는 우리 조상들의 염원과 사상을 엿볼 수 있다.[42)]

왕실에서 사용되는 혼례용품들은 흠 없는 물건의 선정을 통해 왕실가족의 신분적 고결함을 표현하는 상징성이 강한 용품으로, 다산과 화합을 바라는 왕실의 염원을 담아 제작되었다. 왕자녀 혼례의 납채(納采)시 채서(采書)와 복서(復書)를 쓰는 서사관은 아들을 많이 낳은 신하 중에서 선정되었고, 납폐의 예물인 현훈속백(玄纁束帛)은 검은색과 진홍색의 비단으로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였다. 친영에는 홍주 2폭 홑보자기에 싼 산기러기를 사용하였는데 득남을 위한 염원으로 기러기의 머리를 왼쪽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뢰연에 사용한 교배석에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이곳이 만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성지합(二姓之合), 만복지원(萬福之源)이라는 글귀를 짜 넣었고, 동뢰에서 사용하는 근배(巹杯)를 만드는 표주박은 흠이 없는 외형을 지닌 것으로 준비되었다. 왕실 혼례에 사용되는 의례용품은 왕실의 삶의 방식과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임과 동시에 혼례에 대한 소망과 염원을 담은 물품이었다.[43)]

2) 혼례용 보자기

보자기는 다양한 크기와 색, 질감의 천 또는 한지로 만들었으며, 예로부터 물건을 싸거나 덮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자기는 주로 전통 주거공간의 협소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구의 용도(이불보, 횃댓보, 밥상보)를 대신하였고 때때로 의례용 혹은 의식용(혼례용, 상례용,

42)임재해(1997), 일생의례 관련 물질자료들의 상징적 의미와 주술적 기능, 한국민속학보 8, pp.51-76.

43)김지영(2017), 조선후기 왕자녀의 '혼례용품'과 그 상징성에 관한 일고찰: 1749년 『국혼정례(國婚定例』이전 '가례등록(嘉禮謄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205-238.

제례용, 불교의식용)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의례용 보자기는 물건을 보호함과 동시에 예절을 표현하고 장식하는 면이 현대의 포장 개념과 유사하다.[44]

특별한 용도가 없이도 보자기를 정성들여 만드는 행위 자체가 복을 불러온다고 여겨져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부귀영화를 바라는 문양을 수놓은 혼례용 보자기나 여러 가지 고운 색의 천을 이어 아름답게 만드는 조각보가 그 예이다.

혼례용 보자기로는 혼례과정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과정인 친영의 절차 중 전안례용 기러기를 싸는 기러기보, 사주를 싸서 보내는 사주단자보, 신부가 시댁에 예단을 싸서 보내던 예단보, 신부의 폐백시 폐백음식을 싸던 폐백보 등이 있다.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혼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사이므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가는 그 집안의 품격과 가풍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를 갖추었다. 혼수품이나 혼례용 보자기의 구성은 지방이나 가정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나, 혼례는 새로운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므로 부정한 요소의 침입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혼례용품들이 정성스럽게 제작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반가에서는 혼수용으로 약 150개에서 많게는 500개 정도의 보자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서민가정에서도 10~50개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45] 특히 혼례용 보자기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색과 형태를 통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전달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의혼, 납채, 납폐 및 친영 등 전통혼례에서의 각 절차에 쓰이는 보자기는 <표 2-1>과 같다.

---

44)김효주(2013),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45)손영학(2001), 한국인의 솜씨, 서울:두할미디어, p.113.

<표 2-1> 서울 반가의 혼수에 사용된 혼례용 보자기[46)47)48)]

명칭	용도	색/크기
함보(겉)	함을 싸는 겉 보자기	홍색 겹보자기
함보(속)	함안의 내용물을 싸는 속 보자기	홍색분홍 겹보자기
사주보	사주지를 싸는 보자기	홍색겉감 남색안감의 겹보자기
사주함보	사주지가 담긴 사주함을 싸는 보자기	홍색겉감 남색안감의 겹보자기
혼서지보	혼서지를 싸는 보자기	흑색 겹보자기
채단보	채단을 싸는 보자기	홍색겉감 남색안감의 겹보자기
기러기보	전안례에 쓰는 기러기를 싸는 보자기	청/홍/자수보 기러기의 크기에 따라 다름
연길보	혼례일을 택해 보내는 서식을 싸는 보자기	홍색겉감 남색안감의 겹보자기
연길함보	연길서식을 넣은 함을 싸는 보자기	남색겉감 홍색안감의 겹보자기
폐백보	폐백을 싸는 보자기	진분홍겉감 연분홍안감의 겹보자기

출처 : 구혜자(2002), 최배영(2013), 남상민(2003) 의 내용 재정리

보자기는 사용 계층에 따라 일반 서민들이 쓰던 민보와 왕실에서 쓰이던 궁보로 나눠진다. 민보의 경우 제작 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 민보는 일상생활에서 쓰인 상용보와 의례용으로 쓰인 의례용보로 나눠지는데, 상용보는 대개 크기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 쓰였다(<표 2-2> 참조).[49)]

46)구혜자(2002), 한복만들기, 서울:한국문화재보호재단.
47)최배영(2013), 조선시대 혼례문화콘텐츠, 서울:이노Books.
48)남상민(2003), 한국전통혼례, 서울:도서출판 예학.
49)김효주(2013),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

<표 2-2> 사용 계층에 따른 전통 보자기의 분류[50)]

분류	분류기준	특징
궁보	궁중에서 각종 물품을 싸거나 보관하기 위해 쓰던 보자기	• 주로 국산 향직으로 만들어 졌으며 홍색계열이 다수 • 한 폭의 천으로 제작 • 재료, 크기와 용도가 문헌에 기록됨
민보	서민층에서 사용한 보자기 용도에 따라 상용보와 의례용으로 분류됨	• 다양한 재료를 사용 • 여러 조각 혹은 한 장의 천으로 제작 • 다기능, 다용도로 사용

출처: 허동화(2006)의 내용 재정리

궁보는 왕실의 물품을 싸거나 보관하는데 이용된 보자기로, 옛 문헌인 『국혼정례』,『상방정례』및『궁중발기』등의 왕실혼례 관련 규정에 상세한 크기, 색, 용도가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용도와 종류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남아있다.

궁보는 조각천이 아닌 온전한 옷감으로 용도에 맞추어 제작되었다는 점과 홍색계통의 비단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궁보는 포장내용과 용도에 따라 크기, 색, 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상방정례』에 수록된 용도별 보자기의 크기 및 형태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원 석사학위논문, pp.14-15.

50)허동화(200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 서울:현암사.

<표 2-3>『상방정례』에 수록된 보자기 크기별 포장 내용[51]

폭수	종류	포장 내용물
1 폭[52]	홑보자기	말총으로짠 망건[馬尾網巾]
	핫보자기	은숟가락[銀匙], 은젓가락[銀筋]
2 폭	홑보자기	각종 신발[靴·鞋1 두건(頭巾)
	겹보자기	은사발[銀鉢里],은주발[銀椀], 은대접[銀匙貼]등의 은기명(銀器皿)
3 폭	홑보자기	모라사모(毛羅紗帽), 청초립(靑綃笠), 신발, 허리띠[腰帶], 팔찌[拾], 버선감으로 쓰는 백정포[足巾次白正布], 경대(鏡臺)
	겹보자기	각종 칠함(漆函) 내부, 모라사모(毛羅紗帽)
	핫보자기	평천관(平天冠), 원유관(遠遊冠), 모라익선관(毛羅翼善冠)
4 폭	홑보자기	면복(冕服), 강사포(絳紗袍), 의복용 옷감, 궤(櫃), 보록(寶盝)
	겹보자기	청초립을 넣는 집
	핫보자기	말총으로 짠 머리쓰개[馬尾頭冕]
5 폭	홑보자기	요, 물바가지[軟朴]
	겹보자기	팔걸이[几]
6 폭	홑보자기	각종 칠함외부
	겹보자기	각종 칠함내부
7 폭	홑보자기	요, 솜이불[襦衾]
	겹보자기	병풍
8 폭	홑보자기	요, 솜이불

『국혼정례』에는 왕실가족의 신분에 따라 소용되는 혼례용품의 비용과 수량이 명시되어 있다. 『국혼정례』의 왕비가례에 관한 규정에서 보자기의 사용 예를 정리하면, 왕비로 간택된 집에 교명문(敎命文)과 예물을 전하는 의식인 납채에는 흑칠중함(黑漆中函) 및 흑칠함(黑漆函)과 이를 싸는 보자

51)국립고궁박물관 편저(20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서울:국립고궁박물관, p.77.
52)1폭은 약 34.48cm.

기,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과 상건(床巾)이 사용되며, 화합의 상징인 산기러기[생안(生雁)]와 이를 싸는 보자기가 사용되었다. 왕비 또는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신부집에 예물을 보냄으로써 혼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통보하는 의식인 납징(納徵)에는 흑칠중함(黑漆中函), 흑칠함(黑漆函), 왜주홍칠속백함(倭朱紅漆束帛函)과 이를 싸는 보자기,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과 상건(床巾)이 사용되었다. 왕실 혼례에서 혼인 날짜를 신부의 집에 알리는 의식인 고기에는 당주홍칠중함(唐朱紅漆中函) 및 흑칠함(黑漆函)과 이를 싸는 보자기,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과 상건(床巾)이 사용되었다.

책비(冊妃)는 국혼에서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으로 책비 절차의 주요 상징물인 교명문(敎命文), 명복(命服), 옥책(玉冊), 보인(寶印) 등은 왕비의 지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물품이다. 이러한 물품은 대부분 솜을 넣어 만든 핫보자기에 싸서 내함에 넣고 홑보자기로 내함을 싼 후에 이를 다시 왜주홍칠궤(倭朱紅漆櫃), 왜주홍칠명복함(倭朱紅漆命服函), 흑칠외궤(黑漆外櫃)등의 외함에 각각 넣어 홑보자기로 다시 싸서 전달되었다. 이 때 사용되는 보자기는 금전지(金錢紙)와 술을 갖춘 비단보자기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고위관리가 직접 참석하여 감독하는 의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왕실혼례에서 보자기의 역할은 단순한 포장의 용도만이 아니라 내용물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친영(親迎)은 국혼에서 국왕이나 왕세자가 왕비 또는 왕세자빈이 될 신부를 맞이하여 궁궐에 모셔오는 의식이며, 산기러기[생안(生雁)]와 이를 싸는 보자기가 사용되었다. 동뢰(同牢)는 왕과 왕비가 술과 음식을 같이 맛보는 의식이며, 동뢰에서 사용되는 기명(器皿)으로는 각종 초를 담는 함과 그릇, 그리고 이를 싸는 보자기가 사용되었다.[53]

53) 『국혼정례 』 왕비가례 중 육례에 사용된 혼례용품 참조.

III.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

1. 가례의 절차와 『가례도감의궤』의 편찬

조선 21대 임금 영조(英祖, 1694∽1776)은 숙종의 넷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숙빈 최씨(淑嬪 崔氏)이다. 1721년(경종 1)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724년 경종의 승하 후 왕위에 올랐다. 11세 때(연잉군 시절)인 1704년(숙종 30)에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 徐氏, 1692∽1757)와 혼인하였으나, 1757년(영조 33)에 세상을 떠나자 2년 뒤인 1759년(영조 35) 6월 당시 15세의 나이인 오흥부원군 김한구(金漢耆)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년)를 계비로 맞이하였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는 당시의 법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왕비 후보들 가운데 6월 2일에 초간택(初揀擇), 6월 4일에 재간택(再揀擇), 6월 9일에 통명전(通明殿)에서 삼간택(三揀擇)을 통하여 최종 간택이 이루어졌다. 가례의 과정은 6월 13일에 혼인의 징표인 교명문(敎命文)을 보내고 이를 받아들이는 납채(納采)를 시작으로 6월 17일에는 예물을 보내는 납징(納徵)이 거행되었다. 6월 19일에는 길일을 택해 혼인 날짜를 정하는 고기(告期)가 행하여 졌고, 6월 20일에 왕비를 책봉하는 책비(冊妃)가 거행되었다. 친영(親迎)은 국왕이 별궁에서 왕비를 맞아오는 절차로 영조가 어의궁으로 나아가 정순왕후를 맞이함으로써 6월 22일에 거행되었고, 이어 창덕궁으로 돌아와 왕과 왕비의 합근례(合巹禮)와 서로 절을 나누는 교배례(交拜禮)의 절차 그리고 동뢰연(同牢宴)으로 마무리 되었다. 법제에 따르면 가례가 끝난 후 왕실의 웃어른께 인사드리는 조

현례(朝見禮)를 치러야 하나 정순왕후는 당시 웃어른이 없어 이 절차는 생략되었다.[54]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세자 그리고 왕세손의 혼례가 있을 때는 이를 관장하기 위해 가례도감(嘉禮都監)이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고, 간택(揀擇),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 및 조현례(朝見禮) 등의 행사 과정을 이곳에서 총괄하여 주관하였다. 영조·정순왕후 가례의 준비 및 실행을 위해 설치된 가례도감은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도청과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 맡아 제작하는 일을 담당한 3개의 부서인 삼방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국가 의식이나 행사가 끝나면 조직, 예규, 업무, 행사, 결과 등 의식의 전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인 의궤를 남겼다. 의궤(儀軌)란 '의식(儀式)의 궤범(几範)'이라는 뜻이다. 국가나 왕실의 주요행사에 대한 절차와 내용, 소요 경비, 참가인원의 임무 및 포상내역 등 의례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시 그림을 포함하여 당시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55] 이는 바른 예법을 갖춘 국정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를 남김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행사를 계획할 때 원활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는 1759년(영조 35) 6월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인과정을 기록한 의궤(儀軌)로서 상·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궤의 구성은 가례에 관하여 영조가 내린 전교를 비롯하여 행사를 주관한 담당 관리들의 명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배치 계획, 의식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한 논의 내용 등을 날짜별로 기록한 계사질(啓辭秩)을 비롯하여, 혼인과 관련된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 예조와 도감이 주고받은 공문서를 날짜별로 각각 기록한 예관질(禮關秩), 도감에서 가례 관련 업무의 협조를

54)신병주·박례경·송지원·이은주(2013), 왕실의 혼례식 풍경, 서울:돌베개, pp.132-134.
55)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p.2.

위해 호조, 병조 등의 각 관청으로 보낸 공문을 날짜별로 수록한 이문질(移文秩), 선공감,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여러 관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날짜별로 수록한 내관질(來關秩), 인력 배치, 인건비 지급, 소요 물품의 조달, 의궤의 기록 등과 관련하여 각각 하부관청에서 올린 물목과 상급관청에서 하부관청에 지시한 품목질(稟目秩)과 감결질(甘結秩)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례도감의 일을 나누어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삼방에서 행한 일을 방별로 기록한 일방의궤(一房儀軌)와 이방의궤(二房儀軌) 및 삼방의궤(三房儀軌)와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 수리소의궤(修理所儀軌)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방에서는 교명(敎命), 의대(衣襨), 포진(鋪陳), 의주(儀註), 상·함·궤 등의 제작을 담당하고, 이방은 왕비가 탈 가마와 왕비 의장의 제작, 삼방에서는 책봉문을 적은 옥책(玉冊), 옥책갑(玉冊匣), 외궤(外櫃), 금보(金寶), 보통(寶筒), 주통(朱筒), 보록(寶盝), 주록(朱盝), 호갑(護匣)의 제작을 맡았다. 각 의궤에는 각종 물품 마련, 물자조달, 담당 인력의 운용, 의식 진행, 물품 제작에 참여한 인원 명단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필요시에는 도해가 첨부되어 있다.

별공작의궤는 별궁에 보낼 각종 그릇이나 주칠장(朱漆欌) 등 가구의 제작을 담당하는 별공작에 대한 기록이며, 제작할 물품들의 종류와 모양, 별공작 사무와 관련하여 각종 물자조달, 인력 운용, 의식 진행 문제 등과 관련 논의 사항 및 제작에 참여한 공장(工匠)들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가례 의식을 위해 별궁을 수리하는 일은 도감 수리소(修理所)에서 담당했고, 그 일과 관련된 문서들은 수리소의궤에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왕과 왕비가 별궁에서 친영의(親迎儀)를 마치고 대궐로 돌아오는 행차 장면을 그린 반차도(班次圖)가 수록되어 있다.

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보자기

본 연구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1759년 5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가례 준비에 관한 왕의 지시 사항과 신하들의 건의 사항인 계사(啓辭)의 기록 그리고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 등 육례(六禮)에 사용된 물품 목록과 일방의궤(一房儀軌), 이방의궤(二房儀軌), 삼방의궤(三房儀軌)의 자료 중 보자기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비교·정리 하였다. 그 외 추가로 품의를 올려 사용된 보자기와 의례용이 아닌 행사에 사용된 보자기는 <표 3-10>~<표 3-13>에 정리하였다. 육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납채용 보자기

납채(納采)는 국혼에서 왕비나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집에 비 혹은 빈으로 삼는다는 교명문(敎命文)과 예물을 신부의 집에 전하는 의식이다. 국혼의 납채는 궐내에서 국왕이 교명문(敎命文)을 전교관(傳敎官)을 통하여 사자(使者)에게 전하는 의식과 사자가 신부의 집에 도착하여 교서(敎書)를 선포하고 답서인 전문(箋文)을 받아오는 의식으로 구분되는데, 사가의 혼례와 달리 교서와 함께 기러기를 신부 집에 전했다.[56]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에서 납채는 1759년 6월 13일 진시(辰時)에 거행되었다. 납채와 친영에는 각각 산기러기[생안(生雁)] 한 마리가 사용되었다. 왕이 내린 교문을 보내고 답문을 올리는 의식에는 정사(正使) 유척기(兪拓基), 부사(副使) 조운규(趙雲逵)[57]가 청혼서와 함께 신부집으로 채여(彩輿)를 보냈다. 이들은 왕비의 책봉을 알리는 교명문(敎命文)과 산기러기

56)여찬영 외(2012),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 I, 서울:경인문화사, p.95.
57)『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來關秩, p.0116.
嘉禮時, 正使領中樞府事兪拓基, 副使 兵曹判書趙雲逵, 啓下爲有置 。

를 왕비 집안에 전했다.[58]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납채용 보자기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납채에서 왕이 보낸 교문은 홍초(紅綃) 3폭의 겹보자기에 싸서 흑칠중함(黑漆中函)에 넣고, 이를 홍주(紅紬) 6폭 겉싸개용 홑보자기에 싸서 홍주(紅紬) 6폭의 상건(床巾)으로 덮은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에 놓았다. 안상(案床)[59]은 의례시 함이나 궤를 임시로 올려놓을 때 사용하는 상으로써 형태적으로는 상다리가 길다. 따라서 상건(床巾)을 주로 사용하여 아래쪽을 가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용된 산기러기[생안(生雁)]는 코를 홍사로 꿰고 홍주(紅紬)로 묶어 홍주(紅紬) 2폭의 홑보자기를 두른 후 신부집의 주인(主人)에게 전하였다.

답전문(答箋文)에는 안싸개용 홍주(紅紬) 4폭의 홑보자기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담는 흑칠함(黑漆函)을 싸는 겉싸개용 보자기로는 홍주(紅紬) 4폭의 홑보자기가 사용되었다.

육례의 진행과정 중에 각종 예물이 신부와 신부집에 보내졌으며 이들은 보자기에 싸여 전해졌으며, 왕비의 간택과 납채(納采)의 절차를 거쳐 납징(納徵) 전까지 전달된 예물과 이를 싼 보자기는 다음과 같다.

삼간택 뒤 3일째 되는 날 보낸 별궁예물(別宮禮物)은 대홍정주(大紅鼎紬) 10필, 남정주(藍鼎紬) 10필, 초록정주(草綠鼎紬) 10필, 백정주(白鼎紬) 10필, 연초록토주(軟草綠吐紬) 10필, 백토주(白吐紬) 10필, 솜[常綿

58)신병주·박례경·송지원·이은주(2013), 왕실의 혼례식 풍경, 돌베개, p.133.

59)『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안상의 규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순조대왕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안상의 크기는 길이 3척 2촌, 너비는 1척 4촌, 두께는 1촌, 높이는 2척 4촌이다. 단위는 예기척(禮器尺;1척이 28.63cm)을 사용했으므로 길이는 91.6cm, 너비는 40.0cm, 높이는 68.7cm정도의 크기이다.
『純祖大王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 「二房儀軌·圖說」 130, “用椵板楸木椵木長三尺二寸廣一尺四寸厚一寸高二尺七寸用禮器尺倭朱紅漆”.

子] 30근 등으로 흑칠대함(黑漆大函) 1부에 안싸개용 홍주 6폭 겹보자기 1건과 겉싸개용 홍주 8폭 홑보자기 1건으로 싸여 전달되었다.

납채 다음날 왕비의 집으로 보낸 본방예물(本房禮物)은 현색운문대단(玄色雲紋大緞) 2필, 훈색운문대단(纁色雲紋大緞) 2필, 현색화단(玄色禾緞) 2필, 훈색초(纁色綃) 2필, 대홍토주(大紅吐紬) 5필, 초록토주(草綠吐紬) 5필, 황토주(黃吐紬) 5필, 남토주(藍吐紬) 5필, 백토주(白吐紬) 20필, 솜[常綿子] 30근, 씨 뺀 솜[去核綿花] 50근 등으로 당주홍칠대함(唐朱紅漆大函) 1부[60]에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과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으로 싸여 전달되었다.

납징 하루 전에 보낸 본방예물은 홍염주(紅染紬) 5필, 황염주(黃染紬) 5필, 백면주(白綿紬) 10필, 산돼지[생저(生猪)] 4마리, 산양[생양(生羊)] 4마리, 예주(醴酒) 50병, 초주지(草注紙) 25권, 저주지(楮注紙) 25권, 구승홍면포침요(九升紅綿布寢褥) 1건, 배위채화단석(拜位彩花單席) 2건으로써 당주홍칠대함(唐朱紅漆大函) 1부에 안싸개용 홍초(紅綃) 3폭 겹보자기 1건과 겉싸개용 홍주(紅紬) 6폭 홑보자기 1건으로 싸여 전달되었다.

납채 후 3일째 되는 날 실어 보낸 정친예물(定親禮物)은 현색초(玄色綃) 2필, 훈색초(纁色綃) 2필, 현색초(玄色綃) 2필로서 왜주홍칠함(倭朱紅漆函) 1부[61]에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과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

60)『국혼정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방에서 추가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六禮時擧行秩, pp.0175-0176.
唐朱紅漆大函一部長三尺六寸, 廣二尺三寸 °內裹紅綃三幅袱衾一件, 外裹紅紬六幅單衾 一件, 藍絨絲金錢紙具, 內塗紅紬 °定例所無, 筵稟加造, 高九寸 °
국역 가례도감 일방의궤 육례 시 거행질, p.80.
당주홍칠 대함(大函) 1부 길이 3자 6치 너비 2자 3치,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남융사 금전지를 갖춤. 안은 홍주로 바름. 정례에는 없는데 연석에서 품의하여 추가로 만듦. 높이 9치.

61)『국혼정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방에서 추가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稟目秩, pp.0216-0217.
定親禮物所盛倭朱漆函一部, 本房禮物所盛唐朱漆函 一部, 袱具, 造用事, 旣已定奪爲有置 °同物力磨鍊以上, 卽 速進排事, 捧甘, 何如? 手決內, 假下實入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품

1건으로 싸여 전달되었다.

<표 3-1> 납채(納采)용 보자기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교문지(敎文紙) 1장(張) 흑칠중함(黑漆中函) 1부(部)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 1좌(坐)	홍주 6폭 상건(床巾) 1건	
산기러기[생안(生雁)] 1마리	묶는 홍주 7자 코에 꿰는 홍사 2돈(錢)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답전문지(答箋文紙) 1장 흑칠함(黑漆函)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합계	홑보자기 4건 겹보자기 1건 상건 1건	

목질, p.99.
정친 예물을 담을 왜주홍칠 함 1부와 본방 예물을 담을 당주홍칠 함 1부를 보자기를 갖추어 만들어 쓸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이들 물품들의 품목을 마련해 올립니다. 즉시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실입으로 우선 내리라고 수결함.

2) 납징용 보자기

납징(納徵)은 왕비 또는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어 혼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통보하는 의식이다. 납징 절차는 예물을 사신에게 전하는 납징의(納徵儀)와 사신이 가져온 예물을 신부집에서 받는 비씨제수납징의(妃氏第受納徵儀)로 이루어져 있다. 납징 때 예물은 검은색과 홍색의 폐백을 예물로 사용하였는데 왕비의 집에 전달된 예물은 현색모단(玄色冒緞) 6필과 훈색모단(纁色冒緞) 4필이었다.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에서 납징은 1759년 6월 17일 명정전에서 거행되었다. 사신은 왕으로부터 교문지(敎文紙)와 속백(束帛) 등을 별궁에 있는 주인에게 전달하고, 주인은 왕에게 예를 올리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의궤』의 기록 중 납징용 보자기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왕이 보낸 교문은 홍초(紅綃) 3폭의 겹보자기에 싸서 흑칠중함(黑漆中函)에 넣고, 이를 홍주(紅紬) 6폭 겉싸개용 홑보자기에 싸서 홍주(紅紬) 6폭의 상건(床巾)으로 덮은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위에 올려놓았다. 속백(束帛)은 현색모단(玄色冒緞) 6필과 훈색모단(纁色冒緞) 4필을 묶어 홍초(紅綃) 3폭의 안싸개용 겹보자기로 싸서 왜주홍칠속백함(倭朱紅漆束帛函)에 넣고 이를 홍주(紅紬) 6폭의 홑보자기로 겉을 싸서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 위에 놓았다. 답전문지(答箋文紙)를 싸는 용도로는 안싸개용 홍주(紅紬) 4폭의 홑보자기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담는 흑칠함(黑漆函)을 싸는 겉싸개용 보자기로는 홍주(紅紬) 4폭의 홑보자기가 사용되었다.

납징 당일 날에 신부집에 전달된 납징예물(納徵禮物)은 화은(花銀) 50냥(兩), 백릉(白綾) 4필, 조라(皁羅) 4필, 대홍주(大紅紬) 16필, 초록주(草綠紬) 16필, 흰솜 10근, 당주홍칠함 1부와 이를 싸기 위한 홍초(紅綃) 3폭 겹보자기 1건 및 겉싸개용 홍주(紅紬) 6폭 홑보자기 1건, 당주홍칠상(唐朱紅漆床)과 이를 덮는 홍주(紅紬) 6폭 상건(床巾) 1건이다.

<표 3-2> 납징(納徵)용 보자기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교문지(敎文紙) 1장 흑칠중함(黑漆中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 1좌	홍주 6폭 상건(床巾) 1건	
현색모단(玄色冒緞) 6필 훈색모단(纁色冒緞) 4필 왜주홍칠 속백함(倭朱紅漆束帛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 1좌	홍주 6폭 상건 1건	
답전문지(答箋文紙) 1장 흑칠함(黑漆函)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합계	홑보자기 4건 겹보자기 2건 상건 2건	

3) 고기용 보자기

고기(告期)는 왕실 혼례에서 혼인 날짜를 신부의 집에 알리는 의식이다. 고기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궁궐에서 혼례의 날짜를 알리는 교서(敎書)를 반포하고 신부집에 교지(敎旨)를 전달할 사신(使臣)을 파견한다. 그리고 사신이 신부집에 이르러 교지를 전하면 집 주인이 답문(答文)을 읽고 사신에게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신이 궁궐에 돌아가 복명(復命)한다.[62]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에서 고기(告期)는 1759년 6월 19일 명정전에서 거행되었으며, 이 날 왕의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왕으로부터 교문지(敎文紙)와 속백(束帛) 등을 별궁에 있는 주인에게 전달하고, 주인은 왕에게 답전문지(答箋文紙)를 올리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의궤』의 기록에서 고기용 보자기 관련 내용[6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왕이 보낸 교문은 홍초(紅綃) 3폭의 안싸개용 겹보자기에 싸서 당주홍칠중함(唐朱紅漆中函)에 넣고, 이를 홍주(紅紬) 6폭 겉싸개용 홑보자기에 싼다. 이를 홍주(紅紬) 6폭의 상건(床巾)으로 덮은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에 올려 집사자(執事者) 2인이 마주 들고 나아가 교서를 요여(腰輿)에 안치하고 왕비의 집으로 향했다. 답문은 안싸개용 홍주(紅紬) 4폭의 홑보자기에 싸서 흑칠함에 넣어 겉싸개용 홍주(紅紬) 4폭 홑보자기로 싼 후 정사(正使)에게 전하였다.

---

62)여찬영 외(2012),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 I, 서울:경인문화사, p.94.

63)『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 - 告期儀, p.0274.
執事者, 公服 °對擧 敎書案, 從之 °二人對擧 °傳敎官, 降自東階, 詣使者東北, 西向立 °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 - 妃氏第受告期儀 p.0277.
擧 箋函者, 進立於主人之後少西 °儐者, 取箋函, 以授主人 °主人受函, 跪授正使 °正使, 受, 以授副使 °

<표 3-3> 고기(告期)용 보자기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교문지 1장 당주홍칠중함(唐朱紅漆中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당주홍칠안상 1좌	홍주 6폭 상건 1건	
답전문지 1장 흑칠함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합계	홑보자기 3건 겹보자기 1건 상건 1건	

4) 책비용 보자기

책비(冊妃)는 국혼에서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이다. 일반인의 혼례와 달리 책봉의식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책비 절차는 세부적으로 교명책보내입의(敎命冊寶內入儀), 교명책보출입의(敎命冊寶出入儀), 책비의(冊妃儀) 및 비수책의(妃受冊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비 절차의 주요 상징물은 교명문(敎命文), 옥책(玉冊), 보인(寶印), 명복(命服) 등이다. 왕비의 지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이들 물품들을 싸는 의식인 봉과(封裹)를 거쳐 이를 궤(櫃)와 함(函))에 넣고, 교명문(敎命文)과 책문은 요여(腰輿)에, 보인(寶印)과 명복은 채여(彩輿)에 실어 사신이 왕비가에 도착하면 왕비가 명복을 입고 나와서 교명, 책, 보인(寶印)을 순서대로 받았다.[64]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에서 책비는 1759년 6월 20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거행되었으며,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왕비 책봉 시 하사되는 물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65] 이러한 하사물품들은 대부분 솜을 넣어 만든 핫보자기에 싸서 내함에 넣고 홑보자기로 내함을 싼 후에 이를 다시 외함에 넣어 홑보자기로 외함을 싸는 형식으로 봉과되었다. 물품에 따라 완충작용을 위해 물건 사이에 풀솜을 넣고 해충의 방지를 위해 의향(衣香)을 넣었다. 외함은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는 주머니에 따로 보관하였다.[66]

『의궤』의 기록에서 책비용 보자기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왕비의 책봉을 선포하는 교명을 대홍광적(大紅廣的) 1폭 반[67] 크기의 안싸개용 겹보자기에 싸서 왜주홍칠궤(倭朱紅漆櫃)에 넣고, 홍주(紅紬) 4폭의 겉싸개용 홑보자기에 싸서 이를 요여(腰輿)에 안치하여 운반하였다. 교명을 봉하여 싸는 절차를 위해 일방의궤에서 왜주칠배안상(倭朱漆排案床) 1좌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남융사(藍絨絲)의 금전지(金錢紙)를 갖춘 홍주(紅紬) 6

64)여찬영 외(2012),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 I, 서울:경인문화사, p.400.
65)<부록2-1>~<부록2-18> 참조.
66)국립고궁박물관 편저(20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서울:국립고궁박물관, p.151.
67)일방의궤에는 2폭으로 기록됨.

폭의 부건(覆巾)으로 덮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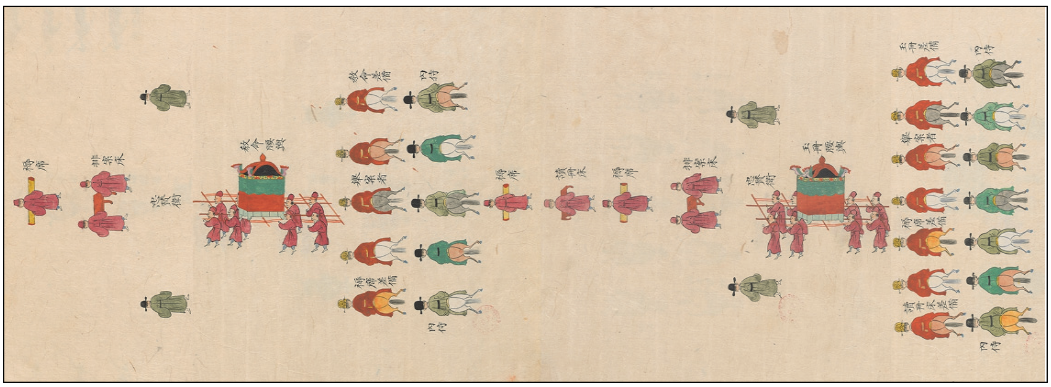

<그림 3-1> 왕비 책봉 교명문(敎命文), 금보(金寶), 옥책(玉冊), 명복(命服) 등을 실은 가마 행렬[68]

왕비에게 내린 명복(命服)은 물목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명복함의 안싸개용 보자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홍초(紅綃) 3폭의 안싸개용 겹보자기로 명복을 싸서 왜주홍칠명복함(倭朱紅漆命服函)에 넣고, 홍주(紅紬) 6폭의 겉싸개용 홑보자기에 싸서 이를 채여(彩輿)에 안치하여 운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왕비의 책봉에 대한 내용을 새긴 옥책(玉冊)은 갑(匣)이라는 보자기로 싸는데, 이는 십자형의 겹보자기로서 밖은 홍광적(紅廣的)을 사용하고 안은 남광적(藍廣的)을 사용하며 그 안에 홍색 초주지(草注紙)를 넣어 제작되었다. 옥책(玉冊)을 보호하기 위해 솜을 넣은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가 사용되었으며, 본 가례에서는 옥책(玉冊)이 6첩으로 구성됨으로써 5첩의 막이용 핫보자기가 옥책(玉冊)사이사이에 끼워졌다. 옥책을 화금왜주홍칠내함(畫金倭朱紅漆內函)에 넣고 남는 공간에 풀솜을 넣어 내용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고 방충용 의향도 함께 넣었다.

68)출처: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하권 반차도.

<그림 3-2>는 영조·정성왕후 가례에 실제 사용된 옥책, 옥책 보호용 핫보자기, 내궤, 내궤를 싸는 보자기, 외궤를 싸는 보자기 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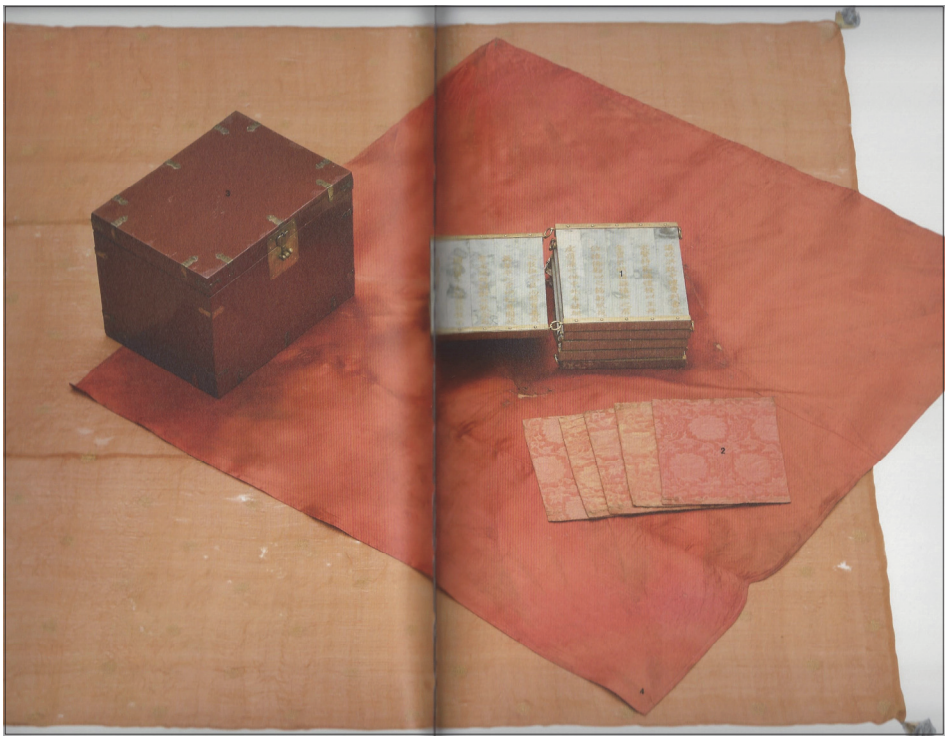

<그림 3-2> 영조·정성왕후[69] 가례에 사용된 옥책과 봉과물품[70]

화금왜주홍칠내함(畫金倭朱紅漆內函)의 싸개용으로는 홍주(紅紬) 3폭 반의 홑보자기와 자적초(紫的綃) 3폭의 홑보자기가 사용되었고, 흑칠외궤(黑漆外櫃)의 싸개용으로는 홍주(紅紬) 5폭 홑보자기가 사용되었다.

왕비의 공식 인장인 금보(金寶)를 싸는 데는 솜이 들어 간 대홍광적(大紅

69)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 徐氏, 1693년 1월 12일(1692년 음력 12월 7일)~1757년 4월 3일(음력 2월 15일)는 영조의 정비(正妃)임.

70)출처: 국립고궁박물관 편저(20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서울:국립고궁박물관, pp.168-169.

廣的) 핫보자기[유보(襦袱)]가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통(寶筒), 보개(寶蓋), 주통(朱筒) 및 주록(朱盝) 등도 솜을 두어 제작한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유보(襦袱)]로 싸서 내용물을 보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왕비 책봉에 있어 상징적인 물품들은 행사장에 미리 설치된 홍주(紅紬) 5폭의 부건(覆巾)으로 덮은 왜주홍칠독보상(倭朱紅漆讀寶床)에 놓였다.

<그림 3-3>은 영조·정순왕후 가례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금보 및 금보를 싸는 보자기, 보통 및 보통을 싸는 보자기, 보록 및 보록을 싸는 보자기, 보록의 자물쇠[쇄약시구(鎖鑰匙具)]·열쇠[시(匙)]·시가(匙家) 등 봉과물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금보와 봉과물품[71][72]

71)출처: 국립고궁박물관 편저(20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서울:국립고궁박물관,

책비에 사용된 상은 총 4좌로 옥책(玉冊)을 넣은 함을 올려놓는 데 쓰이는 독책상(讀冊床)은 계사질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삼방의궤에 제작 내용이 기술[73]되어 있다.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책비의(冊妃儀)]에 대한 일방의궤의 내용에 따르면 “교명안과 책보안 하나씩을 보안 남쪽에 설치하고, -교명안을 북쪽에, 책보안을 그 다음에, 보안을 또 그 다음에 둠.- 명복안을 전정(殿庭) 길 동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한다.”[74]고 언급되어 교명함, 옥책함, 보인함, 명복함을 놓을 상을 각각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상(案床)은 형태적으로 상다리가 길어 상건(床巾)을 주로 사용함에 비해 옥책(玉冊)이나 금보(金寶)등의 귀중품을 넣은 소함을 올려 이동·전달하는데 사용한 독책상(讀冊床)이나 독보상(讀寶床)은 크기가 비교적 작고 낮기 때문에[75] 상을 두르는 상건(床巾)을 사용하지 않고 부건(覆巾)을 사용하였다.

---

pp.154-155.

72)문화재청 편저(2010), 조선왕실의 어보, 서울:예맥, pp.246-247..
금보와 보통을 싸는 보자기는『가례도감의궤』에 대홍색의 폭이 넓은 견직물인 무늬없는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존하는 유물은 만초연화문(蔓草蓮花紋)의 핫보자기로 제작되어 있다.

73)『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稟目秩 p.0116.
讀寶案一坐讀冊案一坐新造所入 讀冊案 椴板半半立式楸木半半条式魚膠二兩式全漆四合式每漆三合式倭朱 紅一兩式楮注紙一張式太末一升膠末三合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품목질, pp.190~191.
독보상(讀寶床) 1좌와 독책상(讀冊床) 1좌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품 단판(椴板) 반의 반 닢씩. 추목(楸木) 반의 반 조씩. 부레 2냥씩. 전칠 4홉씩. 매칠 3홉씩. 왜주홍 1냥씩. 저주지 1장씩. 콩가루 1되. 풀가루 3홉.

74)『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冊妃儀 p.0278.
設 寶 案於 座前近東, 香案二於 殿外左右, 設 敎命· 冊·寶 案各一於 寶案之南, 敎命案在北, 冊案次之, 寶案又次之 ° 命服案於 殿庭道東近北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품목질, 책비의 내용, p.128.

75)『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독보상의 규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순조대왕순원왕후추상존호도감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독보상의 크기는 길이 1척 8촌, 너비는 1척, 높이는 1척이다. 단위는 예기척(禮器尺;1척이 28.63cm)을 사용했으므로 길이는 51.5cm, 너비는 28.6cm, 높이는 28.6cm정도의 크기이다.
『純祖大王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 「一房儀軌·圖說」p.131.
用椴板楸木椴木長一尺八寸高廣一尺用禮器尺倭朱紅漆

<표 3-4> 책비(冊妃)용 보자기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교명(敎命) 1부 왜주홍칠궤(倭朱紅漆櫃) 1부	안싸개용 대홍광적(大紅廣的) 1폭반 (2폭;일방의궤)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왜주칠배안상(倭朱漆排案床) 1좌[76]	홍주 6폭 부건 1건(남융사 금전지를 갖춤)	
왜주홍칠명복함(倭朱紅漆命服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물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명복을 싸는 안싸개용보자기로 사료됨.

76)일방에서 추가.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本房所掌 p.0163.
敎命封裹式 敎命一件 玉軸裹綿花從實入 °內裹多紅廣織二幅袱袱一 件金錢紙具 °腰結紫的綃纓子一件 入盛倭朱紅漆櫃一部 鎖鑰一部多紅廣的匙家具 °塡空雪綿子從實入 °衣香二封 外裹 紅紬五幅單袱一件金錢紙具 °臣謹封紙一箇臣字下都提調着押 °大標 紙一箇只書敎命二字 °倭朱漆排案床一坐 紅紬六幅覆巾一 件金錢紙具 °上排彩花席一件 下排紫的吐紬褥一件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 대전 가례 시 본방에서 관장한 일, p.74.
교명을 봉하여 싸는 법식.
교명 1건.
옥축(玉軸)을 싸는 솜 들어가는 만큼.
안싸개[내과(內裹)]로 다홍광직 2폭 겹보자기 1건(件) 금전지(金牋紙)를 갖춤.
허리 부분에 묶을 자적초 영자(紫的綃纓子) 1건.
보관용 왜주칠 궤(倭朱漆櫃) 1부.
자물쇠 1부 다홍광적 열쇠집[다홍광적시가(多紅廣的匙家)]을 갖춤.
사이를 메울 풀솜[설면자(雪綿子)] 들어가는 만큼.
의향(衣香) 2봉(封).
겉싸개[외과(外裹)]로 홍주 5폭 홑보자기 1건 금전지를 갖춤.
'신근봉(臣謹封)' 이라 쓴 종이 1개 신(臣) 자 아래에 도제조가 서명함.
큰 표지 1개 '교명(敎命)' 이라는 두 자만 씀.
왜주칠 배안상(排案床) 1좌(坐).
홍주 6폭 부건(覆巾) 1건 금전지를 갖춤.
위에 펴는 채화석(彩花席) 1건.

<표 3-4> 책비(冊妃)용 보자기(계속)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당주홍칠안상 1좌	홍주 6폭 상건 1건	
옥책(玉冊) 1건	대홍광적(大紅廣的) 1척9촌 막이용 핫보자기 5건 (막이용 핫보자기는 첩(貼)의 수효에 따름: 6첩) 안싸개용 대홍방사주(大紅方絲紬) 자물쇠[쇄금(鎖金)] 겹보자기(갑;匣)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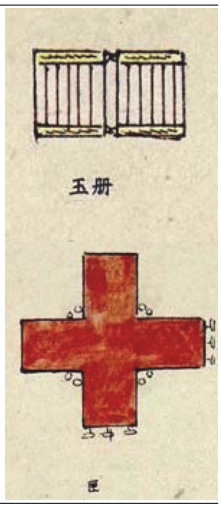
화금왜주홍칠내함(畫金倭朱紅漆內函) 1부	안싸개용 홍주 3폭반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자적초 3폭 홑보자기 1건	

77) 사진출처 : 『純祖大王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에서 발췌.

<표 3-4> 책비(冊妃)용 보자기(계속)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흑칠외궤(黑漆外櫃) 1부	싸개용 홍주 5폭 홑보자기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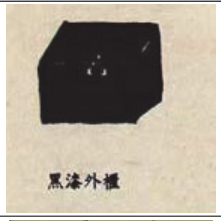
왜주홍칠독책상(倭朱紅漆讀冊床) 1좌	홍주 5폭 부건(覆巾)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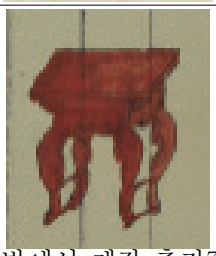 삼방에서 제작 추가78)
금보(金寶) 1과(顆)	싸개용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유보(襦袱)] 1건	
보통(寶筒) 1좌	싸개용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유보(襦袱)] 1건	

78)『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稟目秩, p.0116.
讀寶案一坐讀冊案一坐新造所入 讀冊案 椵板半半立式楸木半半条式魚膠二兩式全漆四合式每漆三合式倭朱 紅一兩式楮注紙一張式太末一升膠末三合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품목질, pp.190~191.
독보상(讀寶床) 1좌와 독책상(讀冊床) 1좌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품 단판(椵板) 반의 반 닢씩. 추목(楸木) 반의 반 조씩. 부레 2냥씩. 전칠 4홉씩. 매칠 3홉씩. 왜주홍 1냥씩. 저주지 1장씩. 콩가루 1되. 풀가루 3홉.
사진출처:『正祖國葬都監儀軌』(三) 三房儀軌 造作秩.

<표 3-4> 책비(冊妃)용 보자기(계속)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보록(寶盝) 1좌	싸개용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유보(襦袱)] 1건	79)
주통(朱筒) 1좌	싸개용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유보(襦袱)] 1건	
주록(朱盝) 1좌	싸개용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유보(襦袱)] 1건	
왜주홍칠독보상(倭朱紅漆讀寶床) 1좌	홍주 5폭 부건(覆巾) 1건	
합계	막이용 핫보자기 5건 싸개용 핫보자기 5건 자물쇠 겹보자기 2건(옥책싸개용) 겹보자기 2건 홑보자기 5건 상건 1건 부건 2건	

79)사진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 도설해제『端宗定順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5) 친영용 보자기

친영(親迎)은 국혼에서 국왕이나 왕세자가 왕비 또는 왕세자빈이 될 신부를 맞이하여 궁궐에 모셔오는 의식이다. 국왕이나 왕세자가 민가에서 혼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왕비나 세자빈을 궁궐에 모셔 온 후 혼례를 치렀다. 이때 국왕이 직접 가서 맞이해 온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 모셔 왔는데 이를 명사봉영(命使奉迎)이라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국왕이 직접 왕비가 머무는 별궁으로 신부를 맞이해오는 친영례가 정착되었다.[80]

영조·정순왕후의 친영의식은 1759년 6월 22일에 어의궁 별궁에서 치러졌는데 어의궁은 효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주하던 사저였다. 별궁은 왕비로 간택된 규수가 머물며 왕비 수업과 가례 절차를 미리 익히고 국왕이 사가로 나가는 불편함이 없이 친영을 치르기 위한 장소로 삼간택이 끝난 후 가례일까지 머물렀다.

국왕이 왕비를 모셔오는 반차도는 친영의 장면으로서 어의궁에서 왕과 왕비가 궁으로 오는 행차를 그린 그림이다.

『의궤』의 기록에서 친영용 보자기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홍색비단[홍주(紅紬)] 7자(약 34.48cm)로 묶은 산기러기[생안(生雁)]를 홍주(紅紬) 2폭의 홑보자기로 싸서 장축자(掌畜者)가 가지고 궁을 나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왕비집에 도착한 후 기러기를 홍주(紅紬) 10폭의 상건(床巾)이 덮인 안상(案床)에 올려놓는 예를 치렀다.

80)여찬영 외(2012),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 I, 서울:경인문화사, p.422.

<표 3-5> 친영(親迎)용 보자기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산기러기[생안(生雁)] 1마리	묶는 홍주 7자 코에 꿰는 홍사 2돈(錢)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왜주홍칠전안상(倭朱紅漆奠雁床) 1좌	홍주 10폭 상건(床巾) 1건 홍주 6폭 부건(覆巾) 1건	일방의궤-품목질에서 부건 1건[81]추가
합계	홑보자기 1건 상건 1건 부건 1건	

81)『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六禮時擧行秩, p.0171.
倭朱紅漆奠雁床一坐紅紬十幅床巾一件, 衿眞草綠紬紅綿絲三甲所回繩具, 六幅紅紬 覆巾一件, 藍絨絲金錢紙具 °加造床則尙方造作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육례시 거행질, p.78.
왜주홍칠 전안상 1좌 홍주 10폭 상건 1건. 깃은 진초록주(眞草綠紬). 홍면사(紅綿絲) 세겹바[삼갑소(三甲所)] 회승(回繩)을 갖춤. 6폭 홍주 부건 1건, 남융사 금전지를 갖춤. 추가 제조함. 상은 상방에서 만듦.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各差備醫女秩, p.0231.
親迎時所用奠雁床一坐, 尙方造作, 十幅床巾一件, 本 房造作, 而蓋覆袱則謄錄雖無所載, 不可不造作待令, 紅 紬六幅巾一件所入紅紬二十五尺, 金錢紙二張, 藍絨絲 二錢, 紅鄕絲五分, 進排事, 捧甘, 何如? 手決內, 依稟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각차비의녀질, p.107.
친영 시 사용할 전안상 1좌는 상방에서 제작하고, 10폭 상건(床巾) 1건은 본방에서 제작하되, 덮개 보자기는 등록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제작하여 대령하지 않을 수 없으니, 홍주 6폭 건(巾) 1건에 들어가는 홍주 25자와 금전지 2장, 남융사 2돈, 홍향사 5푼을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6) 동뢰용 보자기

동뢰(同牢)는 1759년 6월 22일 거행되었으며, 왕이 왕비를 대궐로 모셔와 술과 음식을 같이 맛보는 의식이다. 의궤에 나타난 동뢰의(同牢儀)에 의하면 왕이 왕비를 인도하여 실내로 들어와 동서로 마주 선 후 음식과 입가심 잔을 세 번 먹고 마시는 합근례(合巹禮)를 행하였다.[82]

영조·정순왕후의 동뢰연(同牢宴)은 창경궁(昌慶宮) 통명전(通明殿)에서 치러졌다.

의궤에는 주로 동뢰연용 상식(尙食)과 주정(酒亭)에 사용되는 기물을 싸는 보자기가 기록되어 있다.

금홍촉(金紅燭) 2쌍, 홍사촉(紅四燭) 5쌍, 홍육촉(紅六燭) 40자루, 홍팔촉(紅八燭) 40자루 등의 초를 넣는 당주홍칠함(唐朱紅漆函) 3부를 싸기 위해 홍주(紅紬) 5폭의 홑보자기 6건이 사용되었다.

<표 3-6> 동뢰(同牢)용 보자기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금홍촉(金紅燭) 2쌍: 심지가 홍색인 초를 갖춤. 홍사촉(紅四燭) 5쌍 홍육촉(紅六燭) 40자루 홍팔촉(紅八燭) 40자루: 이상의 초를 담을 당주홍칠 함 3부와 안과 겉싸개용 홍주 5폭 홑보자기 6건	안싸개용 홍주 5폭 홑보자기 3건 겉싸개용 홍주 5폭 홑보자기 3건	
합계	홑보자기 6건	

82)여찬영 외(2012),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 I, 서울:경인문화사, p.141.

동뢰연에서 사용되는 기명(器皿)을 싸는 보자기는 육례용 보자기와는 별도로 기록[83]되어 있다. 은초아(銀召兒) 2개를 싸기 위해 1폭의 자적주(紫的紬) 겹보자기가 사용되었고, 은봉병 1좌와 이를 담는 당주홍칠 작은 궤를 싸기 위해 3폭의 홍세목(紅細木) 겹보자기가 사용되었다. 은장식과 홍사(紅絲)를 갖춘 근배(巹杯) 1쌍과 은도금한 대(臺) 1쌍은 2폭의 홍세목 겹보자기를 사용하였으며, 쌍이단엽금잔(雙耳單葉金盞) 1쌍과 은도금한 대 1쌍은 1폭의 자적초(紫的綃) 홋보자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의식에 사용된 왜주홍칠찬안상(倭朱紅漆饌案床) 2좌에는 각각 홍주(紅紬) 상건(床巾)이 사용되었다.

83)<표 3-7> 동뢰연 기명(同牢宴器皿)용 보자기 참조.

<표 3-7> 동뢰연 기명(同牢宴器皿)용 보자기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은초아(銀召兒) 2개: 싸개용 자적주 1폭 겹보자기 1건	싸개용 자적주 1폭 겹보자기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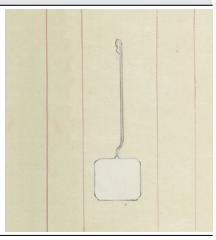
왜주홍칠 찬안상(倭朱紅漆饌案床) 2좌 홍주 상건 2건	홍주 상건 2건	
금봉병(金鳳甁) 대용의 뚜껑을 갖춘 은봉병 1좌: 싸개용 홍세목(紅細木) 3폭 겹보자기 1건, 담는 용 당주홍칠 작은 궤 1부.	싸개용 홍세목(紅細木) 3폭 겹보자기 1건	
근배(巹杯) 1쌍 은장식과 홍사(紅絲)를 갖춤. 은도금한 대(臺) 1쌍 * 이상의 싸개용 홍세목 2폭 겹보자기 1건	싸개용 홍세목 2폭 겹보자기 1건	
쌍이단엽금잔(雙耳單葉金盞) 1쌍 은도금한 대 1쌍 * 이상의 싸개용 자적초 1폭 핫보자기 1건	싸개용 자적초 1폭 핫보자기 1건	
합계	겹보자기 3건 싸개용 핫보자기 1건 상건 2건	

7) 예물을 싸는 보자기

육례의 진행과정 중 삼간택 후부터 납징 당일까지 5차례에 걸쳐 각종 예물이 신부와 신부집에 보내졌으며 이들은 함에 안싸개와 겉싸개 보자기로 싸서 전해졌다. 왕비의 간택과 납채(納采)의 절차를 거쳐 납징(納徵)까지 전달된 예물과 이를 싼 보자기는 다음과 같다.

왕비 예정자가 머무는 별궁에 보내는 예물은 안싸개용 홍주(紅紬) 6폭 겹보자기로 싸서 흑칠대함에 넣은 후 겉싸개용 홍주(紅紬) 8폭 홑보자기로 다시 싸서 전달되었다.

왕비의 집인 본방(本房)에 전달되는 예물은 당주홍칠대함(唐朱紅漆大函) 혹은 왜주홍칠함(倭朱紅漆函)에 안싸개용 홍초(紅綃) 3폭 겹보자기로 싸서 함에 넣은 후 겉싸개용 홍주(紅紬) 6폭 홑보자기로 다시 싸서 전달되었다.

납채한 다음 날 비(妃)의 본방으로 실어 보내는 예물은 새로 제작된 당주홍칠대함(唐朱紅漆大函)에 안싸개와 겉싸개 보자기로 싸서 전달되었다. 당주홍칠대함(唐朱紅漆大函)과 이를 싸는 보자기는 『국혼정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혼례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품의되어 일방에서 제작하였다. 납징 하루 전에 비(妃)의 실어 보낸 본방예물은 당주홍칠대함(唐朱紅漆大函)에 안싸개와 겉싸개 보자기로 싸서 전달되었다. 정친예물은 납채 후 3일째 되는 날 왜주홍칠함(倭朱紅漆函)에 안싸개와 겉싸개 보자기로 싸서 전했는데 이 또한 『국혼정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혼례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일방에서 추가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납징하는 날 실어 보내는 납징예물(納徵禮物)은 당주홍칠함(唐朱紅漆函)에 안싸개와 겉싸개 보자기로 싸서 홍주(紅紬) 6폭의 상건(床巾)으로 두른 당주홍칠상(唐朱紅漆床)에 올려 전달되었다.

<표 3-8> 예물을 싸는 보자기

예물명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별궁예물 (別宮禮物)	흑칠대함(黑漆大函) 1부	안싸개용 홍주 6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8폭 홑보자기 1건	삼간택 후에 올림
본방예물 (本房禮物)	당주홍칠 대함(唐朱紅漆大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납채한 다음 날 비(妃)의 본방으로 실어 보냄. (일방에서 추가)[84]
본방예물 (本房禮物)	당주홍칠 대함(唐朱紅漆大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납징 하루 전에 비(妃)의 본방으로 실어 보냄
정친예물 (定親禮物)	왜주홍칠함(倭朱紅漆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납채 후 3일째 되는 날 실어 보냄 (일방에서 추가)[85]
납징예물 (納徵禮物)	당주홍칠함(唐朱紅漆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납징하는 날 실어 보냄
	당주홍칠 상(唐朱紅漆床) 1좌	홍주 6폭 상건(床巾) 1건	

84)『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六禮時擧行秩, pp.0175-0176.
唐朱紅漆大函一部長三尺六寸, 廣二尺三寸 °內裹紅綃三幅袱衾一件, 外裹紅紬六幅單衾 一件, 藍絨絲金錢紙具, 內塗紅紬 °定例所無, 筵稟加造, 高九寸 °
국역 가례도감 일방의궤 육례 시 거행질, p.80.
당주홍칠 대함(大函) 1부 길이 3자 6치 너비 2자 3치,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남융사 금전지를 갖춤. 안은 홍주로 바름. 정례에는 없는데 연석에서 품의하여 추가로 만듦. 높이 9치.

85)『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稟目秩, pp.0216-0217.
定親禮物所盛倭朱漆函一部, 本房禮物所盛唐朱漆函 一部, 衾具, 造用事, 旣已定奪爲有置 °同物力磨鍊以上, 卽 速進排事, 捧甘, 何如? 手決內, 假下實入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품목질, p.99.

8) 기타 용도의 보자기

기타 싸는 용도의 보자기는 <표 3-9>에 정리되어 있으며, 각종 의복을 싸기 위해 홍주(紅紬) 홑보자기나 겹보자기가 사용되었다. 별궁에서 사용할 물품을 올리기 위해 홍주(紅紬) 4폭 홑보자기가 사용되었고 별궁에서 사용할 그릇을 싸기 위해서는 홍세목(紅細木) 겹보자기나 자적주(紫的紬) 핫보자기가 사용되었다. 수라간에서 백저포(白苧布) 3폭 보자기가 사용되었고, 은교의(銀交倚)를 덮기 위해 덮개용 자적주 5폭 홑보자기가 사용되었다.

<표 3-9> 기타 사용된 싸개용 보자기

사용처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대전의대(大殿衣襨)	말총두면(馬尾頭冕) 1부 흑칠한 갓집(黑漆家) 1부	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망건(網巾) 1건 흑칠한 통(黑漆筒) 1개	싸개용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1부 흑사피화(黑斜皮靴) 1부	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흑웅피삽혜(黑熊皮靸鞋) 1부	싸개용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중궁전법복(中宮殿法服)	왜주홍칠함(倭朱紅漆函) 1부 (신과 버선을 담음)	싸개용 홍주 3폭 홑보자기 2건	
중궁전의대(中宮殿衣襨)	자초립(紫綃笠) 1부 흑칠한 갓집(黑漆家) 1부	안팎 싸개용 홍주 4폭 겹보자기 1건, 홑보자기 1건	
	흑웅피화온혜 (黑熊皮花溫鞋) 1부	싸개용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각종 의대를 싸는 보자기감	대홍주(大紅紬) 2필 보자기감	
	왜주홍칠의대함(倭朱紅漆衣襨函) 4부	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4건	
	흑칠함(黑漆函) 1부	안싸개용 대홍주(大紅紬) 5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정친 예물을 담을 왜주홍칠 함 1부와 본방 예물을 담을 당주홍칠 함 1부를 보자기를 갖추어 만들어 쓸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이들 물품들의 품목을 마련해 올립니다. 즉시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실입으로 우선 내리라고 수결함.

<표 3-9> 기타 사용된 싸개용 보자기(계속)

사용처	물목	사용된 보자기	비고
별궁(別宮)에 올린 물품	왜주홍칠 궤·경대(倭朱紅漆櫃鏡臺) 1부: * 경(鏡)은 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을 갖춤.	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별궁 기명(別宮器皿)	덮개를 갖춘 은바리(銀鉢里) 1좌	싸개용 홍세목 2폭 겹보자기 1건	
	덮개를 갖춘 은주발[은완(銀椀)] 1좌	싸개용 홍세목 2폭 겹보자기 1건	
	덮개를 갖춘 은수저첩[은시첩(銀匙貼)] 1좌	싸개용 홍세목 2폭 겹보자기 1건	
	은수저[은시(銀匙)] 1개 은젓가락[은저(銀筯)] 1면: * 이상의 싸개용 자적주 1폭 핫보자기 1건	싸개용 자적주 1폭 핫보자기 1건	
수라간(水刺間)의 소용품	수라간(水刺間)의 소용품	백저포(白苧布) 3폭 보자기 1건	
연(輦)과 여(輿)의 의장(儀仗) 덮개	은교의(銀交倚) 1건	덮개용 자적주 5폭 홑보자기 1건	

또한 일방, 이방 및 삼방에서 의례용품 외에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보자기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의 사용용도와 보자기의 종류를 각 방 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0>~<표 3-12>와 같다.

<표 3-10> 의례용품 외에 준비과정에서 추가된 보자기(일방의궤)

사용용도	사용된 보자기	비고
별궁에 올릴 물건과 예물 싸개용	덮개용 홍주 6폭 보자기 2건	86)
교명전문의 초안 입계(入啓) 시에 필요한 홍가함(紅假函) 1부	홍색무명 4폭 보자기 1건	87)
상궁, 시녀가 착용하는 청상립(靑箱笠)과 가죽신을 올릴 때 담는 홍단함(紅緞函) 2부	홍색무명 4폭 보자기 4건	88)
교명문(敎命文) 초안 도서(圖書)를 대내에 들일 때 필요한 홍가함(紅假函) 1부	홍주 4폭 보자기 1건	89)
진상하는 의주 1건과 반차도(班次圖) 1건을 담을 홍가함 2부	홍주 4폭 보자기 2건	
세자궁에 공상(供上)하는 의주 1건과 반차도 1건을 담을 흑가함(黑假函) 2부	남주 4폭 보자기 2건	
세손궁에 공상하는 의주 1건과 반차도 1건을 담을 청가함(靑假函) 2부	남주 4폭 보자기 2건	
별궁에 올릴 의주 1건을 담을 가함(假函) 1부	홍주 4폭 보자기 1건	

86)『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各差備醫女秩, p.0228.
別宮進排物件及禮物輸納時, 架子笁只靑木一匹, 蓋覆 紅紬六幅袱二件, 用還次取用, 何如? 手決內, 依稟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각차비의녀질, p.105.
별궁에 올릴 물건과 예물을 실어다 들일 때 가자얽이(架子笁只)용 청색무명 1필, 덮개용 홍주 6폭 보자기 2건을 용환차(用還次)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87)『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稟目秩, pp.0213-0214.
敎命篆文草圖書所入草注紙半張, 竹淸紙半張, 黃筆· 眞墨各一, 入 啓時所用紅假函一部, 紅木四幅袱一件 進排事, 捧甘, 何如? 手決內, 依稟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품목질, pp.97-98.
교명전문의 초안을 그리고 쓰는 데 필요한 초주지(草注紙) 반 장, 죽청지(竹淸紙) 반 장, 황필과 참먹 각 1, 입계(入啓) 시에 필요한 홍가함(紅假函) 1부, 홍색무명 4폭 보자기 1건을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88)『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稟目秩, p.0222.
尙宮·侍女所着靑箱·笠鞋進排所入紅假函二部, 紅木四 幅袱四件, 中竹一箇, 依例進排事, 捧

<표 3-11> 의례용품 외에 준비과정에서 추가된 보자기(이방의궤)

사용용도	사용된 보자기	비고
자물쇠를 갖춘 가함(假函) 2부	홍주 4폭 보자기 2건, 홍색무명 4폭 보자기 2건	90)
유옥교(有屋轎)에 설치하는 주렴과 안보(按袱) 포장	홍주 5폭 보자기 2건	91)
안보(按袱)의 주렴	자적토주 5폭 보자기 4건	92)
가서봉(哥舒棒) 10건	자적방사주(紫的方絲紬) 2자 보자기 10건	93)
삼간택 후 별궁으로 나아갈 때 사용	자적토주(紫的吐紬) 3폭 보자기 1건	94)
	대내에 들일 자주색 보자기 4건	

甘, 何如? 手決內, 依稟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품목질, p.102.
상궁, 시녀가 착용하는 청상립(靑箱笠)과 가죽신을 올릴 때 담는 홍단함(紅緞函) 2부, 홍색무명 4폭 보자기 4건, 중대(中竹) 1개를 규례대로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89)『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 一房儀軌 - 稟目秩, pp.0228-229.
敎命文草圖書 內入時, 紅假函一部, 紅紬四幅袱一 件, 進上儀註一件, 班次圖一件, 所盛紅假函二部, 紅紬 四幅袱二件, 世子宮供上儀註一件, 班次圖一件, 所盛 黑假函二部, 藍紬四幅袱二件, 世孫宮供上儀註一件, 班次圖一件, 所盛靑假函二部, 藍紬四幅袱二件, 別宮進 排儀註一件, 所盛假函一部, 紅紬四幅袱一件, 進排事, 捧 甘, 何如? 手決內, 依稟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품목질, p.105.
교명문(敎命文) 초안 도서(圖書)를 대내에 들일 때 필요한 홍가함(紅假函) 1부, 홍주 4폭 보자기 1건, 진상하는 의주 1건과 반차도(班次圖) 1건을 담을 홍가함 2부, 홍주 4폭 보자기 2건, 세자궁에 공상(供上)하는 의주 1건과 반차도 1건을 담을 흑가함(黑假函) 2부, 남주 4폭 보자기 2건, 세손궁에 공상하는 의주 1건과 반차도 1건을 담을 청가함(靑假函) 2부, 남주 4폭 보자기 2건, 별궁에 올릴 의주 1건을 담을 가함(假函) 1부, 홍주 4폭 보자기 1건을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90)『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二房儀軌-稟目秩, p.0008.
諸色匠人所排空石三十立土火炉六烽炉二各揉綵緞 入盛橫三部具鎖鑰假函二部紅紬四幅袱二件紅木四 幅袱二件文書入盛橫子一部具鎖鑰進排為旀雜物看 護次捕盜軍士二名座更二牌乞送事捧甘何如手決內依稟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이방의궤 품목질, p.140.

각종 장인들이 깔 빈 섬 30닢, 토화로 6, 봉로(烽爐) 2, 각종 채단을 담아 놓는 궤 3부, 자물쇠를 갖춘 가함(假函) 2부, 홍주 4폭 보자기 2건, 홍색무명 4폭 보자기 2건, 문서를 담을 궤 1부를 자물쇠를 갖추어 올리며, 잡물을 지킬 포도군사 2명과 좌경 이패(坐更二牌)를 배정하여 보낼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91)『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二房儀軌－稟目秩, p.0041.

有屋轎所排朱簾及按袱等物造作後前期內入時所　罽紅紬五幅袱二件造作進排事捧甘何如手決內依稟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이방의궤 품목질, p.156.

유옥교(有屋轎)에 설치하는 주렴과 안보(按袱) 등을 제작한 후 기일 안에 대내에 들일 적에 포장할 홍주 5폭 보자기 2건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92)『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二房儀軌－稟目秩, p.0044.

按袱朱簾所罽紫的吐紬五幅袱四件所入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이방의궤 품목질, p.157.

안보의 주렴을 쌀 자적토주 5폭 보자기 4건에 들어가는 물품

93)『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二房儀軌－稟目秩, p.0063.

哥舒棒十件所覆袱十件每件所入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이방의궤 품목질, p.167.

가서봉(哥舒棒) 10건을 덮는 보자기 10건에 들어가는 물품

94)『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二房儀軌－稟目秩, pp.0043－0044.

紫的吐紬三幅袱一件所入　紫的吐紬三幅各長七尺一寸五分纓子紫的吐紬長一尺五寸廣伍分九介縫造 紫的真絲一錢五分

內入紫的袱四件金錢紙次紙金四張藍絨絲三錢二 分進排事捧甘何如手決內依稟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이방의궤 품목질, p.157.

자적토주(紫的吐紬) 3폭 보자기 1건에 들어가는 물품

자적토주 3폭. 각 길이 7자 1치 5푼. 끈감 자적토주 길이 1자 5치 너비 5푼짜리 9개. 바느질용 자적진사 1돈 5푼.

대내에 들일 자주색 보자기 4건, 금전지감 지금 4장, 남융사 3돈 2푼을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표 3-12> 의례용품 외에 준비과정에서 추가된 보자기(삼방의궤)

사용용도	사용된 보자기	비고
초잡은 도서를 담아 둘 가함(假函) 1부	홍주 3폭 보자기 1건	95)
금보전문(金寶箋文)가함 1부	홍주 보자기 1건	96)
옥동자를 넣을 궤 2부	겉싸개 홍주 4폭 보자기 2건	97)
동뢰연에 사용할 그릇덮개용	덮개용 홍주와 홍색무명 보자기 12건	98)
동뢰연에 사용할 주정(酒亭), 향좌아(香佐兒) 싸개용	홍색무명 4폭 보자기 2건 홍색무명 3폭 보자기 2건	
동뢰연에 사용할 개아 싸개용	홍색무명 3폭 보자기 8건	99)
대내에 들일 놋그릇 가함(假函) 6부	홍색무명 4폭 보자기 8건	100)
옥책을 인출(印出)할 때	핫보자기 2건	101)
동뢰연의 그릇과 옥동자(玉童子)를 대내에 들일 때	홍색무명 5폭 보자기 5건 홍주 3폭 보자기 4건	102)

95)『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稟目秩, p.0090.
草圖書草夲所用草注紙二張正書次搗鍊紙一張井間　次唐朱紅五分書寫官正書時所用大書案一玉沙叱安 排書板一紫硯具匣一黃苹真墨各二進排事捧甘為旀 草圖書所盛假函一部紅紬三幅袱一件用還次進排事 捧甘何如手決內依稟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 품목질, pp.178-179.
도서(圖書) 초본을 초잡는 데 사용할 초주지(草注紙) 2장, 정서감으로 도련지(搗鍊紙) 1장, 정간(井間)감으로 당주홍 5푼, 서사관이 정서할 적에 필요한 큰 서안(書案) 1, 옥사슬(玉沙叱)을 배열한 서판(書板) 1, 집을 갖춘 자연(紫硯) 1, 황필과 참먹 각 2를 올리도록 감결하며, 초잡은 도서를 담아 둘 가함(假函) 1부, 홍주 3폭 보자기 1건을 용환차로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96)『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稟目秩, pp.0090-0091.
金寶篆文出草次竹清紙二張正書次黃苹真墨各一　黃蜜五分正副夲付粘入啓次貼冊所用搗鍊紙半張 小書板二紅条所二把油紙壯紙各半張假函一部紅紬袱一件進排事捧甘何如手決內依稟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 품목질, p.179.

금보전문(金寶箋文)을 초잡을 죽청지(竹淸紙) 2장, 정서감으로 황필과 참먹 각 1, 황밀(黃蜜) 5푼, 정본과 부본을 첨부하여 입계할 때 첩책(貼冊)에 필요한 도련지 반 장, 작은 서판 2, 홍색 줄바(條所) 2파(把), 유지(油紙)와 장지(壯紙) 각 반 장, 가함 1부, 홍주 보자기 1건을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97)『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稟目秩, p.0128.

玉童子入盛樻子二部新造所入　椵木半立唐朱紅六兩阿膠二兩朱土三合內塗靑綾花一張半紅眞絲一兩二戔紙金半張膠末一合囊子次紅廣的長三寸廣二寸四片粧飾及　鎖鑰豆錫一斤含錫二兩以三甫水染用炭五斗所裹紅細木甲袱次二十　二尺外裹紅紬四幅袱二件塡空去核一斤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 품목질, p.196.

옥동자를 넣을 궤 2부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품

단목(椵木) 반 닢. 당주홍(唐朱紅) 6냥. 아교 2냥. 주토(朱土) 3홉. 안에 바를 청릉화(靑菱花) 1장 반. 홍진사(紅眞絲) 1냥 2돈. 지금(紙金) 반 장. 풀가루 1홉. 주머니감 홍광적 길이 3치 너비 2치짜리 4편. 장식용 자물쇠 두석(豆錫) 1근. 함석 2냥, 삼보수(三甫水)로 물을 들임. 숯 5말. 싸개용 홍세목 겹보자기(紅細木甲袱)감 22자. 겉싸개 홍주 4폭 보자기 2건. 빈 곳을 채울 씨 뺀 솜 1근

98)『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稟目秩, p.0129.

同牢器皿酒亭香佐兒等內入時輸運架子十二部枼　具擔陪軍二十四名引路軍一名負持軍三十三名盖覆　紅紬紅木袱十二件酒亭香佐兒所裹紅木四幅袱二件　三幅袱二件等物預為待令進排事捧甘何如手决內依稟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 품목질, p.197.

동뢰연에 사용할 그릇과 주정(酒亭), 향좌아(香佐兒) 등을 대내에 들일 때 운반하는 도구로 줄을 갖춘 가자(架子) 12부, 담배군(擔陪軍) 24명·인로군(引路軍) 1명·부지군 33명, 덮개용 홍주와 홍색무명 보자기 12건, 주정과 향좌아를 쌀 홍색무명 4폭 보자기 2건·3폭 보자기 2건 등을 미리 대령하여 올리도록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99)『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稟目秩, p.0131.

次知中使以為來月初二日初揀擇時例用盖兒是如同牢宴所用已鑄成大中小盖兒盡數內入亦是置所盛 架子二部枼具負持軍四名引路軍一名假函六部紅木三幅袱八件進排事捧甘何如手决內依稟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 품목질, p.198.

담당 중사가, 다음 달 2일 초간택 시에 으레 개아(盖兒)를 사용하니, 동뢰연에 사용하려고 이미 주조한 대·중·소 개아를 모두 대내에 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담는 도구로 줄을 갖춘 가자(架子) 2부, 부지군 4명, 인로군 1명, 가함(假函) 6부, 홍색무명 3폭 보자기 8건을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

100)『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甘結秩, p.0136.

內入鍮器皿磨淨所入破帳布十五尺及假函六部紅木四幅袱八件進排事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 감결질, p.200.

대내에 들일 놋그릇을 닦는 데 필요한 헌 장막베 15자 및 가함(假函) 6부, 홍색무명 4폭 보자기 8건을 올릴 것.

101)『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甘結秩, pp.0136-0137.

玉冊印出時所用眞墨七丁白帽子三立紫帽子四立毛面紙一卷黃蜜二兩壯紙二張大硯二面手巾布六尺襦袱二件白休紙三斤陶方文里二坐去核三兩破油芚一浮粉唐紙五張進排事

3. 영조·정순왕후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특징

1) 명칭

보자기는 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해 제작된 사각천을 총칭한다. 왕실 의례용 보자기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용용도, 크기, 옷감 등이 정해지고, 그 내용이 보자기 명칭에 반영되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일예로 납채용 보자기 중 교문지 한 장을 싸는 보자기의 경우에 '안싸개용 홍초(紅綃) 3폭 겹보자기 1건'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용용도, 옷감, 크기, 형태, 수량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국역본[103]에 나타난 보자기 관련 어휘는 홑보자기[단보(單袱)], 겹보자기[겹보(袂袱)], 상건(床巾), 부건(覆巾), 함보(函袱) 및 싸개용 핫보자기[유보(襦袱)], 옥책(玉冊)사이에 끼우거나 옥책(玉冊)사이를 막는 막이용 핫보자기[격유보(隔襦袱)] 및 옥책(玉冊)을 싸는 갑(匣) 등이 있다.

이러한 보자기에 대한 명칭은 용도, 보자기 안의 내용물, 보자기의 외형에 따라 정해졌다. 용도에 따라 명칭이 정해진 예로는 상건(床巾), 부건(覆巾)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 감결질, p.200.

옥책을 인출(印出)할 때 필요한 참먹 7정, 백모자(白帽子) 3닢, 자모자(紫帽子) 4닢, 모면지(毛面紙) 1권, 황밀 2냥, 장지 2장, 대연(大硯) 2면, 수건용 베 6자, 핫보자기 2건, 백휴지 3근, 질방구리(陶方文里) 2좌, 씨 뺀 솜 3냥, 파유둔(破油芚) 1부, 분당지(粉唐紙) 5장을 올릴 것.

102)『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甘結秩, p.0137.

同牢宴器皿內入時架子四部逵具架子軍八名引路軍二名負持軍十名紅木五幅袱五件六幅袱一件紅紬三幅袱二件四幅袱一件進排事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삼방의궤 감결질, p.200.

동뢰연의 그릇과 옥동자(玉童子)를 대내에 들일 때 필요한 줄을 갖춘 가자(架子) 5부, 가자군 10명, 인로군 2명, 부지군 10명, 가함(假函) 2부, 홍색무명 5폭 보자기 5건, 홍주 3폭 보자기 4건을 올릴 것

103)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등으로 상(床) 또는 안상(案床) 등을 덮거나 다리부분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이다. 또한 함·궤 등을 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함보(函袱), 교문지(敎文紙)를 싸기 위한 교문보(敎文袱)등 보자기 안에 싸여지는 물품을 기준으로 명칭을 정한 예도 있다. 보자기의 외형에 따라 명칭이 정해진 예로는 홑보자기[단보(單袱)]와 겹보자기[겹보(袂袱)]가 있다. 홑보자기는 한 장의 천으로 만든 보자기를 뜻하며, 겹보자기는 두 장의 천을 맞대어 겹으로 바느질한 보자기를 일컫는다.

상건(床巾)은 원래 상 전체를 덮는 형태로 사용되었으나 『영조실록』영조 28년(1752) 4월 2일 기사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보는 으레 4면(面)을 둘렀는데 이제 생초(生綃)의 큰 보(袱)로 덮는다면 낭비일 뿐더러 제도도 잘못된 것 같으니, 덮지는 말고 두르기만 하라."[104]는 전교가 내려짐에 따라 상을 두르는 용도로 사용된 보자기이다.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일이 1759년(영조 35)임을 고려할 때 이때의 상건(床巾)은 두르는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건(覆巾)은 상, 궤, 함 등을 덮는 용도로 독책상(讀冊床)이나 독보상(讀寶床)처럼 크기가 비교적 작고 낮은 상을 덮거나 상 위의 물건을 덮는 데 사용된 보자기이다.

책비 시 왕비 책봉에 소용되는 옥책(玉冊) 등의 중요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 사이사이에 끼우는 보자기로 사용되었던 막이용 핫보자기[유보(襦袱)]는 솜을 옷감 사이에 두고 바느질한 보자기이다. 본 의례에서는 옥책(玉冊)이 6첩으로 구성됨으로써 옥책(玉冊)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솜을 넣은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 5첩이 사이사이에 끼워졌다.

싸개용 핫보자기[유보(襦袱)]는 금보(金寶), 보통(寶筒), 보록(寶盝), 주

104)『영조실록』76권, 1752년(영조 28) 4월 2일의 기사.
都監郎廳洪樂性曰: "監造官問祭床所覆巾大小矣 °" 上顧謂金尙星曰: "床巾, 例繞四面, 而今以生綃大袱覆之, 非特浮費, 制度似誤, 其令不覆而繞之 °" 仍命各陵墓床巾, 一例著式

통(朱筒), 주록(朱盝) 등 중요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솜을 옷감 사이에 두고 바느질하여 제작된 보자기이다.

갑(匣)은 왕비의 책봉에 대한 내용을 옥 조각[옥간(玉簡)]에 글자로 새겨서 책 모양처럼 엮은 의례용 문서인 옥책(玉冊)을 싸는 데 사용하는 십자형 겹보자기이다. 밖은 홍광적(紅廣的)을 사용하고 안은 남광적(藍廣的)을 사용하며 속 넣기는 홍색으로 물들인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였다. 길이와 너비는 첩수의 다소에 따라 포백척(布帛尺)[105]을 사용하여 조절하며, 끝단에 상아(象牙)로 단추(丹樞)를 달았다. 옥책(玉冊)의 포장은 십자형태의 갑(匣) 가운데 놓은 후 십자의 날개 중 상단과 하단을 위로 덮어서 단추로 채우고 마찬가지로 우단과 좌단을 위로 덮어 단추로 채웠다.

2) 옷감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대다수가 홍초(紅綃)나 홍주(紅紬)로 제작되었다. 홍초(紅綃)는 생사로 직조된 얇은 비단으로 조선시대 관리들 조복의 옷감으로 사용되었다. 홍주(紅紬)는 홍색 물을 들인 명주의 총칭으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견직물의 한 종류이다. 그밖에 짙은 다홍색의 비단인 대홍광적(大紅廣的)이 있다. 옥책의 안싸개용으로 사용되는 대홍방사주(大紅方絲紬)는 대홍색 견방사의 일종인 방사로 짠 평견직물로 중국 호주(湖州)의 특산물이다. 방사주는 方絲紬, 方紗紬, 紡絲紬 등으로 표기되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서 대홍방사주(大紅方絲紬)는 옥책의 안싸개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방의궤에서 대홍방사주 15필이 사용된 기록이 있다.

이밖에 내함의 겉싸개용 보자기와 쌍이단엽금잔 및 은도금대 등의 기명을 싸기 위한 보자기 재질인 자적초(紫的綃)는 자적색 얇은 생사 견직물로서

105)포백척 : 포백의 단위를 잴 때 사용하는 자(1척=46.66cm).

조복의 옷감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은초아와 은수저 등의 기명을 싸기 위한 자적주(紫的紬)는 꼬임이 없는 중·하등품의 평견직물로서 가장 보편적인 견직물이며, 안보(按袱)의 주렴을 싼 자적토주(紫的吐紬)는 굵은 실로 짠 명주로 다소 두꺼운 견직물이다. 은봉병, 근배, 은바리, 은주발, 은수저첩 등의 기명을 싸기 위한 보자기의 재질인 홍세목(紅細木)은 올이 가늘고 고운 무명직물이다.

의궤에 기록된 보자기색의 대다수가 붉은 계통인데 홍색 물을 들이는 자초와 홍화는 다른 색에 비하여 염색 비용이 두 배 이상 들었으므로 조선시대에 서민들이 보자기의 염료로 사용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궁궐에서 쓰는 궁보는 대다수가 홍색으로 제작되었는데, 보자기 포장 후 외관상의 위엄을 짐작할 수 있다.[106]

영조는 의례용품의 사치를 경계하여 보자기 재질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이 있다. 『영조실록』영조 28년(1752) 11월 17일의 기록에 따르면 “혼전(魂殿)에 사용하는 보자기와 요 그리고 상건(床巾)을 무늬 있는 비단으로 사용하던 것을 모두 향주(鄕紬)로 대신하고, 그전에 향초(鄕綃)를 사용하던 것은 그냥 두라고 하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107] 또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1762년 영조가 혼례보자기에 대한 사치를 금한 내용이 담겨 있는 데, 직조 비용이 많이 드는 무늬가 있는 비단 대신 향주(鄕紬)를 사용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있다.[108]

---

106)이종남(2009),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서울:현암사, p.91.

107)『영조실록』78권, 1752년(영조 28) 11월 17일의 기사.
又敎曰: "太室坐榻所排, 昔則用綾, 今則用紬 ° 殯魂殿 `殯魂宮用綾緞, 於心若何? 此後殯殿紅廣織帳, 代以紅紬, 袱與褥 `床巾, 前或以綾緞者, 皆代以鄕紬, 前用鄕綃者, 仍前之意, 載之編輯 °"

108)『증보문헌비고』에는 1762년 영조가 궁중내의 사치를 경계하며 내린 전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지난해에 상호할 때에 비단보를 명주보로 대신 하였으니, 막중한 태실에도 명주를 썼는데. 책빈 때에 교명, 인책의 보를 명주로 대신하고 가례와 대례에 모두 이를 따를 것이며, 의대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것은 역시 줄여서 나의 만년에 근검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아아! 혼인은 풍족하고 사치한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문에 있으니, 사치함을 없애고 나라의 금지옥엽이 번성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국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보자기는 대부분 홍주(紅紬), 홍초(紅綃), 대홍광적(大紅廣的) 등의 무늬가 없는 옷감으로 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책비에 관련된 물목 중 금보, 옥책, 보통, 보록, 주통, 주록 등의 포장은 『국혼정례』에서 문단류의 대홍운문대단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궤에는 대홍색의 폭이 넓은 견직물인 무늬없는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책비에 사용된 보자기 유물은 금보와 보통을 싸는 보자기가 문단으로 직조된 만초연화문(蔓草蓮花紋)의 핫보자기로 제작되어 있다. 이는 국혼정례』의 규정과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기록과 다른 형태로 당시 기존의 옷감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3) 형태와 용도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문서나 물건을 싸기 위한 포장용, 기러기싸개 등과 같은 의례용품을 장식한 의장용, 상이나 물건을 덮는 덮개용 또는 이러한 물건들을 싸서 나르기 위한 운반용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별로는 한 겹의 옷감으로 제작된 홑보자기와 두 겹의 옷감으로 제작된 겹보자기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 홑보자기는 함이나 궤, 이부자리, 병풍 등을 싸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겹보자기는 주로 문서나 패물 등과 같이 함에 넣을 내용물을 싸는 데 사용되었다. 중요 문서나 패물은 겹보자기로 한번 싸서 함에 넣은 후 홑보자기로 그 함을 다시 싸는 것이 일반적인 예법이었다. 겉면을 싸는 홑보자기의 네 귀퉁이에 금전지가 장식되었다. 금전지와 술이 달린 보의 경우 내용물을 다 쌌을 때는 모아진 부분이 화려한 장식적인 효과를 냈다. 홑보자기와 겹보자기 사용의 예를 보면 납채 시 교문지 1장을 얇은 홍색의 생사비단[홍초(紅綃)]으로 만든 3폭(약 103cm x

---

역증보문헌비고, 제 73권 (서울: 사단법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9), p.206, 김수경(1998), 조선 궁보의 기능과 가치, 미술사학회지 12, pp.5-23. 재인용.

103cm)의 겹보자기에 싼 후 검은빛 옻칠을 한 중간 크기의 함(흑칠중함)에 넣어 6폭(약 206cm x 206cm)의 붉은빛 명주로 만든 홑보자기로 함을 쌌다.

핫보자기는 손상되기 쉬운 물건을 보호하도록 솜을 안에 넣어 만든 보자기로 책비 시 옥책(玉冊), 금보(金寶) 등 주요 물품을 싸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옥책(玉冊)이나 죽책(竹冊)의 경우 그 책 크기의 작은 막이용 핫보자기들이 각 책의 장 사이사이에 끼워졌고, 십자형태의 갑(匣)으로 불리는 보자기에 포장한 후 겹보자기로 싸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영조·정순왕후 가례의 책비에서는 짙은 다홍색의 비단인 대홍광적(大紅廣的) 핫보자기로 옥책(玉冊)의 첩과 첩 사이에 상하지 않도록 끼워 넣고 위·아래에는 종이로 끼워 물품을 보호하였으며, 갑(匣)으로 포장한 후 다시 대홍방사주 겹보자기로 쌌다. 부건(覆巾)과 상건(床巾)은 가례 시 사용하는 기물을 덮거나 상의 다리를 가리는 오늘날의 테이블보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상건(床巾)은 의례 시 함이나 궤를 임시로 올려놓을 때 사용하는 형태적으로는 상다리가 긴 안상(案床)에 다리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부건(覆巾)은 상위의 물건을 덮는 용도나 상을 덮는 테이블보 역할을 하였는데 옥책(玉冊)이나 금보(金寶)등의 귀중품을 넣은 소함을 올려 이동과 전달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독보상(讀寶床)이나 독책상(讀冊床)에는 부건(覆巾)을 주로 사용하였다.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상건(床巾)과 부건(覆巾)의 용도는 <표 3-13> 과 같다.

<표 3-13> 의궤에 수록된 상 덮개용 보자기

상 이름	용도	절차	사용 보자기	비고
당주홍칠 안상	흑칠중함	납채	홍주 6폭 상건 1	함 등의 의례용품을 올려놓고 준비하는 데 사용한 상
	흑칠중함	납징	홍주 6폭 상건 1	
	왜주홍칠 속백함	납징	홍주 6폭 상건 1	
	당주홍칠 함	납징 예물	홍주 6폭 상건 1	
	당주홍칠 중함	고기	홍주 6폭 상건 1	
	왜주홍칠 명복함	책비	홍주 6폭 상건 1	
왜주홍칠 배안상	왜주홍칠 궤	책비	홍주 6폭 부건 1	교명을 넣은 왜주홍칠궤를 올려 놓는 상
왜주홍칠 독책상	옥책	책비	홍주 5폭 부건 1	옥책를 올려 놓는 상
왜주홍칠 독보상	금보	책비	홍주 5폭 부건 1	금보를 올려 놓는 상
왜주홍칠 전안상	산기러기	친영	홍주 10폭 상건 1 홍주 6폭 부건 1	산기러기를 보자기에 싸서 올려 놓는 상
왜주홍칠 찬안상	동뢰연 기명	동뢰연 기명	상건 2	2좌가 사용됨 동뢰연에 반찬을 올리는 상

4) 제작자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류는 상의원(尙衣院)에서 제작되었다. 상의원(尙衣院)은 왕실에서 소용되는 물건을 제작하고 보관·관리하는 관청으로 왕실 의례 시 소용되는 모든 물품의 제작과 공급을 담당하였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중 도청의궤의 기묘 5월 9일 도감낭청과 영조의 대화를 살펴보면 가례 시 사용하는 각종 직조와 바느질을 상의원에서 거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목이 있다.[109]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숙련된 궁중의 침방나인 혹은 침선비에 의해 제작되었다. 침선비들은 상의원과 제용감(濟用監)에 속해져 있었고, 침선비들은 도감이 설치되면 다른 직인들과 더불어 일방, 이방, 삼방에 배치되어, 염색 및 직조와 더불어 궁중에서 소용되는 다양한 물품들을 제작하였다. 그들은 의녀들과 마찬가지로 차출된 관에 소속된 신분이었고 의궤에 보수와 이름이 수록된 전문인이었다.

강서영(2012)의 연구[110]에 의하면, 조선말 궁중에서 제작 사용된 보자기 발기에 나타난 제작 침공가는 보자기 크기가 클수록,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상의원(尙衣院)에 속했던 침선비들의 이름이 일방에 차애(次愛), 홍애

---

109)『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啓辭秩 己卯五月初九日, p.0023.
都監郎廳, 以都提調意 啓曰, 嘉禮時, 大殿· 中殿衣襨所入匹緞及 敎命所入各樣織造, 例自尙方擧行矣 °今亦令尙衣院別單書入後, 趁速擧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계사질, pp.8-9.
도감 낭청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가례 시 대전(大殿)과 중전(中殿)의 옷에 쓰이는 비단과 교명(敎命)에 쓰이는 각종의 직조(織造)는 으레 상방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상의원(尙衣院)에서 별단에 써서 들인 뒤에 서둘러 거행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도청의궤 기묘 5월9일)

110)강서영(2012), 조선말 궁중 보자기 연구, 고궁문화 5, p.77.
보자기가 클수록 그에 따른 침공가도 더 높이 책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맛보보다는 인문보의 침공가가 더 높게 책정되었다. 누비맛보는 맛보에 비해 10배나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옷감을 누비는 일이 그만큼 고된 일이었던 까닭이다."
<표 4-3> 궁중발기(보발기)를 통해 본 보자기 종류별 침공 임금표 참조.

(紅愛), 분애(粉愛), 옥대(玉臺), 이방에 초정(草貞), 행화(杏花), 두매(斗梅), 옥랑(玉娘), 삼방에 춘향(春香), 재정(再情), 일애(一愛), 취열(擊烈) 등으로 기록[111]되어 있다.

111)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一房儀軌－工匠秩, p.0250.
針線婢次愛紅愛粉愛玉臺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二房儀軌－工匠秩, p.0080.
針線婢草貞杏花斗梅玉娘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三房儀軌－工匠秩, p.0152.
針線婢春香再情一愛翠烈

Ⅳ.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보자기의 생활문화적 가치

1. 국혼의 권위와 위엄

일생의례는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거쳐야 되는 관문이자 절차로서 이때 쓰이는 물품은 일반 생활용품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집기나 기구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의식의 상징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112]. 특히 일생의례 중에서 혼례는 신분에 관계없이 의식에 사용하는 물품에는 신랑과 신부의 화합과 행복 그리고 백년해로를 기원하였다.

왕실에서 사용된 보자기는 일상용과 의례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례용 보자기는 의례 시 예물, 의례용품을 포장하여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113] 특히 왕비의 책봉의식인 책비에 소용되는 의례용품을 보자기로 포장하는 과정인 봉과(封裹)는 관리가 주관하고 거행하는 의식이었다. 왕비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보, 옥책 등은 홍색 솜보자기로 싸서 내함에 넣고 비단보자기로 싼 후 다시 외함에 넣었다. 외함은 자물쇠로 채우고 열쇠를 열쇠주머니에 넣어 자물쇠에 건 후 비단보자기로 다시 쌌다.[114] 이러한 의식은 의례용품을 싸는 단계에서부터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는 예로 모든 과정은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 쓰인 의례용 보자기는 그 시대의 최고 장인이 만들어 당시대 문화의 품격을 보여주며, 각 절차에 따른 용도와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가례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용도에 맞춰 준비·제작되

112)임재해(1997), 일생의례 관련 물질자료들의 상징적 의미와 주술적 기능, 한국민속학보 8, pp.51-76.
113)강서영(2012), 조선말 궁중 보자기 연구, 고궁문화 5, p.47.
114)국립고궁박물관 편저(20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서울:국립고궁박물관, p.149.

었는데 왕실에서 사용되는 보자기는 조각천이 아닌 온전한 옷감으로 제작되었다는 점과 왕실에만 쓸 수 있는 색인 홍색계통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여준다. 재료로는 비단이 주로 사용되었다.

영조·정순왕후의 가례는 1759년 6월 2일 초간택을 시작으로, 삼간택,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가례도감(嘉禮都監)에서 보자기를 포함한 필요 물목을 미리 정하고 각 절차와 용도에 맞춰 준비·제작하였다. 각 절차에 사용된 보자기의 의미와 특징은 <표 4-1>과 같다.

<표 4-1>과 같이 각 절차에 맞춰 사용된 보자기는 포장된 내용물에 부합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삼간택이 끝난 왕비 후보자에게 왕비의 대우에 합당한 물품들을 의례용 보자기에 싸서 보냈다.[115] 이는 왕비 예정자가 왕가의 일원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납채는 간택 이후 육례가 시작되는 첫 번째 행사로 채택하는 예를 받아들이는 것[納]이다.[116] 왕실에서 신부 측에 왕비로 삼는다는 교명문을 보내면 신부 측에서 이에 화답하는 답문을 보내는 의식으로, 기러기와 제반 문서가 보자기에 싸여져 왕비의 집에 전달됨으로써 국왕의 가례가 시작됨을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납징은 국왕이 간택된 왕비에게 혼인의 예물을 보내는 의식으로, 국왕의 교시와 예물이 왕비의 집으로 전해졌으며, 왕비가 임시로 거처하는 별궁에는 왕비에게 소용되는 물품과 예물이 보자기에 싸여 보내졌다.

혼인날을 정하여 통보하는 의식인 고기(告期)에는 가례일을 알리는 교문과 답문지를 싸는 보자기가 사용되었다.

---

115) <부록2-7>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별궁예물에 사용된 보자기 참조.

116) 김지영(2017), 조선후기 왕자녀의 '혼례용품'과 그 상징성에 관한 일고찰: 1749년 『국혼정례(國婚定例』 이전 '가례등록(嘉禮謄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205-238.

<표 4-1> 영조·정순왕후 가례절차의 의미와 사용된 보자기의 특징

가례절차	사용된 대표적 보자기의 종류	특징	상징적 의미
간택 신부후보 중 왕비후보를 선택하는 절차 1759년 6월 9일	왕비 간택자의 본댁과 별궁에 드리는 예물을 싼 보자기	삼간택 후에 예물이 전해짐	새로운 왕비가 정해짐
납채 간택된 왕비에게 교명문을 보내는 의식 1759년 6월 13일	왕비간택을 알리는 교명문과 답문을 싼 보자기	부부의 화합과 정절의 상징인 기러기가 보자기에 싸여 전해짐	왕비 간택을 문서화함
납징(납폐) 혼인의 예물을 보내는 의식 1759년 6월 17일	왕비에게 보내는 혼인예물을 싼 보자기	부부의 화합과 정절의 상징인 기러기가 보자기에 싸여 전해짐	왕비의 신분의 합당한 예물이 보내짐
고기 혼인날을 정하여 신부측에 알림 1759년 6월 19일	가례일을 알리는 교문과 답문지를 싼 보자기	혼인 날짜를 알리는 교문과 이에 대한 신부측의 답문이 보자기에 싸여 전해짐	국왕과의 가례일을 정하여 통보함
책비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 1759년 6월 20일	왕비책봉의식에 사용될 물품을 싼 보자기	교명, 옥책, 금보, 보통, 명복 등이 전해짐	왕비를 상징하는 물품이 하사됨
친영 별궁에서 왕비를 모셔오는 의식 1759년 6월 22일	왕비를 상징하는 물품들이 보자기에 싸여 궁으로 들어감	홍색보에 싸인 물품들이 채여에 실려 행렬을 지어감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줌

왕비의 책봉 의식인 책비에는 국왕이 왕비 책봉을 선포하고 정사 일행이 교명(敎命), 옥책(玉冊), 금보(金寶), 명복(命服) 등과 예물을 홍색 보자기에 싸서 전달하였다.

실제적인 혼례절차인 친영은 별궁으로부터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왕비의 책봉의식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홍색 보자기에 싸여 채여(彩輿)에 실려 행렬을 이루어 본궁으로 이동하였다. 국왕이 별궁으로 행차하여 전안례를 행하고 왕비를 궁으로 모셔오는 의식인 친영은 새 왕비의 탄생을 백성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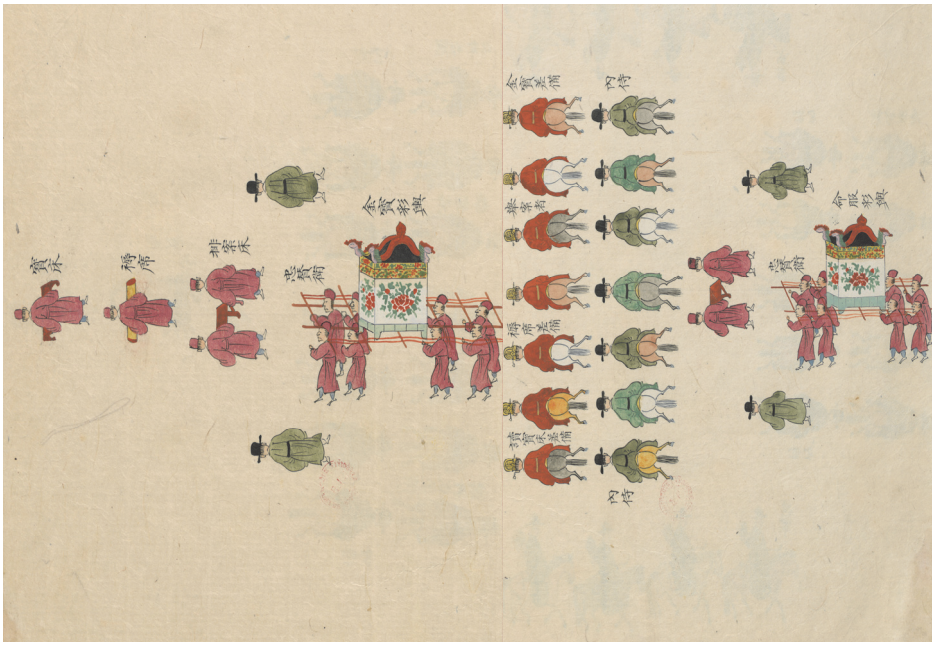

<그림 4-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중 채여

조선왕실에서의 의례는 유교의 이념을 따르고 바르게 실천하려는 왕실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이는 실행의 장이기도 했다. 특히 왕의 가례는 한 나라의 근본이 시작되고 다음 세대에 나라를 이어갈 후사를 생산하기 위한 중

요한 의식이었다. 따라서 가례의 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기능적인 용도 외에 일반 백성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유교적 예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싸고 나르는 오늘날에서의 포장 개념의 보자기 용도에 더하여 보자기 자체가 의례에서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했다. 보자기는 왕실가례의 절차마다 중요 물품과 상징물을 싸서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117]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색은 대부분 홍색으로 당시 염색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특수한 색이었으며,[118] 왕실의 가례과정에서 조선왕실의 상징인 비단 홍색 보자기에 싸여진 가례물품들은 보자기의 외관만으로도 경외심을 부르는 왕실의 부와 권위의 상징이었다.

2. 가례에 깃든 성(誠)과 예(禮)

보자기는 생활용품이자 의례용품으로 일상생활에서 싸고, 덮고, 나르는 기능적 용도와 정성과 예절을 표현하는 상징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의례용 보자기는 물건을 보호함과 동시에 예의를 표현하고 장식하는 면이 현대의 포장 개념과 유사하다.[119] 우리의 포장문화는 서구문화와는 다르게 보자기를

117)<표 4-1>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의미와 특징 참조.

118)『세종실록』35권, 1427년(세종 9) 2월 19일의 기사.
今上自卿大夫, 下至賤隷, 好著紫色, 因此紫色之價, 一匹所染, 又直一匹, 至於衣裏, 皆用紅染, 丹木紅花之價, 亦爲不賤 ° 非惟奢侈相尙, 等威無辨, 物價騰(湧) [踴] , 亦爲可慮 °
지금 위로는 경대부(卿大夫)로 부터 아래로는 천례(賤隷)에 이르기까지 자색(紫色)을 입기를 좋아하니, 이로 인하여 자색(紫色)의 값이 한 필 염색하는 데 값이 또 한 필이나 듭니다. 옷의 안찝까지 모두 홍색의 염료(染料)를 쓰게 되니, 단목(丹木)과 홍화(紅花)의 값도 또한 헐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치를 서로 숭상하여 등차(等次)의 분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가(物價)가 뛰어 오르게 되니 또한 염려가 됩니다.

119)김효주(2014), 의례용 보자기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학회지 11, pp.49-60.

이용하여 물건의 형태에 따라 싼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가변성과 융통성을 보여준다. 특히 싸는 과정에서 여러 번 물건을 감싸는 행위를 통해 소중하게 물건을 다루면서 정성과 예의를 갖추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담기도록 하였다.[120]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에서도 육례과정의 주요 물품은 보자기에 싸서 전해졌으며 특히 금보, 옥책 등의 중요 상징물은 솜을 넣어 제작된 핫보자기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였다.[121] 또한 별궁 및 본방에 보내는 예물은 안싸개용 겹보자기에 싸서 함에 넣은 후 재차 겉싸개용 보자기로 싸는 과정을 거쳐 전해졌으며, 이는 왕실가례에서도 보자기가 내용물에 대한 정성과 예절의 표현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122]

주선희와 구동모(2015)의 연구에 의하면 물건을 싸는 포장은 안에 있는 물품의 첫 인상으로 포장 안에 있는 물품의 가치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정성을 나타내는 도구이며 포장의 호감도는 그에 담긴 물건에 대한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3]

오늘날에도 보자기는 혼례, 상례 및 제례 등의 의례용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예절과 정성을 담는 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다. 궁중에서 제작·사용되는 궁보는 의전용으로 다수 사용되었고. 이러한 의례용 보자기는 용도에 맞춰 사전에 계획하여 최고의 장인들에 의해 제작 되었다.[124]

전통 사회에서 보자기에 대한 가치와 비중을 이해하는 예로 표전문(表箋文)[125]을 싸는 보자기를 들 수 있는데 표전문보는 의례용 보자기 중 정성과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 국가 간 의전용품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120)주영애(2016), 예절교수방법론 강의노트, 서울:성신여자대학교.
121)<표 3-1>~<표 3-7> 참조.
122)<표 3-8> 참조.
123)주선희·구동모(2015), 제품포장의 정보적/시각적 요인이 제품의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영학회, 30(4), pp.257-284.
124)강서영(2012), 조선말 궁중 보자기 연구, 고궁문화 5, pp.46-82.
125)조선이 중국의 황제와 황태자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러한 표전문 보자기의 예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태종 18년(1418) 7월 29일 기사[126]에 의하면, 하천추사(賀千秋使)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윤사영(尹思永)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와서 표전문을 보자기로 싸지 않고 전달한 것에 대해 “차후로 보자기에 싸서 전달하여야 되겠다.”고 보고한 기록이 나온다. 이후 세종 21년 6월 19일의 기록[127]에는 중국에 보내는 표전문의 통 및 보자기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실시하는 등 표전문을 싸는 보자기가 단순한 포장 용도가 아닌 정성과 예절을 갖추기 위한 의전용품임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예조와 공조에 전지하기를, "대저 그림에서 가는 획[세화(細畫)]이 있고 없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여, 중국에 보내는 표전(表箋)의 통(筒) 및 보자기(袱)에 그린 용·봉(龍鳳)이 몸통과 날개 등을 한 획(畫)도 틀림이 없어야 할 것인데, 국초(國初)에 중국에게 이미 견책을 받았으나, 그 뒤에 혹은 눈알을 그리지 아니하고 혹은 발톱을 그리지 아니하여, 배표(拜表)하는 날에 이르러서야 그릇됨을 알고 관리들이 탄핵을 입은 자가 있으니, 금후로는 표전의 통과 보자기에 그린 용의 몸·발톱·머리·뿔·귀·눈·코·입 따위와 그린 봉(鳳)의 발·발톱·털·날개·입·눈 따위를 다시 자세히 살피고 검열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 하였다.

또한 문종 즉위년(1450) 10월 9일의 기록[128]에는 윤봉(尹鳳)이 중국 황

126)『태종실록』36권, 1418년(태종 18) 7월 29일의 기사.
賀千秋使藝文館提學尹思永回自北京 ° 思永啓曰: "臣奉箋筒, 初到遼東, 遼東以黃袱裹外, 自遼東至帝所, 相遞而裹 ° 獨我國不裹以行, 誠爲未便 ° 請自今以後, 奉使者以黃袱裹行 ° " 敎曰: "聖旨筒到我國時, 亦裹黃袱乎?" 李明德問於通事金乙玄, 乙玄曰: "然 ° “

127)『세종실록』85권, 1439년(세종 21) 6월 19일의 기사.
乙未/傳旨禮曹工曹:
大抵圖畫細畫之有無, 人未易知 ° 事大表箋筒及袱所畫龍鳳支體羽翼, 不可差誤一畫, 而國初已被上國之責 ° 其後或不點眼, 或不畫(瓜)[爪] , 至拜表之日, 乃知其誤, 官吏被劾者有之 ° 今後表箋筒及袱所畫龍支爪頭角耳目鼻口及所畫鳳足爪毛羽口眼, 更須備細審閱, 毋致差誤 °

128)『문종실록』4권, 1450년(문종 즉위년) 10월 9일의 기사.

제가 표전문을 싼 보자기와 표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윤봉(尹鳳)이 관반(館伴)에게 이르기를, "황제(皇帝)가 본국(本國)의 표전(表箋)을 싼 화금보(畫金袱)를 보고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비록 세탁(洗濯)하더라도 그림은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표문(表文)을 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이처럼 가늘게 쓸 수가 있는가?' 하니, 조관(朝官)도 또한 찬미함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외교적 의례를 지키기 위해 예절과 정성으로 제작되어 표전문을 싸기 위한 용도의 보자기는 『영조실록』에 거듭 언급된다.[129] 영조 14년(1738)에 기록된 칙서를 싸는 황색 보자기에 관한 내용과 영조 19년(1743)의 외교용 보자기를 싸는 누런 보자기에 대한 언급은 황색 보자기가 중국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색임을 고려할 때 그 내용물인 황제의 칙서 수령과정을 논의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자기가 단지 예절의 표현만이 아니라 그 외관으로도 내용물에 대한 의미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 간의 외교에 사용된 의전용 보자기와 더불어 나라의 중요한 의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중요한 의례용품으로 실록 등의 사료에 다수 언급이 되고 있다.

尹鳳謂館伴曰: "皇帝見本國表箋所裹畫金袱, 稱贊不已 。其袱雖洗濯, 畫猶不滅 。見表文曰: '何以能書, 如此其細乎?' 朝官亦多贊美 。"

129)<표 4-2> 참조.

<표 4-2> 영조실록의 보자기 관련 내용

일시	원 문	비고
영조 4년 1728년 3월 22일	“금랑(禁郞)이 여주(驪州)에서 죄인을 붙잡아 오는데 호송하는 군졸이 하나도 없고, 죄인 역시 낭두(囊頭)를 하지 않고 밤에는 칼[가(枷)]을 풀어주어 도망하게 했으니...”	낭두(囊頭) : 죄인의 머리에 보자기를 씌움.
영조 14년 1738년 2월 12일	"듣건대, 그 가죽 상자 속에 황색 보자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칙서가 아니라면 황색 보자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황색보자기 : 외교문서인 칙서를 싸는 외교용 보자기
영조 19년 1743년 10월 27일	"만약 명(明)나라에서 내려 준 것이라면 내가 어찌 한낱 내관(內官)을 시켜 받게 하였겠는가? 지금 선처할 방도는 궁시를 누런 보자기에 싸서 내시에게 짊어지게 한 다음 칙사에게 황제가 내린 물건을 감히 찰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 또한 옳을 것이다."	누런보자기 : 외교문서인 칙서를 싸는 외교용 보자기
영조 28년 1752년 2월 11일	예조 당상과 예방 승지(禮房承旨)가 보책궤(寶策櫃)를 받들어 안상(案上)에 내어놓고 보자기를 풀었다.	보책궤(寶策櫃)를 싸는 보자기
영조 28년 1752년 2월 28일	"자전(慈殿)의 옥책(玉冊)·옥보(玉寶) 장황(粧績)과 싸는 보자기는 모두 면주(綿紬)로 하라... “	옥책(玉冊)·옥보(玉寶)를 싸는 보자기의 재질에 대한 언급 면주(綿紬) : 무늬가 없는 명주 장황(粧績) : 서책이나 서화첩(書畵帖)을 꾸미어 만드는 것
영조 28년 1752년 11월 17일	“뒤로는 빈전에 홍광직(紅廣織)으로 두른 휘장을 붉은 명주로 대신하고, 보자기와 요그리고 상건(床巾)은 그 전에 무늬 있는 비단으로 사용하던 것을 모두 향주(鄕紬)로 대신하고,그전에 향초(鄕綃)를 사용하던 것은 그냥 두라는 뜻으로 책에 기록하여 편집하도록 하라."	태실(太室)의 좌탑(坐榻)에 까는 상건과 휘장을 무늬가 있는 비단에서 명주와 향주로 대신하도록 함 명주 : 무늬 없이 명주실로 짠 피륙 향주(鄕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중·하급 명주 향초(鄕綃):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급 명주
영조 40년 1764년 10월 9일	“선정이 죽은 뒤에 그의 평소 언의(言議)가 글에 기록되어 있는데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긴요한 것만 뽑아 모아 두 책을 만든 다음 《박문순문초(朴文純文抄)》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자기로 싸서 상소와 함께 올립니다.”	책보 : 책을 싼 보자기

왕실의례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왕의 가례는 철저한 준비 과정과 계획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가례에 소용되는 용품들은 각 절차별로 필요 품목, 용도 및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물목의 확보와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왕실의례에 사용되는 보자기는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물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민간과는 구분되는 색과 재질을 사용하였고, 용도와 사용처를 미리 계획한 후 제작되었다. 특히 가례 시 사용된 왕비 책봉 관련용품인 금보(金寶), 옥책(玉冊), 교명문(敎命文) 등을 보자기로 포장하는 절차를 “봉과(封裹)”라 하여 의례의 한 절차로 엄격히 진행되었다.

봉과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금보(金寶)의 봉과절차를 예로 들면, 먼저 금보를 홍색의 영자를 달아 장식하고 보자기에 싼다. 영자는 자색의 명주 또는 항라(亢羅)로 만들며 금보를 보자기에 싼 후 영자 두 개를 아래에서 십자로 교차하여 위로 묶는다. 이때 보자기의 네 귀퉁이와 영자에는 남융사(藍絨絲)의 금전지(金錢紙)를 달아 장식한다. 보자기에 싼 금보는 보통(寶筒)에 넣게 된다. 통 안에는 의향(衣香)을 넣고 풀솜[설면자(雪綿子)]을 넣어 어보가 움직이지 않게 충전시켰다. 보통은 금보와 마찬가지로 다시 보자기에 싸고 자색 영자로 묶은 후 보록(寶盝)에 넣는다. 보록 안에는 의향과 목화솜을 끼워 넣어 충전하며 바닥에 전은 깔지 않는다. 보록에는 자물쇠[쇄약시구(鎖鑰匙具)]가 달리는데 열쇠를 넣은 주머니를 낭자(囊子) 혹은 시가(匙家)라고 하였다. 보록은 다시 보자기로 싸고 영자로 묶어 호갑(護匣)에 넣었다. [130]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는 각 가례 절차에 사용할 보자기의 사용처와 수량, 제작자 등이 기록되어 있고 이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

130)문화재청 편저(2010), 조선왕실의 어보 제3권 보자기, 서울:예맥, p.634.

여주고 있다. 이는 예를 중요시 했던 조선왕실에서 의례물품을 포장하는 절차를 정성과 예절로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순조의 장녀인 명온공주[131]가례의 제반사항을 항목별로 가례청에서 정리해 놓은 『명온공주가례등록(明溫公主嘉禮謄錄)』에 따르면 '인문보 3건을 만드는 데 침선비 6명, 바늘 12개, 생목사 1량' [132]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평균 한 개의 보를 제작하는 데 침선비 2인이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궁중생활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며, 왕실에서 사용된 보자기의 실용적 기능 외에 왕실 가례의 과정에서 보자기를 통해 각 단계마다 정성된 절차와 그에 필요한 예의범절을 다해왔다는 바를 반영한다.

왕실가례에 사용되는 보자기는 상방에서 선발된 침선비들에 의해 제작 되었는데, 궁보를 제작한 침선비들의 경우 그 당시 남자 직인들과 같은 임금을 받고 일한 최고의 장인이었다. 의궤에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133]되어 있고, 궁중 물품목록을 기록한 궁중발기에는 각 보자기 품목별 규격 임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제작된 가례용 보자기는 국가의 경사인 왕의 가례에 중요 물품임을 상징하는 정성과 예절이 깃든 포장으로써 의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31)명온공주(1810~1832) :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태어남 장녀. 18세에 봉작되고 13세(1823)에 김한순의 아들 현근과 가례를 올림.

132)『明溫公主嘉禮謄錄』, 甘結秩, 庚寅四月初五日, "引紋袱三件縫造次針線婢六名針子十二介生木絲一兩.

133)상의원(尙衣院)에 속했던 침선비들의 이름이 1방에 차애(次愛), 홍애 (紅愛), 분애(粉愛), 옥대(玉臺), 2방에 초정(草貞), 행화(杏花), 두매(斗梅), 옥랑(玉娘), 3방에 춘향(春香), 재정(再情), 일애(一愛), 취열(擊烈)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4-3> 궁중발기(보발기)를 통해 본 보자기 종류별 침공의 임금[134]

규격	맛보	겹맛보	쟁 겹맛보	누비맛보	인문보	갸자보
외폭	-	7푼	-	-	-	-
1폭	7푼	-	1전	-	-	-
1폭 반	1전 ~1전5푼	-	1전5푼	1냥5전	2전5푼	-
2폭	1전3푼 ~2전5푼	-	2전	2냥	3전~5전	-
2폭 반	1전5푼 ~3전	2전	3전	2냥5전	5전	-
3폭	2전 ~3전5푼	2전5푼	3전5푼	3냥	8전~1냥	-
3폭 반	-	-	-	-	1냥	-
4폭	-	-	-	-	1냥3전 ~1냥9전	5전
5폭	-	-	-	-	1냥 5전 ~2냥1전	-
6폭	-	-	-	-	1냥7전 ~2냥3전	6전
7폭	-	-	-	-	2냥 3전 ~2냥5전	-

3. 왕실의 사치 배제를 위한 절검(節儉)

조선은 건국 이래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의례의 정착에 힘써 왔으며 의례를 행함에도 검소하고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가치 있는 덕목으로 중시하였다. 조선시대 규범서에 의하면 “의·식 생활에서의 소비는 추위를 가릴 만큼만 입도록 하고 음식은 배를 채울 만큼만 먹으라고 하였으며 의복·음식

134)강서영(2012), 조선말 궁중 보자기 연구, 고궁문화 5, p.77.

의 사치를 금하며 먹는 것, 입는 것을 아끼고 검소히 하지 않으면 재물이 어떻게 모이겠는가?" 라고 가르치고 있다.[135] 또한 조선의 의례문화에 근간이 된 대표적인 가례서인 『가례(家禮)』,『가례집람(家禮輯覽)』,『사례편람(四禮便覽)』등의 내용 중 혼례 시 바람직한 소비관을 짐작하게 하는 용어로 사치배제(奢侈排除)와 검소(儉素)를 들 수 있는데 즉 혼례를 행함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사치를 금하여 검소하게 행함을 말하는 것이다.[136] 의례 가운데서도 특히 혼례에 있어서는 절제된 소비가 중요한 미덕임을 강조하였으며 사치로 인해 본래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음을 경계하라 가르쳤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례 시의 과소비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이에 따라 혼례의 사치를 금지하는 다양한 규제가 사회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던 조선 전기부터 사회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중기까지 마련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국법과 왕명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이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137]

조선이 건국된 태조에서부터 고종까지 혼례 시 혼례용품에 대한 관련 기록은 총 201건으로 <표 4-4>와 같다. 그 내용은 과다한 혼수를 금하는 법과 규정을 언급하거나, 규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 54건, 물목별 사치한 혼례용품을 금하거나 이를 대치하는 용품을 권하는 내용 및 혼수용품 사치로 인한 폐단에 대한 내용 70건, 사대부와 왕실 등의 사회 지도층의 사치한 혼례를 지적하는 내용 77건으로 분류된다.

---

135)이길표·주영애(1999),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신광출판사, p.172.
136)최배영(1998), 家禮書를 통해 본「婚禮」觀 硏究 : 「嘉禮」.「家禮輯賢」.「四禮便賢」,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8-9.
137)<부록1-1>『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 시 사치에 대한 기록 참조.

<표 4-4>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 시 사치금지에 관한 내용 건수

왕조	내용별 건수			총 건수
	법/규정 관련	혼례물품 관련	왕실/사대부 관련	
태조	-	7	-	7
태종	-	1	-	1
세종	-	5	2	7
성종	10	5	10	25
연산	8	1	8	17
중종	15	25	37	77
명종	10	4	3	17
선조	-	4	-	4
광해	-	1	-	1
인조	3	4	8	15
효종	1	4	2	7
현종	2	1	1	4
숙종	1	3	3	7
영조	1	2	2	5
정조	3	2	-	5
순조	-	1	-	1
고종	-	-	1	1
총계	54	70	77	201

조선은 건국 초부터 반복적으로 혼수의 사치에 대한 규제와 법령을 제정하는데 성종 3년(1472) 1월 22일의 기록[138]에 따르면,『속육전(續六典)』의 혼인(婚姻) 조목에 옷감은 능금단자(綾錦段子)는 쓸 수가 없고, 금은기명(金銀器皿)을 쓰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무리한 혼수를 마련하고, 이런 풍속을 따르지 못하여 혼인시기를 잃는 자가 많다고 하였다. 이에 『속육전』의 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좀 더 강화된 규정의 추가가 지시되었다. 성종 13년(1482) 2월 12일의 기록[139]에는 사대부라도 혼례 시 사치를 금하는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헌부에서 국문을 할 만큼 중대한 법으로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의 시행에도 연산군 9년(1503) 2월 13일의 기록[140]에는 혼례 시 사치풍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중종 17년(1522) 8월 12일 기록[141]에는 혼례용품으로 수입된 중국 물

---

138)『성종실록』14권, 1472년(성종 3) 1월 22일의 기사.
《續六典》婚姻條: '衿褥皆用綿紬 `緜布, 毋得用綾錦段子 ° 新婦衣飾, 稱家有無, 不必用紗羅 `綾段 ° 昏夕拜席, 勿設圜毯, 只設單席 ° 新婦初謁舅姑之日, 饌品用七器, 乳母一 `侍婢二 `奴子不過十名 °' 近者婚姻過制, 納綵者必用綵段, 婚夕設宴, 以待賓客 ° 壻家用綵段 `金銀器皿, 盛之函籠前行, 否則人皆笑侮 ° 謁舅姑之日, 宴饌幾至數十品, 夫家多以布帛酬之, 競尙華侈, 務欲勝人 ° 以此貧不能辦, 婚姻失時者有之 ° 今後一依《續六典》舊制禁斷, 如堂上官女子, 侍婢四名 `奴子不過十四名 °

139)『성종실록』138권, 1482년(성종 13) 2월 12일의 기사.
執義姜龜孫啓曰: "我國婚禮, 已有著令, 使各從其品, 毋得踰越 ° 今聞申瀞與韓澗約婚, 納采用絲金朱紅函, 盛以紗羅綾段十五匹 `銀一丁, 裹以都多益大紅匹段袱 ° 瀞非不知禁制也, 乃欲誇示豪富, 輕犯憲章, 請鞫問治罪 °" 正言鄭光世曰: "近姜子平與人約婚, 以段子一匹爲幣, 其家以謂輕我, 乃不與婚 ° 俗侈之弊, 一至於此 ° 申瀞之事, 臣亦聞之 °" 上問左右 ° 領事李克培對曰: "古之納采者, 但以袱裹常衣而已 ° 今俗尙如此, 婚姻失時以此也 °" 上曰: "是果弊風, 憲府其鞫之 °

140)『연산군일기』48권, 1503년(연산군 9) 2월 13일의 기사.
刑曹正郎安璋曰: "當今習俗奢侈, 衣服飮食 `家舍器皿, 咸以華麗相高, 務勝於人, 工商之家, 曳紈綺 `服珠玉; 權勢之家, 亦多僭侈 ° 物價騰踴, 民貧財乏, 職此之由 ° 國家禁制, 著在令甲, 不爲不備, 而糾擧之責, 專委法司, 日令書吏 `羅將課告, 其奉行之道至矣 ° 然書吏 `羅將, 於工商, 則相與結契; 於權勢, 則畏怵自退, 終不捕告, 其或見告者, 迷劣無勢人也 ° 由是, 禁制之令, 徒爲文具, 奢侈之習不戢, 臣竊惑焉 ° 臣意, 許令凡人得見禁物, 皆得捕告法司, 法司依法科罪後, 犯禁物色, 例賞捕告者, 則人皆畏人之告, 而顧惜己物, 自不犯禁也 ° 如此則禁制之令, 庶可得行, 而奢侈之習, 可變也 °

141)『중종실록』45권, 1522년(중종 17) 8월 12일의 기사.
禮曹啓: "近來, 奢侈尤甚, 服飾競用唐物, 上下無別 ° 因此, 物價踴貴 ° 冒利之徒陰挾禁貨, 潛貿上國 ° 婚姻之家爭尙奢靡, 貧者因此失時, 誠非細故 °

품이 물가를 오르게 하고 이러한 사치가 혼인시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8년 후인 중종 34년(1539) 9월 4일[142]과 그 다음 해인 중종 35년(1540) 5월 20일[143]의 기록에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혼례 시의 부조리로 인해 효종 9년(1658) 11월 4일 기사[144]에는 다시금 혼례 시의 사치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치 풍조는 근절되지 않고 순조 34년(1834) 2월 30일의 상소문[145]을 보면 왕실부터 일반 서민까지의 사치풍조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왕실과 사대부가 이러한 혼례문화에 대해 모범을 보일 것을 강조하였고, 왕자와 공주의 가례 및 옹주, 제군, 숙의 길례에서 사치스러운 혼인 폐단의 예를 들어 이를 금할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왕실 관련 혼례사치에 관한 기록은 77건으로 가장 빈번한데 왕실의 혼례 풍습을 사대부에서 따라하고 이러한 사치풍습이 일반백성에게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을 경계한 것이다.

혼례물품에 관련하여서는 태조 3년(1394) 6월 26일의 기사 내용[146]을

142)『중종실록』91권, 1539년(중종 34) 9월 4일의 기사.
常時婚姻之家, 務極宏侈 ° 況與國交婚, 凡所乏物, 皆求諸外方, 此弊豈少乎?

143)『중종실록』93권, 1540년(중종 35) 5월 20일의 기사.
卿士之家, 轉相倣傚, 拓基作舍, 務要崇闊, 奇粧異玩, 其制每變, 敦朴日喪, 澆僞漸長, 以至論財議嫁, 婚禮失正, 怨女(喩)[逾] 時 °

144)『효종실록』20권, 1658년(효종 9) 11월 4일 기사
禮曹啓曰: "上自卿大夫, 下至士庶人, 婚喪服飾, 自有先王之制, 而近來國綱解弛, 侈靡日甚, 上下貴賤, 等夷無章, 弊習已痼, 誠極寒心 ° 今依憲府啓辭, 參以法典, 定爲禁制, 別單書入 ° 去奢從儉之風, 唯在聖上之躬自表率, 而法令之不行, 亦未必不由於朝臣之犯禁 ° 今將禁條, 申明中外, 着實擧行, 而如有犯者, 則朝官以下罷職, 儒生停擧, 三醫司囚禁治罪, 婦女則治其家長, 庶人常女, 直爲科罪, 斷不饒貸 °" 從之 °

145)『순조실록』34권, 1834(순조 34) 2월 30일의 기사.
以奢侈言之, 上自搢紳家, 下至閭巷, 轉相倣效, 一婚之需, 不啻中人十家之産, 一宴之費, 非特窮民一年之食 ° 衣服飮食, 家舍 `器皿, 踰分犯禮, 民安得不困乎? 臣以爲先自宮闈, 克行節省, 以昭儉德, 若有犯者, 不加寬貸, 以少紓國力焉

146)『태조실록』6권, 1394(태조 3) 6월 26일의 기사.
甲午/都評議使司具禮曹詳定狀啓曰: "進上儀物外, 臣下毋得用金; 兩府外, 毋得服紗羅綾綺 `玉纓子 `環子; 嘉善以下六品以上, 酒器外, 毋得用銀; 七品以下, 酒器亦不許用銀 ° 品帶及臺省員頂子, 不在此限 ° 庶人及工商賤隷, 雖有職者, 毋得用銀絹斜皮; 婚姻者亦依職

보면 의식 용품 이외에는 신하들은 금을 쓰지 못하고, 의정부와 중추원 이외에는 명주와 비단과 옥영자(玉纓子)·옥환자(玉環子)를 쓰지 못하며, 가선대부(嘉善大夫) 이하 6품 이상은 술잔 외에 은을 쓰지 못하고, 7품 이하는 술잔을 은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특히 옷감의 사치에 대한 규제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 데, 당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단인 사피(斜皮), 진채사(眞彩絲), 능금단자(綾錦段子), 사라능단(紗羅綾段), 주취(珠翠) 등을 선호하는 사치를 경계하고 있다.[147]

선조 40년(1607) 3월 18일 기록에 따르면 일반인의 혼례에서 사용하는 보자기가 왕실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홍(紅)·자(紫) 두 색깔의 보자기에 금박을 입혀 그림을 그리는 등 국혼(國婚)에 못지않은 비용을 보자기에 사용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148]

이와 같이 조선왕조 전반에 걸쳐 혼례 시의 사치를 우려하고 국법과 왕명을 통해 혼례 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기록 중 옷감에 대한 규제는 <표 4-5>와 같다.

品, 毋得僭用 °" 從之 °

147)<표 4-5>『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사치에 관한 기록 중 옷감관련 내용 분류 참조.

148)『선조실록』209권, 1607년(선조 40) 3월 18일 기사
近來奢侈之弊, 日甚一日, 識者之寒心久矣 ° 頃於筵中, 臣已陳其梗概, 自上特令憲府糾正, 而紀綱解弛, 人不畏法 ° 昨日途上, 臣見一婦女, 乘朱屋轎, 男女前導者, 塡塞街巷 ° 至於紅 `紫兩色之袱, 畫以泥金, 僭擬國婚, 正是前日臣之所達: ‘有識之人亦然, 殊不可曉 °’ 者也 °

<표 4-5>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사치에 관한 기록 중 옷감 관련 내용

일시	원 문	옷감
태조3년 (1394년) 6월 26일	의정부와 중추원 이외에는 명주와 비단과 옥영자(玉纓子)·옥환자(玉環子)를 쓰지 못함 서민이나 공업자·상업자들과 하인들은 비록 직품이 있더라도 은과 명주며 사피(斜皮)는 쓰지 못함	명주 사피(斜皮)
태조7년 (1398년) 9월 12일	연향(宴享)과 재회(齋會)에는 금은(金銀)·주옥(珠玉)·진채사(眞彩絲)·화단자(花段子) 등 물건은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게 함	진채사 (眞彩絲)
태조2년 (1402년) 4월 1일	능라 단자(綾羅段子)는 진상(進上)하는 의복과 어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단(禁斷)하도록 상소	능라단자 (綾羅段子)
세종5년 (1423년) 1월 9일	불과 요는 능금 단자(綾錦段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신부(新婦)의 복식(服飾)도 사라능단(紗羅綾段)을 금지 집의 재산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본토(本土)에서 생산되는 명주[주(紬)]·모시·면포(緜布)를 사용	능금 단자 (綾錦段子) 사라능단 (紗羅綾段) 명주[주(紬)] 모시 면포(緜布)
세종17년 (1435년) 1월 25일	사대부집 혼인에 능금(綾錦)·채백(綵帛)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므로 숙신 옹주(淑愼翁主)의 하가(下嫁)에 채백을 쓰지 말고 면주(綿紬)를 사용할 것	능금(綾錦) 채백(綵帛) 면주(綿紬)
세종30년 (1448년) 5월 11일	속이 사치한 것을 숭상하여 혼인에 다투어 능라(綾羅)를 써서, 이 때문에 혼인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격히 금할 것	능라(綾羅)
성종4년 (1473년) 7월 30일	능단(綾段)과 주취(珠翠)등 국산품이 아닌 것을 혼수에 사용하는 것을 금함	능단(綾段) 주취(珠翠)
성종12년 (1481년) 6월 21일	국가에서 엄하게 금하는 법을 대전(大典)에 갖추어 실었는 데도 혼인시 우리나라 것이 아닌 사라능단(紗羅綾緞)을 쓰고 함롱(函籠)을 많이 장만하여 말에 가득 실어 보내는 일이 다반사니 중법으로 처벌 할 것	사라능단 (紗羅綾緞)
연산8년 (1502년) 1월 28일	성종(成宗)과 주상(主上)의 가례(嘉禮)에 모두 명주 이불[주금(紬衾)]을 사용하여 검소하였으나 이번 공주의 혼례가 사치한 것으로 아랫사람이 본받을 수 있음	명주이불 [주금(紬衾)]

<표 4-5>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사치에 관한 기록 중 옷감관련 내용(계속)

일시	원 문	옷감
명종2년 (1547년) 12월 3일	근래에 사치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천얼(賤孼)들과 시예(市隷)들까지도 모두 비단과 주옥(珠玉)으로 몸치장을 하고 있으며, 사대부 집에서는 혼인할 때 역시 극도로 사치를 부려 비단과 주옥이 아니면 하지 않음	비단
명종8년 (1553년) 8월 29일	혼인하는 집에서는 사치를 다해 납채(納采)에 현훈(玄纁)을 쓰는 것이 법인데도 부귀한 집에서는 모두 사라능단(紗羅綾緞)을 쓰며, 그 수효가 줄잡아 10필(匹)이나 되는 폐단이 심하므로 단속을 강화함	사라능단 (紗羅綾緞)
명종8년 (1553년) 10월 18일	납채에 현훈(玄纁)을 쓰되 2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며, 동뢰연(同牢宴)과 제사상의 유밀과는 7품(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탕수(湯水)도 5 미(味)를 넘지 못하게 함	현훈(玄纁)
선조36년 (1603년) 1월 6일	사대부들 사이에 거친 베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가 드물고, 혼인할 때에는 무늬가 화려한 비단옷으로 꾸미기까지 함	베 비단
선조40년 (1607년) 2월 19일	사치풍조 한 가지가 날로 더욱 심해져서 당상관이 평상시에 으레 비단옷을 입고 있고 심지어는 혼인할 때에도 외람되게 국혼(國婚)처럼 하고 있음	비단
선조40년 (1607년) 3월 18일	사치스런 폐단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어 홍(紅)·자(紫) 두 색깔의 보자기에 금박을 입혀 그림을 그리는 등 참람하게 국혼(國婚)을 흉내내고 있음	홍(紅)·자(紫) 금박보자기
효종3년 (1652년) 11월 13일	도성(都城) 안은 위로 경대부(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시정의 천인까지 모두가 지극히 사치하여, 벽에 바르는 것은 외국의 능화지(菱花紙)가 아니면 쓰지 않고, 입는 옷은 능단(綾段)·금수(錦繡)가 아니면 쓰지 않음	능단(綾段) 금수(錦繡)
효종9년 (1658년) 10월 11일	반드시 비단과 주옥(珠玉)을 쓰며, 상사에는 오로지 남이 보기 좋게 꾸미는 것으로 일삼고 있으니 혼인과 상사에 대해 제도를 정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비단
현종 개수1년 (1660년) 5월 9일	국전을 살펴보건대 당하관 이하는 혼인할 때 사라(紗羅)·능단(綾緞)·계담(罽毯)을 쓴 경우에는 모두 장 팔십(杖八十)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도(世道)가 날로 비하되어 인심이 날로 사치에 빠지고 있는데,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절실하게 금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음	사라(紗羅) 능단(綾緞) 계담(罽毯)

『영조실록』에도 혼수물품 사치 폐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특히 왕실의 혼사와 상류층의 혼사에 대해 사치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지도층이 모범을 보일 것을 계도하고 있다. 영조 9년(1733) 12월 10일의 기록[149]에는 혼인 시 사치하는 자를 적발하여 법으로 다스릴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12월 22일[150]에는 혼인 시 사치한 풍습으로 인하여 여자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혼기를 놓치는 폐단을 경계하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혼례 시 혼수의 사치와 음식 낭비를 언급하며 영조 40년(1764) 1월 24일[151]의 기록에는 부마의 혼사용품을 감하라고 명하고 있다.

영조 후반기(1740년~1752년)에는 왕실의례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영조 25년(1749)에 왕실 주요 기관에서 각종 재정 국고의 낭비가 심한 것을 경계하여 각 궁과 전, 중앙 각사의 재정과 지출 규모를 규정한『탁지정례』가 편찬되었다. 같은 해 국혼에서 혼례의 풍속이 사치함을 바로잡기 위해 왕실의례에 관한 규정을 정한 『국혼정례』를 발간하여 왕실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낭비를 막고자 하였다.

또한 영조 26~27년[152]에는 상의원(尙衣院)[153]에서 왕명을 받아 왕실 제반 소요 물품에 관한 규제를 기록하는 『상방정례』가 편찬되었다. 정례

149)『영조실록』36권, 1733년(영조 9) 12월 10일의 기사.
我國閭井間, 嫁娶納幣之規, 多濫無節 ° 多者動費累百金, 少亦不下百金 ° 貧不能辦此, 則雖年過四五十, 莫能娶妻, 以至廢絶倫常之境, 誠爲慨然 ° 謹按《五禮儀》, 幣用紬或布, 三品以下至庶人, 玄纁各一, 先王定制, 可謂至矣, 而廢閣不行, 其在遵法正俗之道, 宜嚴檢飭 ° 請閭里間婚幣, 必以玄纁, 永爲定式, 過此者, 法司摘發家長, 治以制書有違之律, 俾革侈濫之習 °

150)『영조 실록』36권, 1733년(영조 9)12월 22일의 기사.
吁! 爲人父母, 有子有孫, 男婚女嫁, 禮之大者, 情之當然, 而或年過而未嫁, 至老而未婚, 其弊之由, 卽奢侈之所致也 °

151)『영조실록』103권, 1764년(영조 40) 1월 24일의 기사.
命減駙馬婚具 ° 時國用日耗, 而宮婚將稠疊, 上欲祛其侈濫, 凡樽燭香花刻鏤綵鍍之制, 或蠲或減, 而食品亦只五器而止 °

152)이민주(2012), 상방정례의 편찬 과정과 특징, 장서각 27, pp.71-108.

153)조선시대에, 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일용품, 보물 따위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고종 32년(1895)에 상의사(尙衣司)로 고쳤다.

는 비용을 줄이자는 뜻에서 사용 물품의 예를 정한 것으로 특히 「어제(御製)」에는 영조가 궁중에서 쓰는 물자의 낭비를 막고자 정례를 제정하였다는 편찬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각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예시하여 의례 시 국고의 낭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었다. 『상방정례』에는 국혼 시 궁에 들이는 사용물품의 품목과 그에 따른 비용의 예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기록[154]을 통해 좀더 명확히 살펴 볼 수 있다. 영조는 5월 7일 호조판서가 『가례정례』를 가지고 입시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전교를 통해 절약과 검소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 "『정례』에 실려 있는 연상(宴床)을 지금 어찌 논하겠는가. 주원(廚院)에서는 동뢰연상(同牢宴床)의 외대탁상(外大卓床)과 배설하는 연상(宴床) 및 좌협상(左挾床)·우협상(右挾床), 그리고 면협상(面挾床)의 미수(味數)와 중원반(中圓盤)과 과반(果盤), 그리고 초미(初味), 이미(二味), 삼미(三味), 대선상(大膳床), 소선상(小膳床)을 준화(樽花), 상화(床花)와 아울러 없애라. 그리고 교명상(敎命床)과 책보상(冊寶床)은 새로 만들지 말고 수리해서 사용하고, 교명궤(敎命櫃)와 책보궤(冊寶櫃)는 금물 그림을 그리지 말고 장식(粧飾)에도 그림을 그리지 말라. 연(輦)은 나의 부련(副輦)으로 수리해서 사용하고 그 대용은 덕응방(德應房)에 있는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라. 옥대(玉帶)는 안에서 내린 것으로 사용하고 패옥(佩玉)과 규(圭)는 탁지(度支)와 상방(尙方)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되, 규(圭)는 그 대용을 시헌서 재자관(時憲書齎咨官)이 사온 것으로 해서 민간에서 구하는 폐해가 없도록 하라. 아, 막중한 부례(祔禮)에도 연여(輦

154) 1759년 5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날짜별로 왕이 지시한 사항과 신하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 내용은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연 등 육례의 의식에 쓰이는 물품 목록, 행사 일정과 인력 배치, 빙재(聘財)라 하는 삼간택(三揀擇) 후 왕비집에 보내는 예물목록, 별궁(別宮)예물, 본방(本房)예물, 정친(定親)예물, 납징(納徵)예물, 의식에 기명(器皿), 대전의대(大殿衣襨), 중궁전 법복(中宮殿法服) 및 의대, 수라간(水刺間)의 소용품, 연(輦)과 여(輿)의 의장(儀仗)에 쓰이는 물품 등에 관한 것이다.

輿)와 의장(儀仗)을 헌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지금 나의 연여와 의장을 무슨 마음으로 모두 새롭게 수리한단 말인가. 불가불 수리하여야 하는 것 말고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준화(樽花)를 이미 놔두도록 하였으니 주원(廚院)은 화룡준(畫龍樽)을 구워 만들지 말고 화룡촉(畫龍燭)은 홍촉(紅燭)으로 대신하여 나의 뜻을 보이라. 이것을 의궤에 기록하여 그대로 정례(定例)가 되도록 하라." 155)

또한 5월 9일 도감에서 가례를 거행할 물목을 올린 후 11일 상방의 의대감에는 초례 시 사용되는 옷감에 일체 무늬를 놓지 말고 광직으로 대신 거행하도록 하였다.156) 또한 5월 20일의 기록에는 궁궐에서 하는 가례 예행연습은 한 번만 할 것을 명하였고, 가례의 절차와 준비가 완료되어 가는 시기인 6월 18일에 영조는 혼례 거행 시 음식상을 줄이며 내빈과 외빈에게 올리는 반상을 제한할 것을 명하여 국가와 백성을 위해 혼례 절차를 검소하게 진행할 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영조는 혼례가 혼례 자체의 의미보다 사치와 과시로 흐르는 사회적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왕실에서 부터의 검소함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여러 차례 제도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1759년에 거행된 본인의 가례에서 혼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천함으로써 솔선수범하였다.

『영조실록』 28년(1752) 2월 28일과 11월 17일의 기록에 왕실에서 사용되는 보자기의 재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157) 이러한 배경에는

155)『영조실록』 93권, 1759(영조 35) 5월 7일의 기사.
定例中, 所載宴床, 今 何論哉 °廚院同牢宴床外, 大卓床所排宴床及左右與面 挾味數中圓盤·果盤, 初二三味大小膳, 竝與樽花·床花而 除之, 敎命冊寶床, 勿爲新造, 修補以用, 敎命冊櫝, 勿爲金 畫粧飾, 亦勿起畫, 輦則以予副輦, 修補用之, 其代以德應 房所在者, 修補取用, 玉帶, 以內下者用之, 珮玉圭, 以度支· 尙方所在者用之, 圭則其代時憲書齋咨官行貿來, 以除 市民之弊 °噫, 莫重 祔禮, 輦輿·儀仗, 仍舊用之, 今予輦輿·儀仗, 抑何心一新修補? 不可不修補者外, 仍舊用之 °樽花, 旣置之, 廚院畫龍樽, 勿爲 燔造, 畫龍燭, 代用紅燭, 以示予意, 載於儀軌, 仍以爲例 °
156)이민주(2012), 상방정례의 편찬 과정과 특징, 장서각 27, pp.96-97.
157)『영조실록』 75권, 1752년(영조 28) 2월 28일의 기사.
"慈殿玉冊 `玉寶粧縀及裹袱, 俱以綿紬爲之 ° 儀仗 `輦輿, 一依昨春例修補 ° 慈殿 `中宮

그 당시 보자기를 만드는 옷감이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비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 4-6>은 『국혼정례(國婚定例)』에 규정된 육례에 사용하는 보자기와 영조·정순왕후 가례에서 육례에 사용한 보자기의 재질과 수량을 비교·정리한 표이다.

각 육례절차에서『국혼정례(國婚定例)』에서 규정한 보자기와 영조·정순왕후 가례에서 사용된 보자기의 수량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옥책 및 금보 등의 주요 상징물을 싸는 보자기와 이를 보관하기 위한 보통, 보록, 주통, 주록 등을 싸는 보자기의 재질은 대홍운문대단(大紅雲紋大緞)에서 대홍광적(大紅廣的)으로 변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홍운문대단은 구름무늬가 있는 두꺼운 비단으로써 중국산 비단이며, 대홍광적(大紅廣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늬가 없는 홍색의 넓은 견직물로서 『국혼정례(國婚定例)』의 제정 10년 후에 거행된 본인의 가례에서 몸소 모범을 보여 사회전반에 만연된 사치와 낭비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육례 외에 사용된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무늬가 없는 국내에서 생산된 명주나 무명의 종류인 홍초(紅綃), 홍주(紅紬), 대홍광적(大紅廣的), 자적초(紫的綃), 자적주(紫的紬), 자적토주(紫的吐紬), 홍세목(紅細木) 등이 사용되었다. 이는 왕실 혼사에서의 사치함이 백성의 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영조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본인의 가례를 통해 왕실에서부터 검소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백성의 혼례문화가 사치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는 영조의 애민정신의 표현이었다.

殿上冊寶受賀處所, 一依庚申例擧行, 軒架鼓吹勿設 ° 方物 `物膳竝勿擧行, 只封箋文, 一以體我慈聖謙挹之德, 一以伸予强從之意 °“

『영조실록』78권, 1752년(영조 28) 11월 17일의 기사.

"太室坐榻所排, 昔則用綾, 今則用紬 ° 殯魂殿 `殯魂宮用綾緞, 於心若何? 此後殯殿紅廣織帳, 代以紅紬, 袱與褥 `床巾, 前或以綾緞者, 皆代以鄕紬, 前用鄕綃者, 仍前之意, 載之編輯 °“

<표 4-6>『국혼정례(國婚定例)』와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사용된 육례용 보자기 비교

혼례 절차	물 목		
	포장 물품	보자기	
		국혼정례	가례도감의궤
납채	흑칠중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산기러기 1마리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흑칠함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납징	흑칠중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왜주홍칠속백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흑칠함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고기	당주홍칠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흑칠함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표 4-6>『국혼정례(國婚定例)』와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사용된 육례용 보자기 비교(계속)

혼례 절차	물 목		
	포장 물품	보자기	
		국혼정례	가례도감의궤
책비	왜주홍칠궤 1부	안싸개용 대홍운문대단 1폭반 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안싸개용 대홍광적 1폭반 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왜주홍칠명복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옥책	대홍운문대단 핫보자기를 첩수에 따라 준비 안싸개용 대홍방사주에 금줄을 올린 겹보자기 2건	대홍광적 1척9촌 막이용 핫보자기 5건 안싸개용 대홍방사주(大紅方絲紬) 자물쇠(鎖金) 겹보자기 2건
	화금왜주홍칠내함 1부	안싸개용 홍주 3폭반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자초 3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흑칠외궤	홍주 5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금보	대홍운문대단 핫보자기 1건	대홍광적 핫보자기 1건
	보통 1좌	대홍운문대단 핫보자기 1건	대홍광적 핫보자기 1건
	보록 1좌	대홍운문대단 핫보자기 1건	대홍광적 핫보자기 1건
	주통 1좌	대홍운문대단 핫보자기 1건	대홍광적 핫보자기 1건
	주록 1좌	대홍운문대단 핫보자기 1건	대홍광적 핫보자기 1건
친영	산기러기 1마리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동일함
동뢰	초를 담을 당주홍칠함 3개 (화룡촉,홍사촉 등)	홍주 5폭 홑보자기 6건	동일함 (안싸개·겉싸개용 각 3건)

VI. 결론 및 논의

보자기는 물품을 덮고, 싸고, 나르는 일상의 생활용품이며, 각종 의례에 활용되어온 의례용품이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된 보자기는 왕실의 기물 중에는 사소한 물품일 수 있으나, 제작 품의에서부터 사용용도까지 왕실의 기록물에 남아있어 제작과정과 용도 등을 통하여 그 시대의 의례문화와 사회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의 유교적 의례문화가 정착되고 왕실의례가 백성들의 본보기가 된 18세기 영조와 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에 대하여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고찰을 시도하였다. 혼례용 보자기의 사용용도, 사용방법, 사용 장소 및 사용 시기 등을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기록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정리하고, 그 생활문화적 의미와 상징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대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콘텐츠로서의 재창조와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더불어 후속연구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영조와 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에 대하여 사용용도 및 방법, 종류, 형태를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보자기의 종류는 홑보자기[단보(單袱)], 겹보자기[겹보(裌袱)], 상건(床巾), 부건(覆巾) 및 싸개용 핫보자기[유보(襦袱)], 옥책(玉冊)사이에 끼우거나 옥책(玉冊)사이를 막는 막이용 핫보자기[격유보(隔襦袱)] 및 옥책(玉冊)을 싸는 갑(匣) 등이 있었다. 이들 보자기는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시에 필요한 용품을 싸서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거나 예물의 보호를 위해 솜

을 넣어 제작 후 예물 사이에 끼워 넣거나 예물을 싸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상건 및 부건은 의례에 사용된 상을 덮거나 두르는 용도였다. 물건이나 문서는 두 겹의 천으로 제작한 겹보자기로 한번 싸서 함에 넣은 후 한 겹의 홑보자기로 그 함을 다시 싸는 것이 일반적인 예법이었다. 핫보자기는 내용물을 보호하도록 솜을 안에 넣어 만든 보자기로 책비 시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싸는 용도로 제작되었다.

영조는 혼례 시 사치를 경계하여 본인의 가례에도 보자기 재질에 대하여 사치를 금한 기록이 있었다.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대부분 홍주(紅紬), 홍초(紅綃), 대홍광적(大紅廣的) 등의 무늬가 없는 옷감으로 제작되었다. 가례에서 사용된 보자기는 『국혼정례』에서 규정한 소요량과 일치하였다. 옥책 및 금보 등의 주요 상징물을 싸는 보자기와 이를 보관하기 위한 보통, 보록, 주통, 주록 등을 싸는 보자기의 재질은 『정례』의 규정에서 대홍운문대단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례도감의궤』의 기록에는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대홍광적으로 변경되어 본인의 가례를 통한 왕실에서부터의 검소와 절약 정신을 강조하였다.

둘째, 18세기는 유교적 의례문화가 확립되고 실행되던 시기였으며 조선왕실에서의 의례는 유교적 이념을 따르고 바르게 실천하려는 왕실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이는 실행의 장이기도 했다. 특히 왕의 가례는 한 나라의 근본이 시작되고 다음 세대에 나라를 이어갈 후사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으로 가례의 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기능적인 용도 외에 백성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유교적 예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그 자체가 의례도구로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례의 절차마다 중요 물품과 상징물을 싸서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왕실에서 사용된 보자기는 국가 간의 외교 의전용품 혹은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의례용품의 의미를 지녔

다. 이와 같은 보자기의 상징적 의미를 간파했던 영조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례용 보자기를 통해서도 국가적으로 혼례 시 사치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담아냈다.

셋째,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우리의 전통 의례용품인 동시에 전통의례에 깃들어져 있는 정성과 예절, 절약과 검소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문화자산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수준으로 제작되고 사용된 왕의 가례용 보자기는 왕실의 혼례용품임과 동시에 절약과 검소의 가치를 내포하는 물품으로 혼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자료이다. 현대사회는 단순히 기술력으로 승부하던 시대에서 상품이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이미지와 연결되었을 때 부가적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거듭나는 시대이다. 한 민족의 전통문화가 현대와 만나 콘텐츠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자료의 연구와 재조명이 필요하다. 현대 혼례에서 전통혼례의 요소가 지속되고 있고, 차후에도 수용적인 의식을 가진 절차로 함보내기, 폐백 및 예단 등이 유지되어 이들 절차에서는 모두 보자기에 의해 내용물의 상징성이 구현되고 있다. 함보, 폐백 시 상보, 예단보, 예물보, 사주보, 혼서보 등 혼례절차에 응용되는 보자기는 모양과 재질, 색감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른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예(禮)의 표현이 된다. 예절과 정성의 정신을 표출하고 있는 왕실 의례용 보자기는 이렇듯 현대의 혼례용품으로, 의례용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혼례용 보자기의 활용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전통포장으로도 보자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한국의 색과 미를 살려 포장하고자 하는 물품의 형태와 내용을 고려하여 정성과 예의를 표현하는 포장예술로 재조명되고 승화되는 전통문화콘텐츠로서의 새로운 발전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1759년 6월에 거행된 영조와 정순왕후 가례의 기록인『영조정

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종류, 형태, 사용법, 용도 등을 분류·정리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가 담고 있는 생활문화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자기의 의미와 상징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자 하였으며,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보자기에 대한 사료를 정리하여, 생활문화적 가치를 재고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혼정례』 및 『상방정례』 편찬 이전의 왕의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와 영조·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의 비교와 자료정리를 심도 있게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추후 『국혼정례』 및 『상방정례』편찬 전과 후의 보자기 사용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대에서 활용되고 있는 혼례용 보자기에 대한 실태 연구나 전통보자기에 대한 관심도 연구 등을 통해서 한국 보자기 문화의 계승을 위한 실천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의 자료는 향후 보자기 연구에 있어서 정리된 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왕실가례와 현대의례에 연관된 보자기의 의미와 상징성을 파악함으로써 혼례용품 외 전통문화상품 디자인에 활용되거나 재해석되어 현대적인 다양한 생활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고문헌 자료

『朝鮮王朝實錄』

『國朝五禮儀』

『國婚定例』

『尙方定例』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단행본

강순제·이영혜·임경화·전현실(2012), 우리 옷감이야기 103, 서울:교문사.

국립고궁박물관 편저(20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편저(1999), 국역 가례도감의궤, 서울: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편저(1999), 여성의 손끝으로 표현된 우리의 멋: 혼례자수품과 장신구, 서울: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편저(2006),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도록, 서울: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편저(2012), 혼례, 서울:국립민속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저(2014),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서울:국사편찬위원회.

국학자료원 편저(2007), 국역 국혼정례, 서울:국학자료원.

구혜자(2002), 한복만들기, 서울:한국문화재보호재단.

권영대 역(2007), 국역 국혼정례, 서울:국학자료원.

김용숙(2003), 궁중「발기」의 연구, 민속학술자료총서 예-관혼상제 7, 서

울:도서출판 우리마당 터.
남상민(2003), 한국전통혼례, 서울:도서출판 예학.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역(2013), 한국의 유교화 과정 : 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서울:너머북스.
문화재청 편저(2010), 조선왕실의 어보, 서울:예맥.
민길자(1997), 전통옷감, 서울:대원사.
박성실(2008), 『상방정례』 해제, 서울:한국학중앙연구원.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손영학(2001), 한국인의 솜씨, 서울:ᄃᆞ할미디어.
신병주(2001),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서울:효형출판.
신병주·박례경·송지원·이은주(2013), 왕실의 혼례식 풍경, 서울:돌베개.
양기식·홍혁기(1981), 국역 『국조오례의』, 서울: 법제처.
여찬영 외(2012),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 I, 서울:경인문화사.
이길표·주영애(1999),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신광출판사.
이길표(2000), 전통가례, 서울: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성미·강신항·유송옥(1994), 장서각소장 가례도감의궤,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남(2009),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서울:현암사.
최배영· 최경희· 이경란 (2010), 조선시대 첫돌의례문화, 서울:이담Books.
최배영(2013), 조선시대 혼례문화콘텐츠, 서울:이노Books.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저(2008), 상방정례,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허동화(2004), 이렇게 소중한 보자기 역사, 서울:한국자수박물관.
허동화(200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 서울:현암사.

학위논문

강서영(2011), 한국전통 가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영(2013), 朝鮮後期 王女 婚禮服 : 『嘉禮謄錄』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선(2004), 조선후기 궁중발기에 나타난 가례복식(嘉禮服飾)과 길례복식(吉禮服飾)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규(2010), 朝鮮時代 婚禮儀式에 관한 硏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2005),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 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영(2010), 조선 왕실의 출산문화 연구: 역사인류학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김효주(2013), 외국인을 위한 규방공예 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주연(2001), 朝鮮時代 宮中과 士大夫의 婚禮 節次와 婚禮服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선(2015), 朝鮮時代 國婚儀禮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은경(2012), 朝鮮後期 王室 嘉禮用 屛風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2012), 조선 후기 사회변동 교육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은(2003), 조선후기 여성들의 삶과 보자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영(2011), 한국 전통 포장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

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숙(2010), 조선후기 의례서에 나타난 혼례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미(2009), 『연잉군가례등록』에 나타난 왕자가례의 절차와 복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향숙(2011), 경북지역 혼례문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진숙미(1984), 조선조 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배영(1994), 朝鮮時代 文獻을 中心으로한 家庭經濟生活觀에 대한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배영(1998), 家禮書를 통해 본「婚禮」觀 硏究 : 「嘉禮」,「家禮輯賢」, 「四禮便賢」,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경애(1994), 婚禮의 變遷에 관한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im, Soo Kyung(1997), A Study of Pojagi(Korean Wrapping Cloths) in the Late Chosun Dynasty(1724~1910), Ph.D Thesis of New York University.

학회지

강서영(2012), 조선말 궁중 보자기 연구, 고궁문화 5, pp.46-82.
강제훈(2012), 조선『世宗實錄』『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사학연구 107, pp.169-228.
김봉좌(2015), 왕실 발기의 제작 배경과 특징 - 1882 왕세자 가례를 중심

으로 -, 발기로 본 조선 왕실의 혼례문화,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학술대회, pp.7-29.

김소현(2009), 가례시 절차에 따르는 조선후기의 왕실여성 복식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59(3), pp.96-108.

김수경(1998), 조선 궁보의 기능과 가치, 미술사학회지 12, pp.5-23.

김옥광(1999), 조선시대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연구, 한국공예논총, pp.87-113.

김응화(1997), 朝鮮時代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包裝形態에 關한 考察(Ⅱ) : 哲宗哲仁后, 朝鮮時代 嘉禮都監儀軌(1851)를 중심으로,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논문집 4, pp.55-72.

김정옥(1984), 朝鮮王朝 後期 嘉禮服飾 硏究, 基礎科學硏究 1, pp.135-146.

김정진·백영자(1990), 조선시대 嘉禮都監儀軌의 班次圖에 나타난 服飾 연구, 한국의류학회 14(2), pp.15-27.

김지연(2015), 18세기 왕녀 「가례등록(嘉禮謄錄)」에 나타난 왕실 혼례 용품 연구 -동뢰(同牢)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2), pp.16-174.

김지영(2014), 조선후기 왕실가족의 혼례풍경,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학회지 11, pp.11-23.

김지영(2016), 18세기 후반 정조대 '元子'의 탄생과 胎室의 조성 -『胎室謄錄』과 『元子阿只氏安胎謄錄』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5, pp.107-143.

김지영(2017), 조선후기 왕자녀의 '혼례용품'과 그 상징성에 관한 일고찰: 1749년 『국혼정례(國婚定例』이전 '가례등록(嘉禮謄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205-238.

김해영(2010),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예의(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pp.41-80.

김효주(2014), 의례용 보자기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학회지 11, pp.49-60.

김효주·최배영·주영애(2015), 서울 거주 외국인의 규방공예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 연구, 생활문화연구 30(1), pp.1-11.

박수희(2017),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연계 2차 특별강연, pp.23-33.

박윤미(2017), 조선왕실의 어책 장황직물,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연계 2차 특별강연, pp.3-20.

신병주(2007), 1762년 世孫 正祖의 혼례식과 『(正祖孝懿后)嘉禮都監儀軌』, 규장각 30, pp.153-181.

심승구(2007), 조선시대 왕실 혼례의 추이와 특성, 조선시대사학보 41, pp.79-139.

안애영(2009), 1882(壬午)년 왕세자 가례 연구 :『가례도감의궤』와 「궁중의궤」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2, pp.107-137.

유송옥(1986), 조선왕조시대 가례도감의궤와 그에 나타난 복식, 대동문화연구 20, pp.189-220.

이경자(1977),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의 복식(服飾) 연구(硏究),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pp.21-48.

이미선(2005), 肅宗과 仁顯王后의 嘉禮 考察 : 藏書閣 所藏 『嘉禮都監儀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4, pp.135-172.

이미선(2011), 『嘉禮都監儀軌』를 통해 본 조선 왕실의 婚禮 문화, 한국계보연구 2, pp.111-160.

이미선(2015), 1749년(영조 25) 和緩翁主와 부마 鄭致達의 가례, 한국사학보 58, pp.217-247.

이민주(2011), 궁중발기를 통해 본 왕실의 복식문화 : 임오가례시 생산체제를 중심으로 , 한복문화학회, 14(2), pp.121-140.

이민주(2012), 상방정례의 편찬 과정과 특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7, pp.71-108.

이민주(2015), 발기로 보는 순종 가례의 복식연구, 발기로 본 조선 왕실의 혼례문화,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학술대회 자료, pp.89-123.

이범직(1990), 朝鮮前期의 五禮와 家禮, 한국사연구 71, pp.31-61.

이욱(2015), 1882 왕세자 가례의 절차와 의미, 발기로 본 조선 왕실의 혼례문화,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학술대회 자료, pp.31-53.

임민혁(2010),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43, 2010.11, pp.45-82.

임민혁(2012), 조선시대 국왕 嘉禮의 절차와 규범, 東洋古典硏究 47, pp.209-248.

임재해(1997), 일생의례 관련 물질자료들의 상징적 의미와 주술적 기능, 한국민속학보 8, pp.51-76.

정연학(2011), 일생의례와 물질문화: 출생의례와 혼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7, pp.67-102.

주선희·구동모(2015), 제품포장의 정보적/시각적 요인이 제품의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영학회, 30(4), pp.257-284.

주영애(1995), 조선시대 양반가의 주생활문화와 예의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pp.189-198.

주영애(2009), 한국전통혼례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일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 p.187.
주영애(2013), 혼인준비자들의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31(6), pp.53-66.
최경순(1991),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가례복식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1), pp.15-27.
최은영(2011),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의 편찬과정과 기록학적 가치, 충청문화연구, 6, pp.117-166.
한형주(2004), 15세기 祀典體制의 성립과 그 추이-國朝五禮儀』 편찬과정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9, pp.127-161.
황경애·이길표(1994), 혼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pp.163-174.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www.sillok.go.kr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 uigwe.museum.go.kr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한국학자료센터. kostm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ABSTRACT

Ceremonial *bojagi* used in *Yeongjo Jeongsun wanghu garye dogam uigwe* in living cultural perspective

Kim, Hyo Joo
Dept. of Consumer Science & Living Cultural Industr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Culture is defined as social behaviors or norms that distinguish one society from others. As culture i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builds and often changes. Ritual culture, in particular, represents the identity and ideology of a society, and the objects used in rituals are symbols reflective of that society's lifestyle.

Bojagi is a cloth used to wrap, cover, and carry objects. When used by the royal family, it was also used to demonstrate the dignity and power of royalty. Therefore, studying ceremonial *bojagi* will help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lifestyle of the royal family.

Records on ceremonial bojagi can be found in *Gukjo orye ui* (Five Rites of the State, 1474), *Kukhon jeongrye* (Exemplar Regulations of Royal Weddings, 1749), *Sangbang jeongrye* (Exemplar Regulations of Royal Attire, 1750) about the customary formalities of the royal family, and also in *Garye dogam uigw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Uigwe*) and *Joseon Wangjo Sillok*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show how *bojagi* were used.

Yeongjo Jeongsun wanghu garye dogam uigwe is the complete record of the royal marriage between King Yeongjo and Queen Jeongsun in the sixth month of 1759

and is another important document tha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bojagi* used in royal rituals.

This dissertation studies the usage of *bojagi* recorded in *Yeongjo Jeongsun Wanghu garye dogam uigwe* by sorting them into the six distinct rites of the wedding ceremony and classifying them according to their name, material, size, usage, and design. Also, in order to explore more abou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bojagi* used during King Yeongjo's reign, the *Kukhon jeongrye*, *Sangbang jeongrye*, and *Joseon wangjo sillok* are studied to analyze cultural values and symbolic meanings of *bojagi* by comparing their design and usage, as well as the lifestyle of the time in which these documents were compile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ames of *bojagi* used in *Yeongjo Jeongsoon wanghu garye dogam uigwe* are *hot bojagi* (single-layered *bojagi*), *gyeop bojagi* (double-layered *bojagi*), *sanggun* (*bojagi* to cover a table), *bugun* (*bojagi* to cover goods), *hat bojagi* (quilted *bojagi* for wrapping), *hat bojagi* (quilted *bojagi*) that is put between *okchaek* (jade investiture document), and *kap* (cross-shape *bojagi*) that wraps the *okchaek*. These *bojagi* were used to wrap and cover items. Some of the quilted *bojagi* were put between valuable objects to protect them.

Secondly, the eighteenth century marked a period of entrenchment of Neo-Confucianism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wedding was a tool to propagate Neo-Confucian values to the people. Hence, the *bojagi* used at King Yeongjo and Queen Jeongsun's wedding were made of simple red silk produced domestically to avoid extravagance. Uasge of costly flower-patterned silk from China was restricted to comply with the rules of the *Kukhon jeongrye*, which codified the royal marriage ceremony and the *Sangbang jeongrye*, which regulated royal attire. This modesty also shows King Yeongjo's determination to abandon lavishness.

Third, *bojagi* used in King Yeongjo and Queen Jeongsun's wedding are traditional

cultural assets that represent values of sincerity and courtesy pervasive in their wedding ritual. Since some aspects of the traditional wedding are still practiced today, studying *bojagi* used in the royal wedding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in developing cultural contents of contemporary wedding and ritual processes.

Keywords: ceremonial *bojagi*, *Yeongjo Jeongsun wanghu garye*, *Garye dogam uigwe*, living culture, cultural heritage contents

부 록

<부록1-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시 사치에 대한 기록

<부록2-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납채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납징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3>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고기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책비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5>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친영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6>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동뢰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7>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별궁예물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8>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정친예물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9>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납징예물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10>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본방예물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1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대전의대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1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중궁전법복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13>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중궁전의대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1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별궁에 올린 물품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15>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동뢰연기명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16>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별궁기명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17>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수라간의 소용품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2-18>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연과 여의 의장에 사용된 보자기

<부록1-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혼례 시 사치에 대한 기록

일 시		원 문
태조	3년(1394년) 6월 26일	• 혼사용품을 포함하여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을 직품에 따라 금·은·옥 등의 사용을 제한함 • 진상하는 의식 용품 이외에는 신하들은 금을 쓰지 못함 • 의정부와 중추원 이외에는 명주와 비단과 옥영자(玉纓子)·옥환자(玉環子)를 쓰지 못함 •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하 6품 이상은 술잔 외에 은을 쓰지 못하고,7품 이하는 술잔도 은으로 쓰지 못하나 품대(品帶)와 대성(臺省) 관원들의 정자(頂子)는 예외임 • 서민이나 공업자·상업자들과 하인들은 비록 직품이 있더라도 은과 명주며 사피(斜皮)는 쓰지 못함
태조	7년(1398년) 9월 12일	• 궁중(宮中)의 의장(儀仗)과 의복·기명(器皿)은 검소함을 따르게 할 것이며, 그 사치로써 아첨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헌부에서 이를 처벌하게 함 • 연향(宴享)과 재회(齋會)에는 금은(金銀)·주옥(珠玉)·진채사(眞彩絲)·화단자(花段子) 등 물건은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게 함
태종	11년(1411년) 7월 27일	• 촉밀(燭蜜)의 산출이 많지 않은데 대소 혼례(婚禮)와 각관(各官)에 왕래하는 사명(使命)의 접대에 모두 촉밀(燭蜜)을 써서 사치하므로 잔관(殘官)·빈가(貧家)에서도 따라하니, 공상(供上)·제향(祭享)·조신(朝臣) 접대 외에는 금할 것을 상소
세종	5년(1423년) 1월 9일	• 이불과 요는 능금 단자(綾錦段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신부(新婦)의 복식(服飾)도 사라능단(紗羅綾段)을 금지 • 집의 재산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본토(本土)에서 생산되는 명주(紬)·모시·면포(緜布)를 사용
세종	9년(1427년) 4월 4일	• 신부(新婦)가 시부모에 첫 인사를 드리는 날 찬품(饌品)은 오성(五星) 두 가지, 떡 두 가지, 삼미탕수(三味湯水) 세 가지로 모두 일곱 쟁반 한함 • 유모(乳母)는 1명, 시비(侍婢) 2명, 노자(奴子)는 1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함
세종	17년(1435년) 1월 25일	• 사대부집 혼인에 능금(綾錦)·채백(綵帛)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므로 숙신 옹주(淑愼翁主)의 하가(下嫁)에 채백을 쓰지 말고 면주(綿紬)를 사용할 것
세종	26년 10월 12일	• 왕자의 가례 때에 신부집에서 사치스러운 혼례품을 보내는 풍속을 없애게 함
세종	30년(1448년) 5월 11일	• 풍속이 사치한 것을 숭상하여 혼인에 다투어 능라(綾羅)를 써서, 이 때문에 혼인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격히 금할 것

일 시		원 문
성종	1년(1470년) 4월 14일	• 풍속에 혼인하는 집이 다투어 재물로 서로 높이어서 사치하여, 혼인이 늦춰지는 사례까지 있어, 이미 복식(服飾)·기용(器用)이 제도를 넘는 것을 금하는 것과 횃불의 수효까지 이미 나타낸 법령이 있으니 이를 지키도록 할 것
성종	3년(1472년) 1월 22일	• 속육전(續六典)의 혼인 조목을 지킬 것 • 속육전의 옛 제도에 의하여 금단(禁斷)하되, 당상관(堂上官)의 여자(女子)는 시비(侍婢) 4명, 노자(奴子)는 14명을 넘지 못함
성종	3년(1472년) 9월 7일	• 절검을 힘쓰고 몸소 행할 것을 중외에 반포하도록 명함 • 실려(室廬)와 음식(飮食)과 혼인·상장(喪葬)과 입고 쓰는 희완(戱玩)의 도구를 다투어 사참(奢僭)하기를 숭상하는 풍속이 우려되므로, 이를 엄히 다스림
성종	4년(1473년) 7월 30일	• 혼례(婚禮)시 납채(納采) 와 납폐(納幣)와 전안(奠雁)의 제도 외에 선수(膳羞)와 사락(絲絡)을 행하여 사치하는 것을 금함 • 능단(綾段)과 주취(珠翠)등 국산품이 아닌 것을 혼수에 사용하는 것을 금함
성종	5년(1474년) 4월 6일	• 혼인의 사치(奢侈)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엄격히 지키도록 명함
성종	9년(1478년) 4월 8일	• 잔치에는 진미(珍味)가 상에 가득하고 혼인에는 먼저 장획(臧獲)재산을 논하기 때문에, 시속(時俗)을 따라 사치를 아니하는 자가 없음 • 공경 대부들에게 모든 사치에 관계되는 일을 일체 금하여 모범을 보이도록 할 것
성종	9년(1478년) 4월 15일	• 혼인에 빙폐(聘幣)하는 즈음에 사치한 물건을 일체 금할 것을 명함
성종	9년(1478년) 4월 21일	• 혼인이 사치하여 제때 못하는 자가 있고, 사위의 아비와 며느리의 아비가 서로 모여서 잔치하고, 사위의 어미와 며느리의 어미가 별도로 모여서 잔치하니 이를 금하여야 함
성종	10년(1479년) 5월 12일	• 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尙道)에서는 모든 혼례와 장례의 용구(用具)를 남보다 사치하기를 힘써서, 가산(家産)을 허비(虛費)하고 제도(制度)를 유월(踰越:넘어감)하는 자가 있음
성종	10년(1479년) 6월 18일	• 혼인을 할 즈음에 양가(兩家)에서 각각 남녀가 탈 안자(鞍子)를 만들어 서로 먼저 보내기를 기하니, 사치(奢侈)의 기풍이 아직도 있으니 이를 금하여야 함
성종	12년(1481년) 6월 21일	• 국가에서 엄하게 금하는 법을 대전(大典)에 갖추어 실었는데도 혼인시 우리나라 것이 아닌 사라능단(紗羅綾緞)을 쓰고 함롱(函籠)을 많이 장만하여 말에 가득 실어 보내는 일이 다반사니 중법으로 처벌 할 것

일 시		원 문
성종	13년(1482년) 2월 12일	• 혼례(婚禮)에는 이미 정해진 법령을 지키지 않은 신정과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한간(韓澗)을 사헌부(司憲府)에서 국문함
성종	16년(1485년) 1월 9일	• 혼인과 상제(喪祭)에 그 제도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사치를 금하는 법이 임금과 가까운 종실(宗室)이나 귀척(貴戚)에게는 행하지 아니하고 음벽(淫僻)한 풍조가 세력가에게서 많이 나오는 것이 우려됨
성종	21년(1490년) 7월 16일	• 혼인에는 채단(綵段)의 사치한 것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도 아래에서 사치함이 심한 것은 임금이 몸소 실천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상소함
성종	22년(1491년) 1월 8일	• 혼인하는 날에 성찬(盛饌)을 금하는 법이 있으나 왕가의 혼인에서도 지켜지지 않으니 다가올 임사홍의 집의 혼사에 유의하도록 지시함
성종	22년(1491년) 2월 22일	• 왕자(王子)·왕녀(王女)의 길례(吉禮) 때 사치스런 일은 모두 금함
성종	22년(1491년) 5월 25일	• 혼인, 빈객(賓客) 접대와 거마(車馬)·궁실(宮室), 복완(復玩)의 기구(器具)를 검소하도록 힘써서 나쁜 풍습(風習)을 고칠 것을 명함
성종	24년(1493년) 3월 28일	• 유생(儒生)들의 복식(服飾)과 사대부(士大夫)들이 혼인할 때의 도구를 다투어 사치스러움을 숭상하니 위아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검소하게 하여 사치스러움을 몰아내어 폐풍(弊風)을 고치는데 힘쓰도록 할 것을 명함
성종	24년(1493년) 10월 23일	• 왕자군(王子君)의 길례(吉禮)와 옹주(翁主)의 하가(下嫁) 때에 혼인하는 집에서 사치하는 일에 다시 전지(傳旨)를 내려서 금함
연산	4년(1498년) 6월 15일	• 사치 금제(奢侈禁制) 절목(節目)을 명하여 의논하게 혼인에 있어 범금(犯禁)하는 것은 이미 금령이 있으니 사헌부로 하여금 거듭 밝혀 통절하게 금단할 것
연산	6년(1500년) 5월 20일	• 왕자녀(王子女)의 길례(吉禮) 때에 금은·주옥(珠玉)·채단·포백(布帛)의 종류가 대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대부나 중·하의 가정에서 이를 따라 하느라 혼례가 크게 사치스러워지는 폐단이 있음 • 내비(內費)와 외응(外應)을 상세하게 정하되 모두 감손(減損)하게 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풍속이 고쳐지도록 함
연산	6년(1500년) 8월 29일	• 왕녀(王女)가 하가(下嫁)할 적엔 내탕(內帑)의 소비가 매우 많고, 혼인 시 예법에도 없는 사헌(私獻:사적으로 물품을 바치는 일)등에 의한 폐단이 많음 • 혼인날에는 이속이나 의녀를 보내어 감찰하고, 혼인날을 알리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가장, 거주지 관원, 관령을 중한 죄로 논단함

일 시		원 문
연산	8년(1502년) 1월 28일	• 이번 공주(公主)의 혼례가 사치하니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공주의 혼례에 선례가 될 수 있음 • 성종(成宗)과 주상(主上)의 가례(嘉禮)에 모두 명주 이불(紬衾)을 사용하여 검소하였으나 지금의 사치한 것으로 아랫사람이 본받을 수 있음
연산	8년(1502년) 3월 10일	• 공경 대부(公卿大夫)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치를 서로 일삼아 가옥이 법도에 벗어나고 의복의 꾸밈이 지나치게 아름다우며, 잔치하는 제구(諸具)와 혼인에 쓰이는 물자가 사치와 욕망을 다 채워서 서로 다투어 자랑하는 폐단
연산	8년(1502년) 5월 12일	•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 혼인할 때 지나친 사치를 숭상하는데 가난한 집에서도 따라가려고 하여, 혼인할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 많음 • 혼인은 제도를 넘지 못함이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경홀히 하여 지키지 않으니, 거듭 밝혀 금하도록 함
연산	8년(1502년) 6월 8일	• 혼인하는 집에서는 납채(納采)하고 예식 올리는 날짜를 미리 관부(官府)에 알리도록 하여 그날이 되면 이속(吏屬)을 보내어 검찰(檢察)하도록 함 •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시속의 숭상에 구애되어 혼인할 시기를 놓친 사람은, 그 가장을 형률에 의하여 죄를 과하도록 함 • 왕자군(王子君)의 길례(吉禮) 때에 본가(本家)에서 혼인을 주관하거나, 종친(宗親)이 제도에 지나치는 일은,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금단하도록 함
연산	8년(1502년) 12월 4일	• 사대부(士大夫)집이 혼인할 때에 의복과 장식물이 지나침을 억제는 법이 시행되어 서울 안에서는 이 법이 행해진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지방에서는 폐기되어 행해지지 않음
연산	9년(1503년) 2월 13일	• 풍속과 습관이 사치해져서 금지하는 법령은 한갓 문구(文具)가 되어버림 • 궁실(宮室)의 복식(服飾)에서 왕자(王子)·왕녀(王女)의 혼인·저택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검소하고 절약하여 솔선수범해야 함
연산	9년(1503년) 2월 18일	• 국가의 사치하는 풍습이 날로 심해져서 사대부 집안이 혼례 때에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므로 군(君)과 옹주(翁主)들의 혼례 때에 화려와 사치를 힘쓰지 말고 검약하고 소박한 것을 힘써서 아래를 거느리면, 부박·사치한 풍습이 저절로 끊어질 것임
연산	9년(1503년) 2월 19일	• 혼인할 때에 지나친 사치를 금하고 있으면서 왕자·왕녀의 혼인에는 치장을 풍부하게 하고 의식을 성대하게 하여 하룻밤의 비용이 보통 사람의 열 집 재산이 넘으니 백성들의 분수에 지나친 사치를 꾸짖을 수조차 없으니 왕실이 검소해야 함

일 시		원 문
중종	3년(1508년) 2월 1일	• 혼인에 쓰는 용품과 의복·음식의 자봉(自奉)을 오직 사치를 버리고 검약할 것을 지시
중종	4년(1509년) 5월 11일	• 혼인에 사치를 금하는 것은 영갑(令甲)에 분명히 하고 있지마는, 근래 기강이 해이하여 사치가 날로 심하므로, 빈궁한 사족(士族)이 폐속(弊俗)에 구애되어 능히 판비(辦備)하지 못하고 혼기(婚期)를 잃게 되니 반드시 엄금할 것
중종	5년(1510년) 12월 19일	• 혼인하는 집의 복색(服色)과 좋은 음식은 다투어 화려하고 사치하게 하여, 재물이 있는 자는 한 번에 거만(巨萬)의 돈을 소비하고, 가난한 자도 따라가기를 힘써는 풍습을 금지할 것
중종	6년(1511년) 5월 4일	• 혼인은 지나치게 참람한 것을 예절이라 하여 재물을 다하여 마지않음을 상소
중종	10년(1515년) 8월 10일	• 나라 풍속이 다투어 사치를 숭상해서 비록 유식한 사람일지라도 혼인할 때에는 사치를 숭상하니, 가난한 사람은 이 때문에 시기를 잃어 혼례를 이루지 못하는 이가 많음 연산군에 시행한 납채를 목면으로 하는 법을 시행할 것
중종	16년(1521년) 1월 19일	• 혼인의 시기를 잃는 이유는 오로지 사치가 성풍(成風)이 되어 매우 가난한 자들도 혼례에 소요되는 물품을 부자(富者)와 똑같이 준비하려는 폐단이 있음
중종	17년(1522년) 4월 12일	• 근래에 풍속이 사치스러워 한갖 거마(車馬)·의복 따위만이 아니라, 혼인과 초상·장사 때에도 역시 모두 법제에 어기고 있음 • 제군(諸君)과 부마(駙馬)의 집을 사치하게 수리함을 경고
중종	17년(1522년) 5월 17일	• 혼수(婚需)에 있어서도 화려하고 사치하기를 힘써 숭상하므로, 혼인하는 집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고을(州縣)에서 주구(誅求)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중종	17년(1522년) 7월 16일	• 국속(國俗)의 사치 폐단이 극심한데 근래에 더욱 심함 • 혼인하는 집안에서는 화려함을 다투어 숭상하므로 가난한 자들은 남과 같이 넉넉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음
중종	17년(1522년) 7월 18일	• 공상(工商)·복례(僕隷) 등 지극히 천한 사람들도 사치를 숭상하고 혼인할 때의 혼수는 화려하고 사치함
중종	17년(1522년) 8월 9일	• 사대부들은 의복·음식에 사치를 힘쓰고, 심지어 시정배들까지도 공경(公卿)과 맞먹을 정도로 참람하게 사치를 숭상함 • 왕자들의 혼례의 사치는 예전에 비해서 더욱 심함
중종	17년(1522년) 8월 12일	• 사치 풍조가 더욱 심하여 상하를 막론하고 복식에 있어서 중국 물품 쓰기를 경쟁하므로 이 때문에 물가가 뛰어오름 • 혼인하는 집에서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므로 가난한 집은 이 때문에 혼인할 시기를 잃게 되니 큰 문제임

일 시		원 문
중종	18년(1523년) 6월 29일	• 왕자(王子)·왕녀(王女)가 혼인할 적에 드는 물자(物資)가 너무 사치함 • 궁중이 혼인에 있어 예도를 넘지 않게 하시고 궁실도 법제를 넘지 않게 하여 사치스럽고 혼탁한 풍속을 순후하고 질박한 데로 돌아오도록 해야함
중종	19년(1524년) 5월 3일	• 왕자·왕녀의 혼인에 있어서 배필을 맞이하는 예의(禮儀)는 걸핏하면 상제(常制)를 넘게 하고 있어 사치의 단서가 먼저 임금의 친족에게서 시작됨
중종	19년(1524년) 10월 7일	• 왕자·왕녀의 혼인에 내리는 물건이 걸핏하면 상규(常規)를 넘고, 집을 짓되 매우 굉장하고 사치하므로 금하여 절검하여야 함
중종	19년(1524년) 12월 20일	• 왕자·공주의 집이 굉려하고 사치하여 혼례(婚禮)가 제도에 넘친다는 것을 논함
중종	20년(1525년) 11월 18일	• 왕자와 공주들의 집을 굉장하게 하려 힘쓰고, 혼인할 적에도 화려함을 숭상하여 막대한 재물(財物)을 허비함
중종	20년(1525년) 윤12월 5일	• 혼인할 적에도 서로가 사치를 숭상하여 왕자녀(王子女)의 혼례에 막대한 돈을 허비하게 되고 집을 한량없이 크고 화려하게 짓고 있어 때문에 공경(公卿)과 사서(士庶)들이 더욱 서로 모방하여 애써 화려한 것을 숭상하는 폐단이 있음
중종	21년(1526년) 1월 8일	• 왕자녀들의 혼인 때 혼수(婚需) 마련이 지극히 사치스러워 내탕(內帑)의 저축이 거의 고갈되었는데, 비록 그런 폐단을 진달하는 사람이 있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음
중종	21년(1526년) 3월 25일	• 제군(諸君)의 혼례(婚禮)에 비용이 너무 남용되고, 저택(邸宅)을 짓느라 재정이 거의 고갈됨
중종	21년(1526년) 7월 20일	•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국속(國俗)이 사치만 일삼고 있음 • 혼인과 상장(喪葬)은 인도(人道)에 있어 큰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혼인할 때 식견이 있는 자들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
중종	21년(1526년) 9월 30일	• 진실로 사치에 대한 단서를 일단 열면 그 유폐(流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 • 혼인하는 예(禮)도 모두 구제(舊制)가 아니고, 사여(賜與)하는 물건(物件)도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여항(閭巷)에서까지 그 풍속을 본받아 재산을 탕진하는 폐단이 흔한데 왕실이 근검하지 못함을 질타함

일 시		원 문
중종	22년(1527년) 2월 18일	• 근년부터 사치가 날로 범람하고 혼인의 사치와 궁실의 아름다움과 채색이 화려해지고 있으니 근본을 바루고 근원을 맑힐 수 있는 방도는 우선 왕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함
중종	22년(1527년) 5월 18일	• 근일 왕자녀가 제택(第宅)을 지음에 있어 극히 사치스럽게 하기를 힘쓰고 혼인의 예를 치름에 있어서는 호화스러움을 숭상하여 혼인하는 집에서는 다투어 과장하느라 사치는 날로 풍습을 이루고 있음
중종	22년(1527년) 7월 14일	• 사서인의 혼인과 상사·장례에 사치가 풍속을 이루고 있는 이즈음 재상가에서 마땅히 먼저 금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금지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법사(法司)에서 규찰(糾察)해야 할 것
중종	22년(1527년) 7월 15일	• 근래에 사치가 풍속을 이루어 혼인과 상제(喪祭)에 모두 사치함을 숭상하고, 각사(各司)에서 평상시 먹는 음식도 사치를 극도로 하고 있음
중종	23년(1528년) 4월 14일	• 궁중 안의 복식(服飾)이 사치하여 화려하고 혼인 때에도 사치가 지나쳐 절도가 없음
중종	24년(1529년) 11월 26일	• 근래 아래로는 시골 선비들까지도 다투어 가며 교만하고 사치한 것만 일삼아 높은 용마루의 웅장한 집이 사람들의 눈을 현란하게 할 정도로 분수에 넘치고 재산을 탕진하면서 화장하는 기구를 화려하게 하기에 힘써서 혼례를 분수에 넘치게 함
중종	25년(1530년) 4월 30일	• 전하께서도 절검(節儉)하지 않으시어 혼례(婚禮)를 제도에 넘치게 하여 혼수(婚需)가 매우 푸짐하여, 왕실(王室)의 세소한 인아친척(姻婭親戚)들까지 서로 다투어 남보다 더 사치하려고 힘쓰고 있음
중종	25년(1530년) 5월 2일	• 혼례(婚禮)를 치르는 데 있어 사치 풍조가 만연하여 점차로 검약의 풍속이 사라져가고 있음 • 사대부의 집안에서 서로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는 풍습은 모두가 조정의 그릇된 습속에서 비롯된 것임
중종	25년(1530년) 5월 11일	• 사치를 숭상함이 풍속을 이루었고, 혼례의 품수(品數)에 대한 등급은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데도, 오늘날 혼인을 치르는 데 있어 그 국법대로 따르는 자가 없음 • 사치하는 풍습이 지금 같은 때가 없으니, 모든 길례(吉禮) 등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이 검소하게 하여 중도에 맞도록 해야 함
중종	25년(1530년) 8월 4일	• 혼인을 외람되게 옛 법제를 벗어나 시기를 여러해나 앞서서 풍성하게 혼수를 마련하고, 인아(姻婭)인 무리들 역시 사치를 숭상하여 재물 토색에 앞장서고 있음

일 시		원 문
중종	26년(1531년) 5월 6일	• 탐학스런 풍조가 만연되고, 혼인에 법도를 무시하면서 사치와 참람이 극도에 달함
중종	27년(1532년) 5월 18일	• 왕자의 가례(嘉禮)에 사치가 날로 더하여 혼인하는 집에서는 전답을 팔고 가옥을 팔아도 혼수(婚需)비용을 대기에 부족한 형편이며, 따라서 사방에 가렴 주구(苛斂誅求)하여 백성의 고혈(膏澤)을 마구 긁어내고 있음 • 왕이 검소함을 몸소 실천해야 함
중종	28년(1533년) 6월 18일	• 왕자(王子)의 제택(第宅)을 짓기 위해 민가(民家)를 철거하는 일도 있고, 왕실의 혼례가 극도로 사치함에 따라 여염집의 혼인도 이를 본받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폐단이 있음
중종	30년(1535년) 10월 15일	• 혼인과 집과 의복을 서로 다투어 사치스럽게 하려는 것은 모두 윗사람을 본받아서 힘쓰는 것임 • 왕실이 혼인이나 집을 지을 때 급하지 아니하고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은 줄여야 함
중종	31년(1536년) 10월 1일	• 지금의 선비들은 학업의 연마에는 힘쓰지 않고 의식(衣食)만 사치스럽게 하고 실덕(實德)을 닦지 않고 과장만을 일삼음 • 혼인할 때에도 극도로 사치스러움만을 일삼아 매우 찬란하게 꾸미려 하고 있음
중종	32년(1537년) 12월 12일	• 요즈음 사치하는 풍조가 일어나 혼인 의복의 체제나 음식 잔치의 절차를 극도로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하기에 힘써서 그 분수에 지나치고 있음
중종	34년(1539년) 5월 8일	• 혼인으로 말하더라도 일정한 예(禮)가 있고 궁실로 말하여도 일정한 제도가 있는데 왕자(王子)의 길례(吉禮)에는 옛 법을 따르지 않고서 국저(國儲)를 낭비하고 있음 • 임금이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다투어 본을 받아 끝에 가서는 지탱하기가 어려운 법임
중종	34년(1539년) 5월 12일	• 사치한 풍습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아끼고 길러 주는 마음은 날로 없어져, 궁중에서는 화려함을 숭상하고 혼례를 치르는 데도 지나치게 호화롭게 함
중종	34년(1539년) 8월 29일	• 사치스러운 풍습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제군(諸君)들의 혼례(婚禮)나 그 저택은 몹시 사치스럽고 화려하기만 함
중종	34년(1539년) 9월 4일	• 혼인하는 집들은 몹시 사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더구나 왕실과 혼인하는데 있어서는 없는 물건을 모두 외방(外方)에서 구하려 하니 그 폐단이 심함

일 시		원 문
중종	35년(1540년) 5월 20일	• 혼인을 의논할 적에는 재물을 따지게 되었기 때문에 혼례가 그 정당함을 잃어 혼기를 넘긴 채 시집을 못 가고 원망하는 여자가 있는 지경에까지 이름
중종	35년(1540년) 6월 1일	• 혼인에 대한 일은 부인(夫人)과 부마(駙馬)의 집들은 금해도 중지되지 않아 많은 폐단이 있음 • 혼인에 때를 넘기기도 하고 상장에 시기를 지나게 하기도 하는 그 이유를 캐보면 모두가 사치한 풍습에 구애된 탓임
중종	35년(1540년) 7월 25일	• 근래 사치가 날로 심해지고 이익이 생기는 근원이 날로 열려서 혼사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의 물건이 아니면 혼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임 • 경·사 대부가 다투어 사치를 일삼고 노복 하천(下賤)까지도 중국의 물건을 씀
중종	35년(1540년) 12월 12일	• 지나친 혼인제도로 사치가 날로 심하여져 친척들끼리 서로 더 잘하려고 힘씀 • 왕자의 제택과 혼인하는 집안이 사치를 일삼는 폐단도 있음
중종	36년(1541년) 3월 20일	• 혼인과 상사(喪事)를 지나치도록 사치스럽게 하는 폐단은 예조(禮曹)로 하여금 금지토록 시행할 것
중종	36년(1541년) 4월 2일	• 왕자(王子)의 집은 극도로 넓고 크게 하려고 힘쓰고 화려하고 사치하게 하는 것을 앞다투어 숭상하여, 백성의 집을 헐어 치우고 여염에 가로 뻗쳐 지어서 마룻대를 높이고 들보를 겹쳐 궁궐과 비슷하게 하며, 혼인의 예(禮)에 있어서도 수레·의복·집기로 갖추는 것을 무엇이나 다 극진히 화려하게 하는데, 사대부의 집도 따라서 이를 본뜸
중종	36년(1541년) 5월 1일	• 사치 때문에 나이 찬 처녀가 혼인할 때를 잃으니, 이러한 일들은 법사(法司)가 규찰
중종	36년(1541년) 5월 8일	• 혼인도 사치 때문에 때를 놓친 나이 든 처녀가 많은데 이와 같이 가뭄의 재변을 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해야 할 일임
중종	36년(1541년) 9월 26일	• 『주례(周禮)』의 황정(荒政)에 '예(禮)를 줄이고 혼인을 많이 한다.' 하였으니, 이런 때 사대부는 마땅히 예를 줄여야 하고, 왕자·부마(駙馬)의 혼례 때에도 간략히 하여야만 아랫사람이 본받을 것임
중종	36년(1541년) 11월 19일	• 검소한 풍습이 쓸어버린 듯 사라져서 혼인할 때 다투어 사치를 숭상 • 길례(吉禮)를 치를 때 왕실과 혼인하는 자들은 공공연하게 각 고을에 요구하여 각사(各司)에서 방납(防納)까지 함

일 시		원 문
중종	36년(1541년) 11월 28일	• 왕자(王子)나 부마(駙馬)의 가정에 올바른 방도로 훈계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겠고 극도로 사치만을 숭상하여, 혼인에는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기만을 힘쓰고 집을 짓는 데는 웅장하고 크게 하는 데 힘씀 • 탐욕의 풍조가 크게 번지고 사치하는 것이 날로 심하여 위로는 궁궐에서 아래로는 시골 구석에서까지 혼인이나 건물·의복·음식 등을 분수에 넘치고 법도에 어긋남
중종	36년(1541년) 12월 20일	• 혼인 때 사치하는 것을 금단하는 절목은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실려 있고, 수교(受敎)한 것도 이번에 마땅히 거듭 밝혀 거행해야 함
중종	36년(1541년) 12월 24일	• 혼인 때에 사치하는 일은 임금과 재상들이 먼저 범하고 있음 • 왕실과 혼인하는 집들이 먼저 스스로 단속하고 억제하여야 함 • 혼인 때의 사치와 신래의 침학을 금단하는 일 등은 모두가 당면한 지금의 큰 폐단들이니 마땅히 통렬하게 개혁해야 함
중종	36년(1541년) 12월 29일	• 혼인 때 사치하는 짓과 장사를 지나치게 후하게 하는 것을 금단하는 절목을 마련하라고 전교함 • 혼인 때 사치를 금단하는 규정을 정리함
중종	37년(1542년) 8월 5일	• 길례(吉禮)의 행사가 매우 사치하여 왕실과 혼인하는 집에서는 부득이 각 고을에 징수하여 그 수요에 대비하고 있어 백성들이 관(官)의 침탈을 받는 것이 1년의 공부(貢賦) 말고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극도로 고난에 시달림
중종	38년(1543년) 12월 1일	• 혼인할 때나 집을 지을 때에 지극히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숭상하여 절도 없이 쓰는 것이 날로 더하고 달로 심하여 짐
명종	1년(1546년) 6월 7일	• 혼인과 각사에서 음식을 사치스럽게 하는 것을 금하는 일은 선조(先朝) 때 세운 법에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경연관(經筵官)의 아뢴 바에 의하여 거듭 밝혀 거행할 것
명종	2년(1547년) 12월 3일	• 근래에 사치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천얼(賤孼)들과 시예(市隷)들까지도 모두 비단과 주옥(珠玉)으로 몸치장을 하고 있으며, 사대부 집에서는 혼인할 때 역시 극도로 사치를 부려 비단과 주옥이 아니면 하지 않음
명종	4년(1549년) 3월 13일	• 근래 중국 물품이 우리 나라에 성행하여 사치스런 풍조가 날로 심해지므로 조정이 먼저 검소와 절약을 힘써 숭상한다면 이는 저절로 개혁될 것 • 법으로 정하기를, 혼인 잔치에 음식이 3~4그릇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음

일 시		원 문
명종	4년(1549년) 3월 24일	• 사치가 풍조를 이루어 의복·음식과 혼인·상제(喪祭)에 있어 모두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없음
명종	4년(1549년) 4월 2일	• 혼인 때 사치스런 풍조가 매우 성하니 법을 신명(申明)하여 금할 것 • 『오례의(五禮儀)』에는 신분의 귀천 상하를 막론하고 다 친영(親迎)을 혼례의 제도로 삼고 있는데, 국속(國俗)이 전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음
명종	6년(1551년) 9월 17일	• 백성들의 사치(奢侈)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으며, 혼인의 폐단도 더 심하여 납채(納采)하는 물품이 적은 자는 5~6필이고 많은 자는 10여 필이나 되며 금선(金線)을 두른 저고리와 구슬 달린 치마를 입는 등 다투어 사치스럽게 치룸
명종	8년(1553년) 8월 29일	• 혼례(婚禮)와 상례(喪禮)에 있어 사치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한 금령은 법을 만들어 거듭 밝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법을 위반함이 더욱 심해짐 • 혼인하는 집에서는 사치를 다해 납채(納采)에 현훈(玄纁)을 쓰는 것이 법인데도 부귀한 집에서는 모두 사라능단(紗羅綾緞)을 쓰며, 그 수효가 줄잡아 10필(匹)이나 되는 폐단이 심하므로 단속을 강화함
명종	8년(1553년) 10월 18일	• 사치 풍조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혼인에 상위에 배열하는 그릇 수와 납채(納采)에 필단(疋緞)을 쓰지 말라는 법을 지키지 않음 • 납채에 현훈(玄纁)을 쓰되 2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며, 동뢰연(同牢宴)과 제사상의 유밀과는 7품(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탕수(湯水)도 5 미(味)를 넘지 못하게 함 • 적발될 시에는 가장을 모두 사죄(私罪)로 장 팔십(杖八十)으로 죄를 다스리도록 함
명종	8년(1553년) 10월 23일	• 음식의 사치로 말하면 혼인에는 반드시 유밀과(油蜜果)를 쓰고 있음
명종	11년(1556년) 10월 24일	• 경상좌도 절도사 방호지(方好智)는 아들을 영남 지방의 부자와 혼인시키면서 신랑을 보낼 때 쓴 물건을 모두 관청에서 조달하여 몹시 사치스럽게 했으며 성혼(成婚)하고 나서 행장에는 보화(寶貨)가 매우 많았는데, 이는 모두 중국 물건으로 왜선(倭船)에서 얻은 것이라고 알려져 파면됨
명종	11년(1556년) 11월 16일	• 청원부원군의 자녀 혼사에 있어서 명분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제토록 함
명종	19년(1564년) 2월 10일	• 사치하는 풍습이 경상(卿相)에게서 시작되어 탐내고 야박한 습속이 원근(遠近)에 이루어져서, 재산을 기울여 혼례를 사치하게 하고, 파산(破産)하면서까지 의복을 아름답게 꾸밈

일 시		원 문
선조	36년(1603년) 1월 6일	• 제도(制度)와 문구(文具)는 점차 구규(舊規)를 회복하고 있지만 화려하고 사치한 풍습은 날로 심해가고 있음 • 사대부들 사이에 거친 베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가 드물고, 혼인할 때에는 무늬가 화려한 비단옷으로 꾸미기까지 함
선조	40년(1607년) 2월 19일	• 사치풍조 한 가지가 날로 더욱 심해져서 당상관이 평상시에 으레 비단옷을 입고 있고 심지어는 혼인할 때에도 외람되게 국혼(國婚)처럼 하고 있음
선조	40년(1607년) 3월 18일	• 사치스런 폐단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어 홍(紅)·자(紫) 두 색깔의 보자기에 금박을 입혀 그림을 그리는 등 참람하게 국혼(國婚)을 흉내내고 있음
선조	40년(1607년) 3월 23일	• 요즈음 사치 풍조가 날과 달로 더욱 심해져서 심지어는 혼인할 때에도 슬그머니 도에 지나친 짓을 범하고 있음
광해	즉위년 (1608년) 5월 2일	• 혼인·상장(喪葬)·빈객(賓客)에 대한 예는 갈수록 더욱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기만을 힘써 비록 시장의 물건을 꾸어오거나 내년의 공물(貢物)을 끌어다 쓰는 일도 있음
인조	1년(1623년) 9월 2일	• 궁가와 사대부, 서민까지도 혼인에 대한 사치가 벌써 걷잡을 수 없는 폐단으로 사치할 경우 가장(家長)의 죄를 다스리게 할것
인조	2년(1624년) 6월 17일	• 종실과 공경 대부가 혼인·빈객의 수용과 거마·의복의 제도에서 검약을 힘써 폐습을 고칠 것을 하명함
인조	3년(1625년) 8월 20일	• 사대부의 혼례가 점차 사치스러워진다 하니 이는 작은 근심이 아님
인조	3년(1625년) 8월 23일	• 사치의 풍속을 금하였으나 민간의 예전 풍습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그 가운데 혼인 제도의 지나침은 더욱 심함 • 사치스런 풍속을 고치고자 하면 반드시 대혼(大昏)을 먼저 바로잡아야 함
인조	8년(1630년) 4월 3일	• 혼인하는 예가 너무 사치스러워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부모에게 드리는 예물이 한이 없다고 하니, 엄히 금지시켜야 함
인조	9년(1631년) 6월 7일	• 혼례의 시기가 멀지 않아 새 집을 반드시 기한에 맞게 이루지 못할 것이니 우선 공사를 정지시켜 후일을 기다리거나 다시 칸수를 줄여 백성의 힘을 여유있게 할 것 • 혼례 때의 등록(謄錄)은 조금 감하기는 하였지만 형식적이고 쓸데없는 것이 많음

일 시		원 문
인조	9년(1631년) 10월 3일	• 사치 풍조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데, 사대부의 웅대한 저택과 사치스러운 음식 및 의복과 예제(禮制)를 뛰어넘는 혼례와 상례 등, 가능한 한 남보다 낫게 하려고 하며 한계를 모르고 있음, 여염에서도 서로 본받아 귀천의 구별이 없어졌는데, 광대 따위의 천한 자들도 왕후의 옷을 입으니,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된 것임
인조	11년(1633년) 7월 24일	• 사치의 해는 천재보다 심한 것인데 지금 안팎이 혼인할 때에 다투어 화려함을 숭상하고 있으니, 절약과 검소를 먼저 행하여 아랫사람을 거느려야 함
인조	12년(1634년) 5월 27일	• 국혼(國婚)의 사치스러움과 제택의 화려함은 이미 의로운 방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선왕의 법제에도 어긋나는 것임
인조	21년(1643년) 12월 24일	• 요즈음 사치 풍조가 하루가 다르게 심해져서 항간에서 혼인을 할 때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하고 복식을 화려하게 입는 일이 한도가 없고 시부모에게 올리는 예물까지도 남보다 낫게 하려고 힘써 소비가 극심하니 법부(法府)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신명하고 엄중 경계하며 무거운 율로 다스리게 할 것
인조	23년(1645년) 10월 2일	• 사치 풍조가 근래에 와서 더욱 심하여져 위로 대신가에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앞 다투어 서로 사치스럽게 하는데, 혼인 제도가 더욱 극심함 • 병조 판서 구인후(具仁垕)는 손자의 혼례를 호사스럽게 치러 법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관직을 파면해야 함
인조	25년(1647년) 3월 4일	• 사치가 만연하여 사대부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혼인 때는 다투어 음식과 의복에 사치를 부림 • 신부가 시부모를 뵐 때에도 본디 일정한 법식이 있는데, 찬품(饌品)의 가짓수를 풍성하게 하기만을 힘쓰니,적발하여 죄를 다스리게 할 것
인조	26년(1648년) 9월 15일	• 근래 여염의 혼례가 극도로 사치스러워 복식(服飾)의 물품은 반드시 주금(珠錦)으로 하고 시가에 공향(供饗)하는 의식이 대부분 예제를 무시하고 있음 • 숭선군(崇善君)의 길례 날짜가 목전에 다가왔으니, 모든 의물(儀物)에 관계되는 것을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절검을 행하는 덕을 몸소 보일 것
효종	2년(1651년) 10월 7일	• 사치의 폐해는 천재(天災)보다도 심함 • 현재 제택(第宅)의 참람함과 복식(服飾)의 사치스러움, 혼인의 과분함, 음식의 지나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효종	3년(1652년) 11월 13일	• 도성(都城) 안은 위로 경대부(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시정의 천인까지 모두가 지극히 사치하여, 벽에 바르는 것은 외국의 능화지(菱花紙)가 아니면 쓰지 않고, 입는 옷은 능단(綾段)·금수(錦繡)가 아니면 쓰지 않음 • 혼인과 음식의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금단하는 일을 임금이 먼저 궁중부터 다스려 신하가 따르도록 해야 함

일 시		원 문
효종	8년(1657년) 11월 2일	• 혼인과 연회에 화려함을 극도로 함은 물론 심지어 토목 공사까지 거의 온 성안에서 일어나 다투어 사치하고 크게 하는 데 이르렀으니, 법관에게 분명히 신칙하여 온갖 사치하고 제도를 초과하는 것들은 모두 엄단해야 할 것
효종	9년(1658년) 10월 11일	• 혼인과 상사의 예는 본디 선왕의 제도가 있는데, 위로는 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국법을 범하는 일이 이루 말할 수 없어, 혼인의 복식은 반드시 비단과 주옥(珠玉)을 쓰며, 상사에는 오로지 남이 보기 좋게 꾸미는 것으로 일삼고 있으니 혼인과 상사에 대해 제도를 정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효종	9년(1658년) 10월 21일	• 헌부의 계사로 인하여 거듭 금지의 조목을 밝히고 혼인·상사에 대한 물품도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줄여 법을 정하였으니 임금부터 앞으로 치를 국혼으로부터 시작하여 혼수의 비용을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검소한 실태를 보일 것
효종	9년(1658년) 11월 4일	• 사대부들로부터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혼인과 장사의 복식에 있어서 선왕께서 정하신 제도가 있으나 근래에는 나라의 기강이 해이되어 사치가 날로 심해져 상하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법도가 없으니 금법을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관(朝官) 이하는 파직하고, 유생은 정거(停擧)하고, 삼의사(三醫司)는 가두고서 치죄하고, 부녀자들은 그 가장(家長)을 치죄하고, 일반 백성들은 곧바로 죄를 주어 결단코 용서하지 말 것
효종	10년(1659년) 4월 8일	• 사치스런 폐단이 더욱 극심하여져 가고 있으니, 혼례(婚禮)를 더욱 검소하게 해야 됨 • 흥평위(興平尉)를 삼간(三揀)할 때 배반(盃盤)이 낭자하였고 증물(贈物)이 풍성하고 사치스러웠다고 하니 흥평위의 아비 부솔(副率) 원만리(元萬里)를 파직할 것
현종 개수	1년(1660년) 5월 9일	• 국전을 살펴보건대 당하관 이하는 혼인할 때 사라(紗羅)·능단(綾緞)·계담(罽毯)을 쓴 경우에는 모두 장 팔십(杖八十)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도(世道)가 날로 비하되어 인심이 날로 사치에 빠지고 있는데,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절실하게 금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음
현종	2년(1661년) 1월 11일	• 사대부 집안의 사치가 궁중보다 심하고, 여염이 또 사대부 집안보다 심하여 보석이나 비단옷의 치장이 극히 화려함 • 혼인이나 상례에 드는 비용도 한정이 없어 국법에도 아랑곳 않고 사치함
현종 개수	4년(1663년) 8월 6일	• 혼례와 상례의 절차에 관하여 일정한 격식을 정하여 반포하였으나 금방 그것을 폐지해버리고 이행하지 않았는데 다시 그 제도를 거듭 밝혀 거행토록 함
현종 개수	13년(1672년) 6월 23일	• 국가 예산이 탕갈되었는데도 사치를 숭상하는 풍속이 이미 고질적인 폐단이되었으므로 공주의 혼례가 박두하였는데 되도록 절약을 하시어 백성들의 본보기(民則)가 되어야 함

일 시		원 문
숙종	9년(1683년) 1월 28일	• ‘사치(奢侈)는 천재(天災)보다 심하다.’ 하였는데, 오늘날 이 폐단이 극도에 달하였음 • 사치 가운데에는 혼인의 비용이 가장 심하고, 사위의 집에서는 눈을 흘기면서 여자에게 장만하여 오기를 요구하고 있음
숙종	9년(1683년) 6월 2일	• 귀척(貴戚)이 다투어 사치하여 혼인의 비용(費用)에 이르러서는 날마다 더욱 사치스러워감
숙종	12년(1686년) 11월 29일	• 사대부의 집에 혼례(婚禮)·상례(喪禮)·장례(葬禮)·제례(祭禮)는 일체 법을 정하여, 이서(吏胥)와 하인(下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도에 지나치게 사치한 폐습을 고친 다음 제향(祭享)을 절감하는 일은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
숙종	28년(1702년) 11월 20일	• 여항(閭巷)의 사치(奢侈)가 점점 심해져서, 부요(富饒)한 무리는 혼인의 납채(納采)에 있어서 뽐내어 사치하는 것만 힘써 숭상하니, 혹은 백금(白金)과 채단(綵緞)을 함(函)에 가득하고 절제하는 바가 없음 • 빈잔(貧殘)한 자도 모방하다가 가산(家産)을 탕진하는데, 납채를 마련하지 못하여 혼취(婚娶)의 때를 잃는 무리가 있을 정도이니 이를 일일이 과죄(科罪)할 것
숙종	30년(1704년) 2월 21일	• 연잉군(延礽君) 이금(李昤)이 진사(進士) 서종제(徐宗悌)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혼인은 사치가 법도를 넘어 비용이 만금(萬金)으로 헤아릴 정도였음
숙종	32년(1706년) 12월 25일	• 왕자의 혼례를 검소하게 치루기를 대신들이 청함
숙종	41년(1715년) 9월 6일	• 여항(閭巷)에 사치(奢侈)의 풍조가 극도에 달하여 혼례(婚禮)에 반드시 침장(寢帳)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수(錦繡)로 만들기도 하여 여피(儷皮)를 폐백으로 사용하던 고례(古禮)는 이제 회복할 수 없게 됨 • 혼례에 쓰는 침장과 보내는 폐백(幣帛)은 두 가지를 넘는 자는 금조(禁條)를 첨부해 기록하여 일체 금단케 할 것
영조	9년(1733년) 12월 10일	• 여리(閭里)에서 혼인 때 폐백을 반드시 현훈으로 하는 것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고, 이보다 지나치게 하는 자는 법사(法司)에서 가장(家長)을 적발하여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다스려 사치하고 남용하는 관습을 혁파할 것
영조	9년(1733년) 12월 22일	• 예전에 근세의 사치스러움과 같은 적은 있지 않았음 • 사치스럽고 성대(盛大)하게 하는 데에 구애되어 혼인해 인륜(人倫)의 중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어려움
영조	10년(1734년) 8월 15일	• 혼례와 상례의 수용과 음식의 비용에 이르기까지 신기(新奇)함을 시새워서 다투어 그 미려(美麗)함을 극도로 추구함 • 온 나라의 금(金)은 모두 연시(燕市) 로 보내져 더욱 해로운 사치를 부추김

일 시		원 문
영조	22년(1746년) 4월 13일	• 임금이 복어(服御)하는 물품이 혹 검소에 지나친 것이 있었습니다만 전후 혼례(婚禮) 때는 분의에 지나친 일이 많은 데다가 음식(飮食)에 이르러서도 한 번 허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걸핏하면 수만 냥에 이른다니 절약하지 않을 수 없음
영조	40년(1764년) 1월 24일	• 부마(駙馬)의 혼구(婚具)를 감하라고 명함 • 궁중의 혼사는 장차 거듭 겹치게 되어 임금이 지나친 사치를 없애고자 준촉(樽燭)·향화(香花)·조각·옻칠·도금(鍍金) 등의 제도를 혹은 없애고 혹은 감하였으며, 식품도 단지 다섯 그릇에만 그치게 하였으나 한 번의 혼사를 치루는 비용이 1만 냥을 넘었음
정조	12년(1788년) 10월 3일	• 혼인할 때 착용하는 칠보 족두리를 세놓거나 세내는 것부터 먼저 금지함 • 금령을 공포한 뒤에 이를 범하는 자는 수모(首母)·여쾌(女儈)를 막론하고 모두 법사로 이송해서 조율(照律)해 정배(定配)함
정조	14년(1790년) 2월 19일	• 연전에 가체(加髢)를 얹지 못하도록 거듭 금령을 내린 것은, 선조(先朝)의 뜻을 따라 사치를 숭상하는 풍습을 없애려는 데서 나온 것인데, 혼인을 치루는 사대부들 집에서 가마 앞의 여종의 쪽진 머리에도 세(貰)내어 얹는 물건을 쓰지 않고 본발(本髮)을 위주로 하여 사치스러움
정조	20년(1796년) 11월 19일	• 여염의 부자들이 손님을 청할 때면 채화(綵花)와 금승(金勝)이 좌우에서 번쩍거리고 쌓아 놓은 유밀과의 높이가 한 길이 넘는 등 사치를 숭상하고 있음 • 선조(先朝)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혼례나 사대부의 혼례를 막론하고 모두 유밀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며, 금색 은색의 노포화(露布花)를 사용하는 자는 형장 80대로 처벌한 것은 몸소 근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정립시키고자 함이었음
정조	23년(1799년) 6월 26일	• 호남의 습속은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그릇이나 옷을 남보다 낫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관혼 상제인 경우에는 더욱 한도가 없음 • 복식과 혼례와 상례에는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함
순조	34년(1834년) 2월 30일	• 사치로 말한다면 위로는 벼슬아치 집으로부터 아래로는 여염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본을 받아 한 차례의 혼례에 드는 혼수가 중인(中人) 열 집의 재산보다도 많고 한 차례의 잔치에 드는 비용이 가난한 백성의 1년치의 양식거리보다 많음 • 궁중부터 절약에 힘써 행하여 검덕(儉德)을 밝히되, 만약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국력(國力)이 펴지도록 해야 함
고종	9년(1872년) 2월 10일	• 김병학이 영혜옹주의 혼례를 검소하게 할 것을 청함

<부록2-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납채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납채(納采)	교문지(敎文紙) 1장(張)			
납채(納采)	흑칠중함(黑漆中函) 1부(部)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홍초(紅綃) 홍주(紅細)	홍초(紅綃) 3폭/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紬) 6폭/겉싸개용 홑보자기
납채(納采)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 1좌(坐)	홍주 6폭 상건(床巾)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6폭/상을 덮는 홍색 물을 들인 명주
납채(納采)	산 기러기(生雁) 1마리	묶는 홍주 7자 코에 꿰는 홍사 2돈(錢)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7자/묶음용 홍주(紅細) 2폭/홑보자기
납채(納采)	답전문지(答箋文紙) 1장(張)			
납채(納采)	흑칠함(黑漆函)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4폭/안싸개용 홑보자기 홍주(紅細) 4폭/겉싸개 홑보자기

<부록2-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납징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납징 (納徵)	교문지 1장			
납징 (納徵)	흑칠중함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홍초(紅縮) 홍주(紅細)	홍초(紅縮) 3폭 /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細) 6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납징 (納徵)	당주홍칠안상 1좌	홍주 6폭 상건(床巾)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6폭 /상을 덮는 홍색 물을 들인 명주
납징 (納徵)	현색모단(玄色冒緞) 6필 훈색모단(纁色冒緞) 4필			
납징 (納徵)	왜주홍칠속백함(倭朱紅漆束帛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홍초(紅縮) 홍주(紅細)	홍초(紅縮) 3폭 /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細) 6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납징 (納徵)	당주홍칠안상 1좌	홍주 6폭 상건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6폭 /상을 덮는 홍색 물을 들인 명주

<부록2-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납징에 사용된 보자기 (계속)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납징 (納徵)	승마(乘馬) 4필			
납징 (納徵)	답전문지 1장			
납징 (納徵)	흑칠함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4폭 /안싸개용 홑보자기 홍주(紅細) 4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부록2-3>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고기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고기(告期)	교문지 1장			
고기(告期)	당주홍칠중함(唐朱紅漆中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홍초(紅縮) 홍주(紅細)	홍초(紅縮) 3폭 /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細) 6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고기(告期)	당주홍칠안상 1좌	홍주 6폭 상건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6폭 /상을 덮는 홍색 물을 들인 명주
고기(告期)	답전문지 1장			
고기(告期)	흑칠함 1부	안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4폭 /안싸개용 홑보자기 홍주(紅細) 4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부록2-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책비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책비(冊妃)	교명(敎命) 1부			
책비(冊妃)	왜주홍칠궤(倭朱紅漆櫃) 1부	안싸개용 대홍광적(大紅廣的) 1폭 반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대홍광적(大紅廣的) 홍주(紅紬)	대홍광적(大紅廣的) 1폭반 /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細) 4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책비(冊妃)	왜주홍칠배안상(排案床) 1좌	홍주 6폭 부건 1건[1)] * 남융사 금전지를 갖춤	홍주(紅細)	홍주(紅細) 6폭 /부건
책비(冊妃)	자적토주요(紫的吐紬褥) 1부			
책비(冊妃)	왜주홍칠명복함(倭朱紅漆命服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홍초(紅縮) 홍주(紅細)	홍초(紅縮) 3폭 /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細) 6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1)일방의궤에서 추가.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一房儀軌-本房所掌 p.0163.
敎命封裹式 敎命一件 玉軸裹綿花從實入 °內裹多紅廣織二幅袂袱一 件金錢紙具 °腰結紫的紬纓子一件 入 盛倭朱紅漆櫃一部 鎖鑰一部多紅廣的匙家具 °塡空雪綿子從實入 °衣香二封 外裹 紅紬五幅單袱一件金錢紙具 °臣謹封紙一箇臣字下都提調着押 °大標 紙一箇只書敎命二字 °倭朱漆排案床一坐 紅紬六幅覆巾一 件金錢紙具 °上排彩花席一件 下排紫的吐紬褥一件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대전 가례 시 본방에서 관장한 일, p.74.
교명을 봉하여 싸는 법식.
교명 1건.

<부록2-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책비에 사용된 보자기 (계속)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책비 (冊妃)	당주홍칠안상 1좌	홍주 6폭 상건 1건	홍주(紅紬)	홍주(紅紬) 6폭 /상건
책비 (冊妃)	옥책(玉冊) 1건	대홍광적 1척9촌 막이용 핫보자기 5건 * 핫보자기는 첩(貼)의 수효에 따름:6첩 안싸개용 대홍방사주(大紅方絲紬) 자물쇠(鎖金) 겹보자기 2건	대홍광적 (大紅廣的) 대홍방사주 (大紅方絲紬)	대홍광적(大紅廣的)1척9촌 /막이용 핫보자기 대홍방사주(大紅方絲紬) /안싸개용 자물쇠(鎖金) 겹보자기
책비 (冊妃)	화금왜주홍칠내함(畫金倭朱紅漆內函) 1부	싸개용 홍주 3폭반 홑보자기 1건 자적초 3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紬) 자적초 (紫的綃)	홍주(紅紬) 3폭반 /싸개용 홑보자기 자적초(紫的綃) 3폭 /홑보자기

옥축(玉軸)을 싸는 솜 들어가는 만큼.
안싸개[內裹]로 다홍광직(多紅廣織) 2폭 겹보자기 1건(件) 금전지(金牋紙)를 갖춤.
허리 부분에 묶을 자적초 영자(紫的綃纓子) 1건.
보관용 왜주칠 궤(倭朱漆櫃) 1부.
자물쇠 1부 다홍광적 열쇠집[多紅廣的匙家]을 갖춤.
사이를 메울 풀솜[雪綿子] 들어가는 만큼.
의향(衣香) 2봉(封).
겉싸개[外裹]로 홍주 5폭 홑보자기 1건 금전지를 갖춤.
신근봉(臣謹封)' 이라 쓴 종이 1개 신(臣) 자 아래에 도제조가 서명함.
큰 표지 1개 '교명(敎命)' 이라는 두 자만 씀.
왜주칠 배안상(排案床) 1좌(坐).
홍주 6폭 부건(覆巾) 1건 금전지를 갖춤.
위에 펴는 채화석(彩花席) 1건.

<부록2-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책비에 사용된 보자기 (계속)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책비(冊妃)	흑칠외궤(黑漆外櫃) 1부	싸개용 홍주 5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5폭/싸개용 홑보자기
책비(冊妃)	자적토주요(紫的吐紬褥) 1부			
책비(冊妃)	금보(金寶) 1과(顆)	싸개용 대홍광적 핫보자기(襦袱) 1건	대홍광적(大紅廣的)	대홍광적(大紅廣的) 1건/싸개용 핫보자기
책비(冊妃)	보통(寶筒) 1좌	싸개용 대홍광적 핫보자기(襦袱) 1건	대홍광적(大紅廣的)	대홍광적(大紅廣的) 1건/싸개용 핫보자기
책비(冊妃)	보록(寶盝) 1좌	싸개용 대홍광적 핫보자기(襦袱) 1건	대홍광적(大紅廣的)	대홍광적(大紅廣的) 1건/싸개용 핫보자기
책비(冊妃)	주통(朱筒) 1좌	싸개용 대홍광적 핫보자기(襦袱) 1건	대홍광적(大紅廣的)	대홍광적(大紅廣的) 1건/싸개용 핫보자기
책비(冊妃)	주록(朱盝) 1좌	싸개용 대홍광적 핫보자기(襦袱) 1건	대홍광적(大紅廣的)	대홍광적(大紅廣的) 1건/싸개용 핫보자기
책비(冊妃)	호갑(護匣) 1바리(駄) 말채찍을 갖춤. 보안(寶鞍) 1부			
책비(冊妃)	왜주홍칠독보상(倭朱紅漆讀寶床) 1좌	홍주 5폭 부건(覆巾) 1건	홍주(紅紬)	홍주(紅紬) 5폭/부건
책비(冊妃)	자적주요(紫的紬褥) 1건: 위에 펴는 자리를 갖춤.			

<부록2-5>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친영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친영(親迎)	산 기러기(生雁) 1마리	묶는 홍주 7자 코에 꿰는 홍사 2돈(錢)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7자/묶음용 홍주(紅細) 2폭/홑보자기
친영(親迎)	왜주홍칠전안상(倭朱紅漆奠雁床) 1좌	홍주 6폭 부건(覆巾) 1건 홍주 10폭 상건(床巾) 1건[2]	홍주(紅細)	홍주(紅細) 6폭/부건 홍주(紅細) 10폭/상건
친영(親迎)	자적토주요 2건: 위아래에 펴는 자리를 갖춤. 이 중 1건은 내전의 막차에 펴는 용도임.			
친영(親迎)	홍주요 1건: 위아래에 펴는 자리를 갖춤			
친영(親迎)	금홍촉(金紅燭) 1쌍:심지가 홍색인 초를 갖춤. 말 1필: 안장을 갖춤.			
친영(親迎)	전안배위만화단석(奠雁拜位滿花單席) 1건: 아래에 펴는 면석(面席)을 갖춤.			

2)일방의궤-품목질에서 부건 1건 추가.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一房儀軌-六禮時擧行秩 p.0171.
倭朱紅漆奠雁床一坐紅紬十幅床巾一件, 衿眞草綠紬紅綿絲三甲所回繩具, 六幅紅紬 覆巾一件, 藍絨絲金錢具 °加造床則尙方造作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육례시 거행질, p.78.
왜주홍칠 전안상 1좌 홍주 10폭 상건 1건. 깃은 진초록주(眞草綠紬). 홍면사(紅綿絲) 세 겹바[三甲所] 회승(回繩)을 갖춤. 6폭 홍주 부건 1건, 남융사 금전지를 갖춤. 추가 제조

<부록2-6>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동뢰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동뢰 (同牢)	자적토주 요 1건: 위아래에 펴는 자리를 갖춤.			
동뢰 (同牢)	홍주 요 1건: 위아래에 펴는 자리를 갖춤.			
동뢰 (同牢)	금홍촉 2쌍: 심지가 홍색인 초를 갖춤. 홍사촉(紅四燭) 5쌍 홍육촉(紅六燭) 40자루 홍팔촉(紅八燭) 40자루: 이상의 초를 담을 당주홍칠함(唐朱紅漆函) 3부	안싸개용 홍주 5폭 홑보자기 3건 겉싸개용 홍주 5폭 홑보자기 3건	홍주(紅紬)	홍주(紅紬) 5폭 /안싸개용 홑보자기 홍주(紅紬) 5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빙재 (聘財)3)	정포(正布)250필(疋) 정목(正木) 250필 백미(白米) 200석 황두(黃豆) 200석			

함. 상은 상방에서 만듦.

일방의궤-각차비의녀질에서 상건 1건 추가.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一房儀軌-各差備醫女秩 p.0231.
親迎時所用奠雁床一坐, 尙方造作, 十幅床巾一件, 本 房造作, 而蓋覆袱則謄錄雖無所載, 不可不造作待令, 紅 紬六幅巾一件所入紅紬二十五尺, 金錢紙二張, 藍絨絲 二錢, 紅鄕絲五分, 進排事, 捧甘, 何如? 手決內, 依稟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품목질, p.107.
친영 시 사용할 전안상 1좌는 상방에서 제작하고, 10폭 상건(床巾) 1건은 본방에서 제작하되, 덮개 보자기는 등록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제작하여 대령하지 않을 수 없으니, 홍주 6폭 건(巾) 1건에 들어가는 홍주 25자와 금전지 2장, 남융사 2돈, 홍향사 5푼을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품의한 대로 하라고 수결함.

3)삼간택 다음 날 실어 보냄.

<부록2-7>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별궁예물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별궁예물(別宮禮物)[4]	대홍정주(大紅鼎紬) 10필 남정주(藍鼎紬) 10필 백정주(白鼎紬) 10필 초록정주(草綠鼎紬) 10필 연초록토주(軟草綠吐紬) 10필 백토주(白吐紬) 10필 보통 솜(常綿子) 30근			
별궁예물(別宮禮物)	흑칠대함(黑漆大函) 1부	안싸개용 홍주 6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8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紬)	홍초(紅縮) 6폭 /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細) 8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4)삼간택 후에 올림.

<부록2-8>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정친예물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정친예물(定親禮物)[5]	현색초(玄色綃) 2필 훈색초(纁色綃) 2필 현색초(玄色綃) 2필 훈색초(纁色綃) 2필			
정친예물(定親禮物)	왜주홍칠함(倭朱紅漆函) 1부[6]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홍초(紅綃) 홍주(紅紬)	홍초 3폭 /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 6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5)납채 후 3일째 되는 날 실어 보냄.

6)일방의궤에서 추가.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一房儀軌-稟目秩 pp.0216-0217.

定親禮物所盛倭朱漆函一部, 本房禮物所盛唐朱漆函 一部, 袱具, 造用事, 旣已定奪爲有置 °同物力磨鍊以上, 卽 速進排事, 捧甘, 何如? 手決內, 假下實入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품목질, p.99.

정친 예물을 담을 왜주홍칠 함 1부와 본방 예물을 담을 당주홍칠 함 1부를 보자기를 갖추어 만들어 쓸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이들 물품들의 품목을 마련해 올립니다. 즉시 올릴 것으로 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실입으로 우선 내리라고 수결함.

<부록2-9>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납징예물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납징예물(納徵禮物)[7]	화은(花銀) 50냥(兩) 백릉(白綾) 4필 조라(皁羅) 4필 대홍주(大紅紬) 16필 초록주(草綠紬) 16필 흰 솜 10근			
납징예물(納徵禮物)	당주홍칠함(唐朱紅漆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홍초(紅縮) 홍주(紅細)	홍초(紅縮) 3폭 / 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細) 6폭 / 겉싸개용 홑보자기
납징예물(納徵禮物)	당주홍칠상(唐朱紅漆床) 1좌	홍주 6폭 상건(床巾) 1건	홍주(紅細)	홍주(紅細) 6폭 /상을 덮는 홍색 물을 들인 명주

7)납징하는 날 실어 보냄.

<부록2-10>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본방예물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본방예물(本房禮物)[8]	현색운문대단(玄色雲紋大緞) 2필 훈색운문대단(纁色雲紋大緞) 2필 현색화단(玄色禾緞) 2필 훈색초(纁色綃) 2필 대홍토주(大紅吐紬) 5필 초록토주(草綠吐紬) 5필 황토주(黃吐紬) 5필 남토주(藍吐紬) 5필 백토주(白吐紬) 20필 솜 20근 씨 뺀 솜 50근			
본방예물(本房禮物)	당주홍칠대함(唐朱紅漆大函) 1부[9]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홍초(紅縮) 홍주(紅細)	홍초(紅縮) 3폭 /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細) 6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8)납채한 다음 날 비(妃)의 본방으로 실어 보냄.
9)일방의궤에서 추가.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上)-一房儀軌-六禮時擧行秩 pp.0175-0176.
唐朱紅漆大函一部長三尺六寸, 廣二尺三寸 °內裹紅綃三幅袱衾一件, 外裹紅紬六幅單衾 一件, 藍絨絲金錢紙具, 內塗紅紬 °定例所無, 筵稟加造, 高九寸 °
박소동 역(1997). 국역 가례도감의궤 영조·정순왕후.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일방의궤 육례

<부록2-10>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본방예물에 사용된 보자기(계속)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본방예물(本房禮物)[10]	홍염주(紅染紬) 5필 황염주(黃染紬) 5필 백면주(白綿紬) 10필 산 돼지(生猪) 4마리 산 양(生羊) 4마리 예주(醴酒) 50병 초주지(草注紙) 25권 저주지(楮注紙) 25권 구승홍면포 침요(九升紅綿布寢褥) 1건			
본방예물(本房禮物)	당주홍칠대함(唐朱紅漆大函) 1부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홍초(紅縮) 홍주(紅細)	홍초(紅縮) 3폭/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細) 6폭/겉싸개용 홑보자기
본방예물(本房禮物)	배위 채화단석(拜位彩花單席) 2건			

시 거행질, p.80.
당주홍칠 대함(大函) 1부 길이 3자 6치 너비 2자 3치, 안싸개용 홍초 3폭 겹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남융사 금전지를 갖춤. 안은 홍주로 바름. 정례에는 없는데 연석에서 품의하여 추가로 만듦. 높이 9치.

10)납징 하루 전에 비(妃)의 부모에게 실어 보냄.

<부록2-1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대전의대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대전법복(大殿法服)[11]	면복(冕服) 1건 평천관(平天冠) 1부 적말(赤襪) 1건 적석(赤舃) 1부			
대전법복(大殿法服)	강사포(絳紗袍) 1건 원유관(遠遊冠) 1부 적말 1건 적석 1부			
대전의대(大殿衣襨)	초록토주 유철릭(草綠吐紬襦天益) 1 백토주 유과두(白吐紬襦裹肚) 1 백토주 액주름(白吐紬腋注音) 1 백면포 액주름(白綿布腋注音) 1 백정주 장삼아(白鼎紬長衫兒) 1 백정주 단삼아(白鼎紬短衫兒) 1 백토주 유바지(白吐紬襦把持) 1 백정주 홑바지(白鼎紬單把持) 1			

11)상의원에서 때에 임하여 품의하여 준비함.

<부록2-11>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대전의대에 사용된 보자기(계속)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대전의대(大殿衣襨)	말총 두면(馬尾頭冕) 1부 흑칠한 갓집(黑漆家) 1부	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紬)	홍주(紅細) 4폭/싸개용 홑보자기
대전의대(大殿衣襨)	망건(網巾) 1건: 흑칠한 통(黑漆筒) 1개	싸개용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紬)	홍주(紅細) 2폭/싸개용 홑보자기
대전의대(大殿衣襨)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1부: 백양모 깔개를 갖춤. 흑사피화(黑斜皮靴) 1부: 백양모 깔개를 갖춤.	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紬)	홍주(紅細) 4폭/싸개용 홑보자기
대전의대(大殿衣襨)	흑웅피 삽혜(黑熊皮靸鞋) 1부	싸개용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紬)	홍주(紅細) 2폭/싸개용 홑보자기

<부록2-1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중궁전법복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중궁전 법복 (中宮殿 法服)	대홍당직 적의(大紅唐織翟衣) 1 대홍당직 폐슬(大紅唐織蔽膝) 1 초록당직 대대(草綠唐織大帶) 1 금의향직 수(錦衣鄕織綬) 1 지금의 제작대로 짬. 모단하피(冒緞霞帔) 1 남당직 상(藍唐織裳) 1 대홍광적 수(大紅廣的繡) 1 자적라 면사(紫的羅面紗) 1 대홍광적 적말(大紅廣的赤襪) 1 적석 1부: 진주(眞珠)는 제거함.			
중궁전 법복 (中宮殿 法服)	왜주홍칠 함(倭朱紅漆函) 1부(신과 버선을 담음)	싸개용 홍주 3폭 홑보자기 2건	홍주(紅紬)	홍주(紅細) 3폭 /싸개용 홑보자기

<부록2-13>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중궁전의대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중궁전 의대 (中宮殿 衣襨)	대홍광직 겹장삼(大紅廣織裌長衫) 1 대홍광직 겹오(大紅廣織裌襖) 1 남광사 경의(藍廣紗景衣) 1 자적광사 겹면사(紫的廣紗裌面紗) 1 자적라 수사기(紫的羅首紗只) 1 초록토주 천의(草綠吐紬串衣) 1 초록토주 핫저고리(草綠吐紬襦赤古里) 1 자적초 겹저고리(紫的綃裌赤古里) 1 자적토주 유호수(紫的吐紬襦胡袖) 1			
중궁전 의대 (中宮殿 衣襨)	대홍광적 겹치마(大紅廣的裌赤仐) 1 남광직 핫치마(藍廣織襦赤仐) 1 자적토주 핫치마(紫的吐紬襦赤仐) 1 초록주 세수장삼(草綠紬洗水長衫) 1 자적라 노의대(紫的羅露衣帶) 1			

<부록2-13>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중궁전의대에 사용된 보자기(계속)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중궁전 의대 (中宮殿 衣襨)	자초립(紫綃笠) 1부(진주를 제거함) 흑칠한 갓집(黑漆家) 1부	싸개용 홍주 4폭 겹보자기 1건,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紬)	홍주(紅細) 4폭 /안싸개용 겹보자기 홍주(紅細) 4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중궁전 의대 (中宮殿 衣襨)	자적라 겹라올(紫的羅袂羅兀) 1감(次)(홍진사(紅眞絲) 매듭을 갖춤)			
중궁전 의대 (中宮殿 衣襨)	흑웅피 화온혜(黑熊皮花溫鞋) 1부	싸개용 홍주 2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紬)	홍주(紅細) 2폭 /싸개용 홑보자기
중궁전 의대 (中宮殿 衣襨)	각종 의대를 싸는 보자기 감 대홍주(大紅紬) 2필	대홍주(大紅紬) 2필	대홍주 (大紅紬)	대홍주(大紅紬) 2필/보자기 감
중궁전 의대 (中宮殿 衣襨)	왜주홍칠 의대함(倭朱紅漆衣襨函) 4부	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4건	홍주(紅紬)	홍주(紅細) 6폭 /싸개용 홑보자기

<부록2-13>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중궁전의대에 사용된 보자기(계속)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중궁전 의대 (中宮殿 衣襨)	체발(髢髮) 10단			
중궁전 의대 (中宮殿 衣襨)	흑칠함(黑漆函) 1부	안싸개용 대홍주 5폭 홑보자기 1건 겉싸개용 홍주 6폭 홑보자기 1건	대홍주 (大紅紬) 홍주(紅紬)	대홍주(大紅紬) 5폭/안싸개용 홑보자기 홍주(紅紬) 6폭 /겉싸개용 홑보자기
중궁전 의대 (中宮殿 衣襨)	흑각 장잠(黑角長簪) 2개 흑각 대잠(黑角大簪) 5개 흑각 중잠(黑角中簪) 5개 흑각 소잠(黑角小簪) 3개 흑각 독소잠(黑角禿小簪) 4개 흑각 차소잠(黑角次小簪) 3개 흑각 소소잠(黑角小小簪) 5개: 이상은 전교로 인하여 흑각으로 대내에 들임.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대내 (大內) 에 올린 물품	왜주홍칠 대원반(倭朱紅漆大圓盤) 3닢(立): 3자(字)를 5자로 고쳐서 내림. 왜주홍칠 중원반(倭朱紅漆中圓盤) 6닢: 6자를 5자로 고쳐서 내림. 왜주홍칠 소원반(倭朱紅漆小圓盤) 3닢: 3자를 5자로 고쳐서 내림. 왜주홍칠 소소원반(倭朱紅漆小小圓盤) 3닢: 3자를 5자로 고쳐서 내림. * 이상은 상의원에서 만들어 대내에 들임.			

<부록2-14>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별궁에 올린 물품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별궁(別宮)에 올린 물품	왜주홍칠궤·경대(倭朱紅漆櫃鏡臺) 1부: 경(鏡)은 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을 갖춤.	싸개용 홍주 4폭 홑보자기 1건	홍주(紅紬)	홍주(紅細) 4폭/싸개용 홑보자기
별궁(別宮)에 올린 물품	홍저포 겹휘건(紅苧布裌揮巾) 1건 변아침석(邊兒寢席) 1건 만화방석(滿花方席) 1좌 별문등매(別紋登每) 6좌 별문방석(別紋方席) 20좌: 이 가운데 10좌는 산양 가죽 방석 10좌 대용의 별문방석 10좌임. 세수태석(洗水苔席) 1좌 등경태석(燈檠苔席) 1좌 푼주태석(分之苔席) 1좌 화로태석(火爐苔席) 1좌 지게(支架) 4부			

<부록2-15>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동뢰연기명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동뢰연 기명 (同牢宴 器皿)	은초아(銀召兒) 2개	싸개용 자적주 1폭 겹보자기 1건	자적주 (紫的紬)	자적주 1폭 /싸개용 겹보자기
동뢰연 기명 (同牢宴 器皿)	은젓가락(殷筯) 2면(面) 놋쇠 쟁반(鍮錚盤) 8닢 놋쇠 작은 뚜껑(鍮小盖兒) 2죽(竹) 두석 향꽂이(豆錫香串之) 1쌍 왜주홍칠 향좌아(倭朱紅漆香佐兒) 1쌍			
동뢰연 기명 (同牢宴 器皿)	왜주홍칠찬안상(倭朱紅漆饌案床) 2좌	홍주 상건 2건	홍주(紅紬)	홍주(紅細) /상을 덮는 홍색 물을 들인 명주
동뢰연 기명 (同牢宴 器皿)	당주홍칠대주정(唐朱紅漆大酒亭) 1좌 철제 촉롱(鐵燭籠) 10부 홍사롱(紅紗籠)을 갖춤.			
동뢰연 기명 (同牢宴 器皿)	금봉병(金鳳甁) 대용의 뚜껑을 갖춘 은봉병 1좌: 싸개용 홍세목(紅細木) 3폭 겹보자기 1건, 담는 용 당주홍칠 작은 궤 1부.	싸개용 홍세목 (紅細木) 3폭 겹보자기 1건	홍세목 (紅細木)	홍세목(紅細木) 3폭 /싸개용 겹보자기

<부록2-15>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동뢰연기명에 사용된 보자기(계속)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동뢰연 기명 (同牢宴 器皿)	근배(巹杯) 1쌍 은장식과 홍사(紅絲)를 갖춤. 은도금한 대(臺) 1쌍 이상의 싸개용 홍세목 2폭 겹보자기 1건	싸개용 홍세목 2폭 겹보자기 1건	홍세목 (紅細木)	홍세목(紅細木) 2폭 /싸개용 겹보자기
동뢰연 기명 (同牢宴 器皿)	쌍이단엽 금잔(雙耳單葉金盞) 1쌍 은도금한 대 1쌍: 이상의 싸개용 자적초 1폭 핫보자기 1건	싸개용 자적초 1폭 핫보자기 1건	자적초 (紫的綃)	자적초(紫的綃) 1폭 /싸개용 핫보자기
동뢰연 기명 (同牢宴 器皿)	놋쇠 큰 뚜껑(鍮大盖兒) 15닢 놋쇠 중치 뚜껑(鍮中盖兒) 20닢 놋쇠 작은 뚜껑(鍮小盖兒) 15닢			

<부록2-16>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별궁기명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별궁기명(別宮器皿)	덮개를 갖춘 은바리(銀鉢里) 1좌	싸개용 홍세목 2폭 겹보자기 1건	홍세목(紅細木)	홍세목(紅細木) 2폭 /싸개용 겹보자기
별궁기명(別宮器皿)	덮개를 갖춘 은주발(銀椀) 1좌	싸개용 홍세목 2폭 겹보자기 1건	홍세목(紅細木)	홍세목(紅細木) 2폭 /싸개용 겹보자기
별궁기명(別宮器皿)	덮개를 갖춘 은수저첩(銀匙貼) 1좌	싸개용 홍세목 2폭 겹보자기 1건	홍세목(紅細木)	홍세목(紅細木) 2폭 /싸개용 겹보자기
별궁기명(別宮器皿)	은수저(銀匙) 1개 은젓가락(銀筯) 1면: 이상의 싸개용 자적주 1폭 핫보자기 1건	싸개용 자적주 1폭 핫보자기 1건	자적주(紫的紬)	자적주(紫的紬) 1폭 /싸개용 핫보자기
별궁기명(別宮器皿))	주물 촛대(鑄燭臺) 1쌍 덮개를 갖춘 주물 전촉기(鑄剪燭器) 1좌 놋쇠 가위(鍮剪子) 1개 등잔을 갖춘 놋쇠 제등(鍮提燈) 1좌 등잔을 갖춘 주물 등경(鑄燈檠) 1좌 덮개를 갖춘 주물 첨유기(鑄添油器) 1좌 주물 중화로(鑄中火爐) 1좌 두석 불집개(豆錫火執箇) 1개 덮개를 갖춘 놋쇠 교장자(鍮膠鏘子) 1좌 주물 인령(鑄引鈴) 2개			

<부록2-16>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별궁기명에 사용된 보자기(계속)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별궁기명(別宮器皿)	덮개를 갖춘 주물 큰 새옹(鑄大沙要) 1좌 덮개를 갖춘 주물 중치 새옹(鑄中沙要) 1좌 덮개를 갖춘 주물 작은 새옹(鑄小沙要)1좌 덮개를 갖춘 큰 솥(大鼎) 1좌 대를 갖춘 두멍(豆毛) 3좌 부(釜) 3좌 아궁이(爐口) 3좌 큰 적쇠(大炙金) 1부 석쇠(和金) 1부 철제 큰 부젓가락(鐵大火筯) 1쌍 철제 중치 부젓가락(鐵中火筯) 1쌍			
별궁기명(別宮器皿)	나무 화로(木爐) 2좌 각종 칼(各色刀子) 5개 맷돌(石碾) 2좌 안반(案板) 1부 흑칠대원반(黑漆大圓盤) 4닢: 4닢을 1죽으로 고쳐서 내림. 흑칠중원반(黑漆中圓盤) 6닢: 6닢을 1죽으로 고쳐서 내림. 흑칠수반(黑漆手盤) 3닢: 3닢을 1죽으로 고쳐서 내림. 이상은 흑 자(字)를 주(朱)자로 고쳐서 내림. 중치 탁자(中卓子) 1부 이층 탁자(二層卓子) 1부 세수 탁자(洗水卓子) 1부			

<부록2-16>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별궁기명에 사용된 보자기(계속)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별궁기명(別宮器皿)	철제 화통(鐵火桶) 1부 은기(銀器) 담는 중치 궤(中櫃) 1부 삼십 근짜리 저울(稱子) 1부 큰 바가지(大瓢子) 4개 초성(草省) 2개 다식판(茶食板) 2개 큰 뒤주(大斗之) 3부 자물쇠를 갖춤. 틀을 갖춘 매화(馬要) 1좌 중치 항아리(中瓮) 2좌 방구리(方文里) 5개			

<부록2-17>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수라간의 소용품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수라간(水刺間)의 소용품	덮개를 갖춘 큰 화정(大火鼎) 2좌: 이 중 1좌는 새로 설치한 수라간에서 사용함. 덮개를 갖춘 중치 화정(中火鼎) 1좌 도마(刀磨) 2좌 나무 화로 2좌 큰 탁자 3부: 이 중 1부는 다방(茶房)에서 사용함. 이층 식장(二層食欌) 1좌			
수라간(水刺間)의 소용품	백저포(白苧布) 3폭 보자기 1건	백저포(白苧布) 3폭 보자기 1건	백저포(白苧布)	백저포(白苧布) 3폭/보자기
수라간(水刺間)의 소용품	목면(木綿) 4자(尺) 자루(侈) 1건 정포(正布) 4자 자루 1건 정포 7자 정포 걸레(揩介) 5자 백저포 걸레 5자 말총 체(馬尾篩) 2부 대나무 체(竹篩) 1부: 이상 8종은 조포(造泡)에서 사용함.			

<부록2-18>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연과 여의 의장에 사용된 보자기

절차	관련물목	사용 보자기		
		명칭	옷감	크기/용도
연(輦)과 여(輿)의 의장(儀仗)	연(輦) 1좌 홍양산(紅陽繖) 1건 백택기(白澤旗) 2건 은등자(銀鐙子) 4건 금등자(金鐙子) 4건 은장도(銀粧刀) 2건 금장도(金粧刀) 2건 은립과(銀立瓜) 2건 금립과(金立瓜) 2건 모절(旄節) 4건			
연(輦)과 여(輿)의 의장(儀仗)	청선(靑扇) 2건 봉선(鳳扇) 8건 작선(雀扇) 6건 청개(靑盖) 2건 홍개(紅盖) 2건 은횡과(銀橫瓜) 2건 금횡과(金橫瓜) 2건 은월부(銀鉞斧) 2건 금월부(金鉞斧) 2건: 이상은 목면으로 만든 집과 우비를 갖춤.			
연(輦)과 여(輿)의 의장(儀仗)	은관자(銀灌子) 1건 은우자(銀盂子) 1건			
연(輦)과 여(輿)의 의장(儀仗)	은교의(銀交倚) 1건: 덮개용으로 자적주 5폭 홑보자기 1건과 우비를 갖춤.	덮개용으로 자적주 5폭 홑보자기 1건	자적주(紫的紬)	자적주(紫的紬) 5폭 /덮개용 홑보자기
연(輦)과 여(輿)의 의장(儀仗)	은각답(銀脚踏) 1건 우비를 갖춤. 좌자(座子) 1건 의자(倚子) 1건 주장(朱杖) 20개			